

합병관련 기업회계와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2001. 12

김 진 수
황 국 재

한국조세연구원

序言

우리나라 기업합병의 역사는 매우 일천하다. 1980년대 들어 경제성장의 둔화, 산업합리화정책 등에 따라 재벌이 경영전략 차원에서 계열회사간에 추진한 합병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합병은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한 기업간 경쟁적 거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직·간접적인 개입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1997년 말의 외환위기로부터 촉발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합병이 종전과 달리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증권거래법상의 대량주식 소유제한 폐지 및 의무공개매수제도의 폐지,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등과 같은 조치로 합병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기업구조조정 수행에 따른 합병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세와는 달리 합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합병관련 기업회계와 과세제도는 제대로 정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업결합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재무제표의 국제적 정합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1986년 제정된 「합병회계준칙」을 1999년에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으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선진외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합병을 전제로 한 국제회계기준을 모델로 하여 급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준칙조차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기업합병의 형태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합병시 발생하는 개별적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정교하게 규정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편 세법에서도 1998년 말의 법인세법 개정으로 합병차익, 청산소득, 영업권 등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였으나 아직도 합병에 적용하기에는 불확실하고 불충분한 면이 있다. 우리나라의 합병세제는 비과세 합병과 과세 합병을 명확히 구분해서 논리적으로 일관된 회계처리방법에 의한 과세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합병세제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단편적이어서 여전히 제도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많다.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여 본 보고서의 제1부에서는 합병관련 기업회계의 개편방향을, 제2부에서는 합병관련 과세제도의 개편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김진수 박사와 서강대학교의 황국재 교수가 집필하였다. 저자들은 본 보고서의 초고를 읽고 유익한 의견을 준 경희대학교의 최명근 교수와 이준규 교수, 그리고 익명의 두 논평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또한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에 수고한 심재진 주임연구원과 장정순 연구조원, 그리고 교정을 맡아준 출판과 직원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1년 12월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宋 大 熙

<요약 및 정책시사점>

<요약>

I. 주요 내용

합병관련 회계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회계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동일한 회계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업활동의 경제적 실질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양 회계를 어느 정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합병의 경우에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괴리가 근본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세무회계에서는 합병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가능한 합병으로 인한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무회계처리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가 합병관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정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합병관련 기업회계의 개편방향과 합병관련 과세제도의 개편방향을 별도로 모색하고 있다.

1. 합병관련 기업회계

기업합병의 활성화 추세와는 달리 종전의 합병회계준칙은 1986년에 제정된 이후 1998년 4월에 기업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준거 규정 변경을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을 뿐이며, 활성화되고 있는 기업결합의 회계처리에 대한 기준으로는 이론적인 측면이나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적절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9년 3월에 국제회계기준(IAS 22, Business Combinations)을 대폭 수용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이 새로 제정되었다.

기존의 합병회계준칙이 회계이론보다는 상법이론인 합병본질론(현물출자설, 인격합일설)을 반영하고 있는 반면, 현행 준칙은 기업결합을 매수거래와 지분통합거래로 보는 회계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결합의 회계처리방법으로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합병회계준칙의 문제점으로 합병회계준칙에 대한 인식의 부족 및 준칙 준수에 대한 강제성 부족, 조세절감의 수단으로 합병회계준칙의 자의적 활용 등을 지적하였다.

현행 외감법에 의하면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감대상은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인 회사이다. 따라서 회사의 규모가 작아 외부감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 합병준칙의 준수 여부를 판단할 감사가 수행되지 않고 있으며 외부 이해관계자에 의한 왜곡된 정보의 제공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합병의 특징이 첫째, 주로 정부주도의 부실기업 정리수단으로 사용되고, 둘째, 계열기업간의 합병이라는 점이라고 볼 때 주주들의 올바른 합병회계원칙의 준수에 대한 요구가 정책적 목적에 대한 부수적인 수단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정보이용자의 측면에서도 당장의 합병효과를 합병회계처리원칙의 준수에 따른 장기적인 회계실체의 재무상태의 파악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 및 정보생산자의 입장에서 모두 복잡한 합병준칙의 준수에 대한 동기가 결여되어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기업합병이 관계회사간의 부실기업 정리의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동등한 협상력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지분통합법하의 회계처리의 발생은 극히 예외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합병의 회계처리의 실태는 근본적으로 매수법보다는 지분통합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합병회계처리가 원칙과 예외가 전도되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합병관련 과세제도

기업의 합병에 관한 과세체계가 대폭 정비된 것은 경제위기의 발생 직후인 1998년 말의 세법개정에서였다. 그동안 합병과 세제도는 부분적인 개정에 그쳐 왔으나,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합병차익, 청산소득, 영업권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게 되었다. 법인세법 제6관에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세법에도 비과세 합병제도가 도입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합병과세제도의 대폭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합병세제는 비과세 합병과 일반 합병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하나의 합병에 대해 일관성 있는 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비과세 합병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관성 있게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과세문제에 들어가면 적용요건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비과

세 합병의 적용요건이 너무 느슨하여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는 합병 등 비과세의 정당성이 부여될 수 없는 합병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일반 합병에 대한 과세제도도 합병관련 기업회계의 매수법에 해당하는 일관된 회계처리방법에 의해 과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책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합병관련 기업회계 및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 합병관련 기업회계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합병에 관한 회계준칙의 국제적 정합성, 이론적 타당성 및 실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기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합병관련 기업회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합병회계가 상법, 증권거래법, 세법 등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규제를 가하는 합병관련 제법규와의 조화의 모색을 제안하였다. 둘째, 합병회계의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오·남용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지분통합법을 폐지하고 매수법을 단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매수법을 합병회계처리의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 매수일 정의의 명료화, 취득한 무형자산의 인식기준 마련, 영업권 상각 및 평가의 구체화, 부의 영업권 회계처리 개선, 연속적인 주식취득의 회계처리 개선,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간의 지분교환 등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 합병관련 과세제도

합병과세제도의 대폭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합병과 일반 합병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하나의 합병에 대해 일관성 있는 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법의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비과세 합병의 적용요건을 미국의 수준 정도로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합병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타당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합병 후에도 주주지분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요건 등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과세 합병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합병으로 인정함으로써 합병과 관련되는 각 과세문제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과세 합병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기 위한 세무회계 처리방법은 기본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기업회계에 있어서 지분통합법에 의한 회계처리 방법이다. 기업회계상 매수법으로 회계처리된 합병에 대해서도 많은 경우 세무회계상으로는 피합병회사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합병회계준칙상 매수법으로 회계처리된 합병을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합병법인은 기업회계장부를 결산한 후 상당부분 추가적인 세무조정을 필요로 한다.

다음으로 일반 합병에 대한 과세제도는 일반적인 순자산의

일괄취득에 관한 회계처리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고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일반 합병의 경우는 기업회계상으로 매수법에 의한 회계처리의 대상이므로 세무회계에 있어서도 매수법에 의해 일관되게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면 일반합병에 대한 과세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합병차익, 합병차손과 영업권, 이월결손금, 청산소득, 의제배당, 증여의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 차

머리말	17
제1부 합병관련 기업회계의 개편방향	
I. 서 론	23
II. 우리나라의 합병관련 기업회계	25
1. 합병관련 기업회계의 변천	25
2. 현행 합병관련 기업회계의 주요 내용	26
가. 지분통합법의 회계처리	26
나. 지분통합법의 요건	31
다. 매수법의 회계처리	32
라. 지배·종속간의 합병	50
마. 합병재무제표 주식의 공시사항	51
III. 현행 합병회계준칙의 국제적 정합성	54
1. 적용 범위	55
2. 용어의 정의	55
가. 기업결합	56
나. 지배권	56
다. 기업결합의 회계처리 방법	57

3. 매수법의 적용	61
가. 매수원가	61
나. 매수원가의 배분	67
다. 부의 영업권	75
라. 연속적인 주식의 취득	78
마. 우발상황에 따른 매수원가 조정	79
바. 자산·부채의 후속적 식별 또는 가치 변화	80
4. 지분통합법 회계처리	81
5. 법인세 효과	82
6.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간의 거래	83
가. 개념	83
나. 회계처리 방법	84

IV. 우리나라 합병관련 기업회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6
1. 우리나라 합병관련 기업회계의 문제점	86
가. 합병회계준칙에 대한 인식의 부족 및 준칙준수에 대한 강제성 부족	86
나. 조세절감의 수단으로 합병회계준칙의 자의적 활용	87
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무시한 미국 및 국제회계기준의 답습	88
2. 우리나라 합병관련 기업회계의 개선방안	88
가. 합병회계관련 제법규와의 조화모색 및 규제강화	88
나. 합병회계 처리방법의 통일(매수법만을 인정)	89
다. 매수법 적용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	91

V. 결 론	105
제2부 합병관련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I. 서 론	111
II. 우리나라의 합병관련 과세제도	113
1. 합병과세의 본질론	113
2. 일반합병에 대한 과세제도	116
가.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117
나.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128
다. 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130
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133
3. 비과세 합병제도	135
가. 비과세 합병제도의 적용요건	135
나.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136
다.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138
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139
III. 주요국의 합병관련 과세제도	140
1. 미 국	140
가. 합병제도	140
나. 기업재조직에 대한 과세제도	142
다. 합병관련 과세제도	153
2. 일 본	160
가. 합병제도	160

나. 합병관련 과세제도	166
3. 정책적 시사점	174
IV. 우리나라 합병관련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79
1. 합병관련 과세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179
가. 우리나라 합병기업의 회계처리	179
나. 합병관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괴리	183
다. 합병관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정 가능성 검토 ..	186
2. 비과세 합병제도의 정비	188
가. 비과세 합병제도 적용요건	188
나. 비과세 합병제도 기본구조의 모색	192
3. 일반 합병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97
가. 일반 합병에 대한 과세제도의 기본방향	197
나. 일반 합병에 대한 과세제도의 구체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97
V. 결 론	208
참고문헌	211
<부록 I> 기업합병의 의의	24
<부록 II> 우리나라의 기업합병 현황	26

표 목 차

<표 II-1> 우리나라 회계준칙과 미국의 회계기준 비교 (지분통합법의 요건)	31
<표 II-2> 영업권 및 부의 영업권 회계처리 방법 요약	48
<부표 II-1> 우리나라 기업결합 추이	237
<부표 II-2> 대규모기업집단의 기업결합 추이	239
<부표 II-3>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추이	241
<부표 II-4> 유형별 기업결합 추이(1992~2000)	243
<부표 II-5> 수단별 기업결합 추이(1992~2000)	244
<부표 II-6> 업종별 기업결합 추이(1992~2000)	247

머리말

기업은 그 형태를 불문하고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과 존속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유보이익이나 신규자금으로 설비를 확충하는 등 이른바 내부성장(internal growth)을 추구한다. 또한 기업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내부자원만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를 느낄 때 그 대안으로서 기업의 합병·인수·분할 등과 같은 외적 성장(external growth)을 추구하기도 한다.

특히 합병(mergers)은 기업의 외적 성장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기업구조조정의 수단으로서도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합병이란 둘 이상의 회사가 상법상 특별규정에 따라 합병당사회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사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그 자산 및 부채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하는 동시에 피합병회사의 사원도 원칙적으로 합병회사의 사원으로 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합병의 목적은 비용절약 효과를 가져오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통한 원가절감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시장지배력의 확대 및 수평적·수직적 결합으로 사업의 다각화와 사업영역 확대를 도모하여 시너지효과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합병은 기업이 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수단이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다.

우리나라 기업합병의 역사는 일천하여 1980년대 들어 경제성장의 둔화, 산업합리화정책 등에 따라 주로 재벌의 계열회사 내의 합

병이 대부분이었으며, 그룹 내의 경영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합병은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한 기업간 경쟁적 거래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직·간접적인 개입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7년 말부터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합병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합병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업회계와 과세제도는 아직도 미흡한 면이 있다.

기업합병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1986년에 「합병회계준칙」이 제정되었으며, 이 준칙은 1999년에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기존의 「합병회계준칙」은 국제기준 및 미국회계기준과 차이점이 많았으며, 회계이론보다는 상법 또는 세법 등 합병실무를 규제하는 관련 법률에 치중했었다. 그 결과 기업인수나 합병 등 기업결합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기업재무정보를 왜곡시켰다. 이에 따라 1999년에 국제적 수준의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을 제정하여 기업결합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재무제표의 국제적 정합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은 선진외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합병을 전제로 한 국제회계기준을 모델로 하여 급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준칙조차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기업합병의 형태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합병시 발생하는 개별적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정교하게 규정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편 세법에서도 1998년 말의 법인세법 개정으로 합병차익, 청

산소득, 영업권 등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였으나 아직도 합병에 적용하기에는 불확실하고 불충분한 면이 있다. 특히 합병관련 회계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회계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근본적인 목적의 차이로 인해 완전한 일치가 불가능하겠지만 동일한 회계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업활동의 경제적 실질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양 회계를 어느 정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의 조정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합병의 경우에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괴리가 근본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세무회계에서는 합병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가능한 합병으로 인한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무회계처리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가 합병관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정을 어렵게 한다.

이와 같은 한계를 인식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합병관련 기업회계와 과세제도의 개선방향을 별도로 모색해 보기로 한다. 먼저 본 보고서의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의 합병관련 과세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기 이전에 기업회계 자체도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기업회계의 정비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합병관련 기업회계의 역사, 합병회계의 내용, 합병회계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기준서 작성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부에서는 현행 합병세제를 비과세 합병과 과세 합병으로 구분하여 논리적으로 일관된 과세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합병관련 기업회계의 회계처리 원칙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는 합병관련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1부 합병관련 기업회계의 개편방향

I.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말의 외환위기로부터 촉발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기업결합 및 분할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증권거래법상의 대량주식 소유제한 폐지 및 의무공개 매수제도의 폐지, 공정거래법상 총액출자한도 규제의 폐지 등과 같은 기업간의 인수·합병 활성화 조치로 지분 취득, 합병, 사업 양수도 등의 기업 결합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기업구조조정 수행에 따른 분할 및 분할합병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종전의 합병회계준칙은 1986년에 제정된 후 1998년 4월 기업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준거 규정 변경을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을 뿐이며 활성화되고 있는 기업결합의 회계처리에 대한 기준으로는 이론적인 측면이나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적절성이 결여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3월에 국제회계기준 (IAS 22)을 대폭 수용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이하 현행 준칙이라고 한다)이 새로 제정되었다.

기존의 합병회계준칙이 회계이론보다는 상법이론인 합병본질론(현물출자설, 인격합일설)을 반영하고 있는 반면, 현행 준칙은 기업결합을 매수거래와 지분통합 거래로 보는 회계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결합의 회계처리 방법으로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매수법과 관련하여 우발상황에 대한 매수원가의 조정 및 자산·부채의 후속적인 식별 또는 가치의 변화 인식 등과 같은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준칙은

1999년 3월 25일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고 2000년 1월 1일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반드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준칙은 1999년에 이루어진 기업결합에 일부 적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본격적인 적용은 2000년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 합병회계의 역사, 합병회계의 내용, 합병회계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합병회계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합병에 관한 회계준칙의 국제적 정합성, 이론적 타당성 및 실무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기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기준서 작성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분통합법의 폐지이다. 이는 미국에서 올해 중반 공포된 회계원칙에서도 제안된 것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객관적인 제 3자들에 의한 합병이 아닌 특수관계자들의 의한 합병이 주를 이루는 경우 특히 남용의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기타의 개선안으로는 매수법 사용의 경우 매수일 정의의 명료화, 취득한 무형자산의 인식기준 마련, 영업권 상각 및 평가의 구체화, 부의 영업권 회계처리 개선, 연속적인 주식 취득의 회계처리 개선,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간의 지분교환 등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 하고 있다.

II. 우리나라의 합병관련 기업회계

1. 합병관련 기업회계의 변천

우리나라의 합병에 관한 회계처리는 1986년 12월 16일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합병회계준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행되었으나 최근에 M&A가 급속히 증가되고 합병 내용도 복잡해짐에 따라 1999년 3월 24일자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이하 ‘합병회계준칙’이라 칭함)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대폭 개정되었으며 그 내용도 세분화되었다. 합병회계준칙의 목적을 보면 제 1조(목적)에서 “이 준칙은 「기업회계기준」 제90조에 의거 기업인수 및 합병 등 기업결합에 관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합병회계준칙은 기본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합병회계준칙은 과거의 합병회계준칙이 합병의 법률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회계처리상의 개념이 모호하고 인수·합병의 경제적 실질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었던 것에 반해 지분취득, 합병, 영업양수도 등 다양한 기업결합 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즉 기업결합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방법을 달리 적용하게 하는 등 기업결합거래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방법을 거의 수용함으로써 기업결합회계의 국제적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합병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미국의 경우 기업인수나 합병시 매

수법(purchase method)과 지분풀링법(지분통합법, pooling interests method) 등 2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매수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합병회계준칙이 미국의 매수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매수법은 합병시 합병기업이 피합병기업의 자산을 매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반면, 지분풀링법은 합병을 경제적 실체의 변화가 없이 단지 소유권의 변동으로만 파악하고 회계처리한다.

개정된 합병회계준칙은 기업인수 및 합병 등 기업결합의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에 적용한다. 개정준칙은 종전 합병회계준칙에서는 사용되지 않던 기업결합이라는 용어를 새로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그 적용범위를 형식과 관계없이 타회사의 주식인수, 기업간의 합병, 영업양수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실질적 결합형태에 부합하는 경우로 하고 기업결합의 정의를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사업부를 포함)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거나 통합함으로써 별도의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경제적 실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실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결합거래를 수용하여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는 이론적인 틀을 제공하였다.

2. 현행 합병관련 기업회계의 주요 내용

가. 지분통합법의 회계처리

1) 자산·부채의 평가

결합참여회사의 자산·부채는 장부가액으로 승계한다. 이는 결합으로 인하여 기존 주주들의 실질적인 지배력에 변동이 없다는

가정에서 비롯된다. 다만, 결합참여회사가 유사한 거래에 대해 서로 다른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였다면 결합된 실체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수정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승계한다.

2) 자본계정의 조정

결합참여회사의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자본조정계정은 장부가액으로 승계되고, 기업결합을 위해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이 결합기업의 자본금이 된다. 이 경우 지분통합을 위하여 발행된 주식, 현금 또는 기타 자산 합계액이 취득한 자본금액과 다른 경우 그 차이는 결합된 실체의 자본잉여금 총액과 이익잉여금 총액에서 순서대로 조정한다.

- ① 지분통합을 위하여 발행된 주식의 액면총액이 결합참여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결합된 실체의 자본잉여금 총액과 이익잉여금 총액에서 순서대로 차감
- ② 지분통합을 위하여 발행된 주식의 액면총액이 결합참여회사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결합된 실체의 자본잉여금에 가산

3) 기업결합관련 비용

지분통합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은 발생연도의 기간비용으로 인식한다.

4) 결합참여회사의 회계수정

지분통합법하에서는 결합으로 인한 지배력의 변동이 없고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결합으로 인한 회계처리방법의 수정은 인

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분통합을 하는 결합참여회사가 통일된 회계처리방법을 위해 결합실체의 회계처리방법을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변경은 인정된다.

5) 영업권의 계상 여부

지분통합은 기업의 매수가 아니라 결합으로 인해 결합 전에 존재하던 결합참여회사의 위험과 효익이 그대로 승계되므로 영업권이나 부의 영업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6) 기타의 회계처리

- ① 지분통합이 이루어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고 비교목적으로 작성되는 전기의 재무제표는 전기에 이미 지분통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여 작성한다.
- ② 결합참여회사가 지분통합 전의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동 재무제표에는 지분통합이 반영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결합시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교부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소각하고 신주식을 발행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한다.

7) 사례

이하에서는 지분통합법 적용시 기업결합을 위하여 발행한 주식, 현금 또는 기타 자산의 형태로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한 자본금액과 다른 경우에 대한 회계처리의 사례를 소개한다. 지분통

합법에서는 지분통합을 위하여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이 결합참여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이는 결합된 실체의 자본잉여금 총액과 이익잉여금 총액에서 순서대로 차감한다. 지분통합을 위하여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이 결합참여회사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이는 결합된 실체의 자본잉여금에 가산한다.

사례)

(주)마포는 2001년 1월 1일을 지분통합일로 하여 (주)종로를 흡수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마포는 (주)종로의 기존 주주들에게 (주)마포의 보통주식을 발행, 지분통합대가로 교부하기로 하였으며 지분통합일 현재 (주)마포의 보통주 시가는 주당 ₩300 (액면가액 주당 ₩100)이다.

지분통합일 현재 (주)종로의 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다.

대차대조표

			장부가액			공정가액		
	장부가액	공정가액		장부가액	공정가액		장부가액	공정가액
현금및현금등가물	50,000	50,000	매입채무	250,000	250,000			
매출채권	100,000	90,000	자본금	100,000				
채고자산	150,000	200,000	자본잉여금	20,000				
고정자산	200,000	260,000	이익잉여금	130,000				
계	500,000	600,000	계	500,000				

매수일 현재 (주)마포의 자본계정은 다음과 같다.

자본금: 500,000

자본잉여금: 50,000

이익잉여금: 300,000

위의 기업결합이 지분통합법에 의하여 처리될 경우 아래의 각각의 상황에 따른 분개는 다음과 같다.

1. 보통주 1,000주가 교부되는 경우

(차) 현금 및 현금등가물	50,000	(대) 매입채무	250,000
매출채권	100,000	자본금	100,000
재고자산	150,000	자본잉여금	20,000
고정자산	200,000	이익잉여금	130,000

* 소멸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우선적으로 최대한 승계함

2. 보통주 1,500주가 교부되는 경우

(차) 현금 및 현금등가물	50,000	(대) 매입채무	250,000
매출채권	100,000	자본금	150,000
재고자산	150,000	이익잉여금	130,000
고정자산	200,000		
자본잉여금	30,000		

3. 보통주 2,000주가 교부되는 경우

(차) 현금 및 현금등가물	50,000	(대) 매입채무	250,000
매출채권	100,000	자본금	200,000
재고자산	150,000	이익잉여금	100,000
고정자산	200,000		
자본잉여금	50,000		

나. 지분통합법의 요건

지분통합법은 기업결합 후 결합 전의 회계주체가 존속하고, 기업결합은 합병 전 기업주체의 합체의 성격을 갖게 되는 등 각 대상 기업의 연속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 요건을 미국회계기준과 우리나라회계기준을 비교하여 설명하면 <표 II-1>과 같다.

우리의 준칙에 의하여 <표 II-1>의 요건이 충족된다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결합된 실체의 위험과 효익이 상호분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분통합법을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① 결합참여회사간 순자산의 공정가액의 차이가 크거나 결합 후 실체에 있어 각 결합참여회사의 주주들간의 의결권 또는 지분율의 차이가 큰 경우
- ② 특정 결합참여회사의 기존 주주에게 특혜를 주는 재무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 ③ 결합된 실체의 주주 지분이 당해 주주들이 결합 전에 지배하던 결합참여회사의 결합 후 영업성과에 좌우되는 경우

<표 II-1> 우리나라 회계준칙과 미국의 회계기준 비교
(지분통합법의 요건)

우리나라 회계준칙	미국의 회계기준(APB 16)
지분통합시 매수회사를 파악할 수 없는 거래로 다음의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함. · 결합참여회사 중 주식발행회사가 결합을 위하여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이 상대방 결합참여회사의 의결권있는 보통주식 90% 이상과 교환 또는 통합되어야 함.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함. ○ 결합당사회사의 속성 · 결합당사회사는 서로 자율적이어야 한다. 기업의 결합이 입안되기 전 2년 이내에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의 종속회사나 사업부였던 적이 있으면 안됨. · 결합당사회사는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즉, 각 당사회사는 기업결합 전에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해서는 안됨.

<표 II-1> 계속

우리나라 회계준칙	미국의 회계기준(APB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합참여회사간 자산의 공정가액에서 부채의 공정가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의 공정가액”)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아야 함. · 각 결합참여회사 주주들간의 결합 전 상대적 의결권 또는 지분율이 결합으로 인하여 변동되어서는 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통합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합이 단일거래로 성립되거나 계획입안 후 1년 이내 완료 · 피결합회사 발행보통주식의 90% 이상을 결합회사의 발행보통주식과 교환해야 함. · 결합입안일 전 2년 이내 또는 결합입안일과 결합완료일 사이에 결합당사회사의 지분변동이 없어야 함. · 결합일 이전에는 공식적인 지분취득 이외의 지분의 재취득이 인정되지 않음. · 결합으로 인한 주주들의 지분변동이 없어야 함. · 결합 즉시 의결권 행사가 가능. · 결합완료일까지 결합과 관련된 중요한 절차가 완료되어야 함. ○ 계획된 거래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합완료 후 기발행주식의 소각 또는 재취득 금지 · 기존주주에 대한 재무적 특혜 금지 · 결합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 피결합회사의 주요자산의 매각 계획 금지

다. 매수법의 회계처리

1) 자산·부채의 평가

가) 원칙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자산·부채 가운데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모든 자산·부채는 매수일의 공정가액으로 인식한다. 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나)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의 범위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는 피매수회사 대차대조표상 계상여부와는 관계없이 매수일에 존재하는 모든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를 의미한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는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로 보지 않는다.

- ① 피매수회사의 무형자산 중 창업비 및 영업권
- ② 매수회사의 의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채
- ③ 매수일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손실
- ④ 매수회사 자체의 구조조정비용 또는 매수회사와 피매수회사의 통합비용

다)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로 보는 구조조정 비용

매수일 이후에 발생하는 부채나 손실은 식별 가능한 부채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매수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피매수회사의 사업폐쇄나 구조조정 등과 관련하여 매수일 현재 매수회사의 부담이 되는 부채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총당금을 계상하고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 가능한 부채의 일부로 본다.

- ① 피매수회사의 사업폐쇄나 축소 및 기타 구조조정계획에 관한 계획의 주요 내용이 매수일 또는 그 이전에 결정, 발표되어 그 계획이 실행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
- ② 매수일 이후 3월(매수가 이루어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작성일이 빠른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 작성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안이 마련되는 경우
 - i) 관련사업
 - ii) 영향을 받는 주요 사업장
 - iii) 계획실행과 관련된 인원감축으로 보상대상이 되는 종업원의 수, 담당업무 및 소속사업장

iv) 예상경비

v) 계획의 실행시기

라) 충당금 설정대상 경비

- ① 피매수회사의 종업원의 감축과 관련된 보상비용
- ② 피매수회사의 설비 및 생산라인의 폐쇄관련 비용
- ③ 피매수회사가 체결한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매수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계약파기 비용

마) 충당금의 수정

다음의 경우 기인식된 충당금을 수정하고 영업권이나 부의 영업권을 조정한다.

- ① 매수회사로부터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경우
- ② 실행계획에서 정해진 방법과 일정에 따라 이행되지 않는 경우

바) 매수일의 정의

매수일은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결정 및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의 판단 등의 기준이 되는 시간개념이며, 준칙에서 정의하는 매수일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피매수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된 날을 의미한다. 즉, 피매수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이 매수회사로 이전되고 매수원가가 확정되어 기업결합이 사실상 완료된 날을 말한다.
- ② 매수일은 매수회사가 기업활동에서 생기는 효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피매수회사의 재무·영업정책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된 날이기 때문에 매수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매수회사가 피매수회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법적절차의 종결이 매수회사가 피매수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선결조건은 아니다.

2)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가) 유가증권

- ①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투자유가증권 포함): 시가
- ② 시장성이 없는 주식

다음 중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액

- i) 발행회사 순자산의 공정가액 중 매수회사가 취득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ii) 규모나 업종, 위험도 등이 유사한 회사의 주가수익비율(PER), 배당수익률, 기대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금액

나) 매출채권, 대여금, 기타채권

채권금액에서 대손예상액 및 회수비용을 차감한 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다만,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그 명목가액으로 할 수 있다.

다) 제품 및 상품

순실현가능가액에서 매수회사의 판매활동에 대한 정상수익을 차감한 금액, 이 때 순실현가능액은 현시점에서 자산의 판매시 그 자산의 판매로부터 창출할 수 있는 수익금액에서 판매금액을 차감

한 금액을 의미한다.

라) 재공품

제품의 추정판매가액에서 재공품을 제품으로 완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원가와 제품의 판매비용 및 매수회사의 판매활동에 대한 정상이익을 차감한 금액

마) 원재료

현행 대체원가. 현행 대체원가는 평가대상자산과 동일한 자산을 시장에서 매입할 경우 지불되어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

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시가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 중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 무형자산의 공정가액을 시가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부의 영업권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식한다.

사) 퇴직급여충당금

매수일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추계액

아) 법인세 관련 자산·부채

매수로 인하여 결합된 실체의 예상손익 및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고려해서 평가한다.

자) 매입채무, 장기차입금, 기타 채무

명목가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명목가액

3) 매수원가의 산정

매수원가는 다른 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배력의 대가로 지급하는 현금이나 현금등가물, 기타 자산의 이전 및 부채의 발생 또는 자본의 증가로 매수법하에서는 개별 자산의 구입과 동일하게 역사적 취득원가주의에 따라 취득시점의 매수대가의 공정가액에 의해 평가한다. 매수원가의 평가는 앞서 설명한 자산·부채의 평가논리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준칙에서 정하고 있는 매수원가산정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매수관련 직접비용

매수와 관련하여 지급한 직접비용은 매수원가에 포함되며, 직접 비용에는 등록세, 회계사·변호사 등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매수업무담당부서의 유지비용이나 매수와 관련되지 않은 기타 일반관리비용 등 간접비용은 지분통합법과 동일하게 발생시점에서 전액 비용으로 처리된다.

나) 주식의 평가

지분통합법하에서는 지분통합을 위해 발행하는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데 비해 매수법에서는 발행당시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① 시장성 있는 주식

발행일 현재의 증가를 원칙으로 하되, 주가등락이 심하여 일정 시점의 증가를 공정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매수계약 체결일 직전 1개월 간의 증가평균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기간 중 권리락

주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매수계약 체결일 직전까지의 종가평균으로 평가한다.

② 시장성 없는 주식

다음 중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액을 기초로 공정가액을 추정한다.

- i) 매수회사 순자산의 공정가액 중 교부한 지분율에 비례하는 금액
- ii) 피매수회사 순자산의 공정가액 중 매수회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 iii) 규모나 업종, 위험도 등이 유사한 회사의 PER, 배당수익률, 기대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금액

③ 주식액면과 공정가액의 차이

매수회사의 주식이 액면미달로 발행되는 경우는 주식할인발행 차금으로 처리하고 액면초과 발행되는 경우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한다.

4) 영업권과 부의 영업권

가) 영업권

① 영업권의 개념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영업권은 취득한 식별 가능한 순자산으로부터 창출 가능한 정상이익을 상회하는 초과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금액으로 이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상회하는 전체로서의 기업가치의 초과분을 의미한다.

기업결합시 발생하는 영업권은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 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② 영업권의 회계처리

i) 영업권의 인식

합병시 발생하는 영업권의 평가는 이론적으로 자산설, 비용설, 주주지분 감소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준칙은 영업권의 자산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 및 국제회계기준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ii) 영업권의 평가

㉠ 매수시 :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매수회사지분총액을 영업권으로 계상

㉡ 영업권상각 :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20년 한도)을 내용연수로 하여 정액법으로 상각.

㉢ 매결산기 : 기인식된 영업권에 대해 매결산기에 회수가능액으로 평가함. 이 경우 영업권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 영업권감액손실로 하여 당기 비용처리하고 추후 회복할 수 없게 함.

이것은 순자산 및 매수원가의 공정가치에 근거한 잔여개념에 의해 인식된 매수당시의 영업권 평가논리를 초과수익력 개념으로 보완한 것으로 영업권의 자본화 범위가 보다 명확하게 된 면이 있으나 실무상 평가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나) 부의 영업권

① 부의 영업권의 개념

부의 영업권은 매수일에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중 매수회사의 지분이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하며, 부의 영업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 i) 피매수회사의 기대이익이 정상이익보다 낮은 경우
- ii) 회사를 전체로서 매각한다면 발생하지 않지만 개별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발생하게 될 비용으로 간주되는 경우
- iii) 식별 가능한 자산이 과대계상되거나 식별 가능한 부채가 과소계상되는 경우

② 부의 영업권의 평가

부의 영업권은 발생유형에 따라 다음 2가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i) 매수계약서상 명시된 미래의 기대손실 또는 비용 : 매수계약서상 명시된 미래의 기대손실 또는 비용이란 매수일 현재 식별 가능한 부채로 계상할 수 없으나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손실이나 비용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매수원가 초과분으로 금액을 객관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수계약서상 그 금액이 명시된 경우에 한정하고,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기타의 경우로 함.
- ii) 기타의 경우 : 'i)'에서 포함되지 않은 부의 영업권으로 피매수회사의 자산을 염가로 취득함으로써 발행할 수 있다.

㉠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 합계액의 부의 영업권 : 비화폐성자산 중 상각가능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에 따라 정액상각

㉡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의 영업권 : 화폐성자산을 염가로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매수일 현재 경제적 효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매수일에 특별이익으로 계상

③ 부의 영업권의 재무제표 표시

무형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

5) 합병차손과 영업권

합병차손이란 합병의 대가로 발행한 합병신주의 가액이 승계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한다. 그리고 영업권은 기업결합이 매수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매수대가가 매수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하며 이는 합병시 지급하는 대가액의 일부를 사실상의 권리로 인정한 것이다. 1999년의 기업결합회계준칙에서는 기업결합이 매수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합병차손에 해당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병차손과 영업권을 동일시하고 있다. 미국의 회계기준 및 국제회계기준에서 기업의 합병은 주로 제3자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처리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합병이 대부분 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병차손을 구미의 영업권과 동일시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즉, 합병차손을 합병시 지급대가가 승계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가액이라고 하는 경우 영업권을 승계순자산에 포함할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합병차손의 개념과 금액은 상이할 것이다. 만일 합병시 피합병법인에게 영업권으로서 인정할 만한 구체적 근거가 되는 자산이 있다면 승계자산에 영업권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이를 무시하고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그대로 인식하려 하면 이때의 영업권은 구체적 자산성이 확인되지 않은 단순한 차액개념에 불과한 금액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기업회계에 있어 영업권의 본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견해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견해는 기업전체와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식별되거나 평가될 수 없는 분야, 즉 기술, 지식, 경영기법, 시장조사 및 판매촉진 등에서 평균이상의 능력에 의해 발생하는 무형의 자원과 상태를 영업권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에 의하면 기업이 다른 기업을 취득,

합병, 인수할 때 상대방에게 지불한 총금액에서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시장가치를 차감한 부분을 영업권으로 보는 견해이다.

둘째 견해는 특정기업이 동종의 다른 기업보다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초과수익력을 영업권으로 보는 견해이다. 특정기업이 식별 가능한 자산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을 초과하여 수익을 획득할 때 그러한 초과수익력을 영업권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 경우에 영업권의 평가액은 미래에 기대되는 총초과수익액을 할인한 현재가치가 된다.

영업권은 성질상 기업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타회사를 취득·합병·인수하는 경우에만 대차대조표에 기록될 뿐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없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영업권은 합병·영업양수 및 전세권취득 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수익력의 여부에 상관없이 금전에 의하여 유상으로 취득하면 영업권으로 계상한다. 그러나 영업권은 차액개념인 합병차손과는 달리 독자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이는 다른 자산처럼 평가되기 때문에 영업권이 계상된 후에도 합병차손은 발생이 가능하며 실무적으로 매수법의 회계처리에서 이 두 가지를 동일시 하는 것은 이론적인 타당성이 부족하다.

영업권은 그 자체가 사실상 자산가치가 있는 별개의 자산으로서 독립적으로 평가되는 영업권과 수입자산가액의 총액과 지급대가와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따라서 현행 규정에서 이에 대한 구분을 무시하고 전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는 재고되어야 하겠다. 이의 개선안으로 합병차손을 영업권과 동일시 하는 현행 매수법의 회계처리는 영업권의 평가 및 인식이 먼저 이루어지고 차후에 합병차손을 과거의 기업회계기준처럼 자본준비금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더 타당하다고 하겠다.

6) 사례

아래에서는 매수법 적용시 영업권 및 부의 영업권에 대한 회계 처리의 사례를 소개한다. 우선 영업권에 대한 회계처리를 먼저 설명한다. 매수법에서는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 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합병대가는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text{영업권} = \text{매수원가} - \text{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액} \times \text{지분율}$$

영업권은 그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여야 하는데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반영하여 추정하며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영업권의 내용연수가 범위로 추정될 경우에는 그 범위 중 가장 짧은 기간을 선택하여야 한다.

한편, 매수일에 자산으로 인식된 영업권에 대해서는 매결산기에 회수가능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즉 미래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이 영업권의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감액손실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감액된 영업권은 추후에 회복할 수 없다.

사례)

(주)마포는 2001년 1월 1일을 매수일로 하여 (주)종로를 흡수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마포는 (주)종로의 기존 주주들에게 (주)마포의 보통주식을 발행, 매수대가로 교부하기로 하였으며 매수일 현재 (주)마포의 보통주 시가는 주당 ₩300(액면가액 주당 ₩100)이다. 매수일 현재 (주)종로의 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다.

대차대조표

장부가액	공정가액		장부가액	공정가액	
현금및현금등가물	50,000	50,000	매입채무	250,000	250,000
매출채권	100,000	90,000	자본금	100,000	
재고자산	150,000	200,000	자본잉여금	20,000	
고정자산	200,000	260,000	이익잉여금	130,000	
계	500,000	600,000	계	500,000	

매수일 현재 (주)마포의 자본계정은 다음과 같다.

자본금: 500,000

자본잉여금: 50,000

이익잉여금: 300,000

1. (주)마포가 합병거래를 매수법으로 처리한다고 할 때, 다음 각각의 경우 매수일 현재 필요한 합병분개는 다음과 같다.

(1) 매수대가로 보통주 1,000주를 교부하는 경우

(차) 현금 및 현금등가물	50,000	(대) 매입채무	250,000
매출채권	90,000	자본금	100,000
재고자산	200,000	주식발행초과금	200,000
고정자산	260,000	부의 영업권	50,000

(2) 매수대가로 보통주 1,500주를 교부하는 경우

(차) 현금 및 현금등가물	50,000	(대) 매입채무	250,000
매출채권	90,000	자본금	150,000
재고자산	200,000	주식발행초과금	300,000
고정자산	260,000		
영업권	100,000		

2. 보통주 1,500주를 매수대가로 교부하였으며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추정되었다고 할 때, 2001년 말의 회계처리를 하시오.

(차) 무형자산 상각비 10,000 (대) 영 업 권 10,000

<부(-)의 영업권에 대한 회계처리>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 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액 중 매수회사의 지분이 합병대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부(-)의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무형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text{부의 영업권} = \text{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액} \times \text{지분율} - \text{매수원가}$$

부의 영업권의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① 매수일에 식별가능한 부채로 계상할 수는 없으나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또는 손실이 매수원가에 영향을 미친 경우
- ② 매수회사가 피매수회사를 염가로 취득한 경우

합병으로 인해 취득하는 순자산가액 평가시 식별 가능한 자산이 과대계상되거나 식별 가능한 부채가 과소계상되면 부의 영업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의 영업권을 인식하기 전에 모든 식별 가능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부의 영업권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① 매수일에 식별 가능한 부채로 계상할 수는 없으나 미래에 발

생활 것으로 기대되는 손실이나 비용과 관련된 부의 영업권

② 기타의 부의 영업권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손실이나 비용과 관련하여 인식하는 부의 영업권은 매수일 현재 식별 가능한 부채로는 계상되지 않았지만 향후 그 발생이 예상되어 합병대가 산정시에는 부채로 고려되어 합병대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인 부의 영업권이다. 하지만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또는 손실과 관련된 부의 영업권은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추정하기가 어려우므로 매수계약서상 그 손실이나 비용이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이 경우 매수계약서상 명시된 미래의 손실이나 비용과 관련된 부의 영업권은 그 손실이나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에서 일시에 이익으로 환입한다. 이 경우 부의 영업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이나 비용이 환입되는 부의 영업권(이익)과 상계되므로 실질적인 이익효과는 없다. 다만 당해 손실이나 비용이 매수계약서상 명시된 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의 부의 영업권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면 된다. 기타의 부의 영업권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① 피매수회사의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비화폐성자산 중 상각가능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환입한다.
- ②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매수일에 특별이익으로 인식한다.

기타의 부의 영업권은 매수회사가 피매수회사보다 협상능력 등이 우위에 있어 피매수회사의 자산을 염가로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의 영업권은 당해 비화폐성자산에 내재된 경제적 효익이 유익됨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 비화폐성자산의 가중평균내 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환입하여 이익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부의 영업권은 화폐성자산을 염가로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수일 현재 이미 경제적 효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매수일에 일시 환입한다.

사례)

(주)마포는 2001년 1월 1일을 합병기준일로 하여 (주)종로를 흡수합병하였다. 합병일 현재 자산의 공정가액의 합은 ₩11,500,000이며 부채의 공정가액의 합은 ₩5,500,000이다. (주)마포가 합병대가로 (주)종로의 기존 주주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3,000,000이다.

부의 영업권 중 ₩500,000은 2002년에 종결될 (주)종로의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매수계약서에 규정된 것으로 2002년 중 실제로 동 금액이 발생하였다.

2002년에 매수계약서에 규정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부의 영업권에 관한 분개를 하면 다음과 같다.

(차) 부의 영업권 500,000 (대) 부의 영업권 환입(이익) 500,000
 * 손해배상 관련된 손실이 ₩500,000만큼 발생하므로 순이익효과는 0임.

<표 11-2> 영업권 및 부의 영업권 회계처리 방법 요약

구 분		회 계 처 리 방 법
영 업 권		20년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함. (단, 가치하락시 감액처리하고 감액 후에는 회복할 수 없음)
부 의 영 업 권	계약상 명시된 미래의 기대손실이나 비용과 관련된 경우	계약상 명시된 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 당해 손실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에 이익으로 일시환입(단, 계약상 명시된 기간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기타의 경우와 같이 처리함)
	기 타	피매수회사의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상각가능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환입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매수일에 특별이익으로 인식

7) 기타 고려사항

가) 연속적인 주식 매입

매수회사가 피매수회사의 주식을 일괄취득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취득하여 매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① 단계적으로 피매수회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 매수일에 일괄하여 총매수원가가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 순자산의 공정가액 중 매수회사 지분해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영업권으로 하고 미달하는 경우 부의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이 때 매수원가는 매수일 직전 매수회사 재무제표에 계상된 주식의 장부가액과 매수일 지급된 매수대가의 공정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② 피매수회사 주식과 관련된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자본조정

계정)은 매수일에 속하는 회계연도에 손익으로 인식한다.

- ③ 매수일 전에 취득한 피매수회사 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신주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자기주식으로 계상

나) 우발상황에 대한 매수원가의 조정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특정한 사건의 결과를 알 수 없으나, 미래에 그 결과가 확정됨으로 인해 추가적인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발상황이라 정의할 수 있고 회계기준상 우발이익은 인식하지 않고 우발손실은 합리적인 예측가능성에 따라 인식 여부를 결정한다. 합병거래의 경우에도 이러한 매수일 이후의 우발상황에 따라 매수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① 우발상황에 따라 매수대가를 추가적으로 지급한다는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로서 우발상황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은 매수원가에 가산
- ② 매수일 이후 피매수회사의 사업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매수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생시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을 조정
- ③ 매수대가로 발생한 주식 또는 채권의 시장가격이 매수일 이후 하락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주식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수원가를 조정하는 대신 당초에 발행된 주식 또는 채권의 발행가액을 조정

다)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의 가치의 변화

합병거래가 피매수회사의 순자산에 대한 매수대가의 지급인 교환거래라는 가정에서는 피매수회사의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의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실무상 매수일 이후에 추가적으로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가 확인되거나, 그 공정가액의 평가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① 매수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 말 이전에 가치의 변화가 인식되는 경우 기준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의 수정액만큼 영업권이나 부의 영업권을 조정
- ② 매수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 말 후에 가치의 변화가 인식된 경우 당해 회계연도의 이익 또는 손실로 인식

라) 재무제표의 작성

- ① 매수연도의 재무제표는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함.
- ② 매수회사는 매수일로부터 피매수회사의 사업성과를 손익계산서에 포함시키며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자산과 부채 및 매수에 따른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을 대차대조표에 인식함.
- ③ 비교목적으로 작성되는 전기의 재무제표에는 피매수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를 포함하지 않음.

라. 지배·종속간의 합병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간의 합병은 법률적으로 법적 실체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건이나 기업회계 입장에서는 지배종속관계의 성립시 연결재무제표준칙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지배종속관계 자체를 기업결합의 한 형태로 보기 때문에 합병이라는 법률적인 절차가 회계실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

다고 보는 것이 준칙의 기본입장이다. 따라서 준칙에서는 지배·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거래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마. 합병재무제표 주식의 공시사항

준칙에서는 기업결합이 정보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주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모든 기업결합에 공통적인 주식

- ① 결합참여회사의 상호와 대표이사, 영업개황 및 관계 등
- ② 기업결합 회계처리방법
- ③ 기업결합일, 기업결합계약체결일, 기업결합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④ 기업결합의 결과 처분하기로 결정한 사업
- ⑤ 직전 회계연도 및 기업결합일까지 결합참여회사의 요약 대차대조표·순익계산서

2) 지분통합 기업결합

- ① 지분통합을 위하여 발행된 주식의 내용 발행주식 총수, 획득한 의결권의 비율
- ② 각 결합참여회사의 자산 및 부채
- ③ 기업결합 후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에 포함된 각 결합참여회사의 지분통합일까지의 매출액, 기타 영업수익, 특별수익 및

당기순손익

3) 매수 기업결합

- ① 매수 지분율
- ② 매수원가와 우발성 매수대가의 내용
- ③ 피매수회사의 사업폐쇄와 축소 및 기타 구조조정 비용과 관련하여 매수일에 인식한 총당금의 내용과 금액

4) 영업권

- ① 상각기간
- ② 영업권의 변동내용
 - 기초금액
 - 기중 증가된 금액
 - 당기중 상각액
 - 매수일 이후 식별 가능한 순자산의 추가적인 계상이나 그 장부가액의 변동으로 인한 수정액
 - 당기에 인식한 감액손실
 - 기말금액

5) 부의 영업권

- ① 미래의 손실 또는 비용과 관련된 부의 영업권의 성격과 금액 및 손실 또는 비용의 발생 예상기간
- ② 미래의 손실 또는 비용과 관련 없는 부의 영업권의 성격과 금액 및 환입기간

③ 부의 영업권의 변동내용

6)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또는 매수대가를 매수가 이루어진 회계연도 말에 결정한다는 조건으로 매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① 그 사실과 이유

② 동 조건부 공정가액이 후속적으로 수정될 경우에는 그 수정금액과 이유

III. 현행 합병회계준칙의 국제적 정합성

본장에서는 현행 합병회계준칙의 국제적 정합성과 이론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현행 준칙과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및 미국회계기준¹⁾을 비교·검토하였다²⁾. 국제회계기준으로는 IAS 22 (Business Combinations) 및 SIC Interpretation 9-Business Combinations (IAS 22) 와 IAS 36 (Impairment of Assets) 및 IAS 38 (Intangible Assets)의 영업권관련 규정을, 미국회계기준으로는 APB Opinion No. 16 (Business Combinations), APB Opinion No. 17 (Intangible Assets)을 비롯한 관련 FASB Statement, Interpretation, Financial Technical Bulletin (FTB), Emerging Issues Task Force (EITF) 및 1999년 9월 발간된 기업결합 및 무형자산 회계처리 공개초안 (Exposure Draft)을 비교 대상으로 하였다.

1) 2001년 6월 1일자로 발표된 FASB Statement No. 141에 의하면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모든 기업합병거래에 대하여 매수법사용이 강제화되었다. 이 회계기준서에 의하면 과거 지분통합법 사용의 전제 조건이었던 12가지 사항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상이한 거래를 구분하는 데에 적절한 기준이 아니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동일한 합병거래가 상이한 방법으로 회계처리되었던 사례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 새로운 회계기준도 개념적 내용 및 매입법의 처리내용에는 큰 변화 없이 과거 APB Opinion No. 16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2) 한국회계연구원, 『기업회계준칙에 대한 검토』, 제3권, 회계기준위원회, 2000 참조.

1. 적용 범위

국제회계기준 (IAS 22), 미국회계기준 (APB Opinion No. 16) 및 현행 준칙 모두 그 적용범위를 기업결합의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결합의 정의에 있어서도 세 가지 기준이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다만, 국제회계기준 및 미국회계기준에서는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간의 거래는 경제적 실체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기업결합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그 적용범위에서 배제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 준칙에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다. 대신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에 대한 회계처리를 제4장에서 별도로 언급함에 따라 매수법이나 지분통합법이 아닌 별도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합병 이외의 기업결합 형태, 즉 주식교환이나 특정 사업부문의 양수도 등에 대한 회계처리규정이 없어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는 제4장의 회계처리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또는 매수법 등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지 불명확한 상태이다.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간의 거래의 회계처리는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2. 용어의 정의

현행 준칙과 IAS 22는 별도의 용어 정의 단락에서 기업결합, 매수, 지분통합, 매수일 등의 핵심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APB Opinion 16 및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에서 1999년에 발행한 Business Combination 공개초안에서는 별도의 용어 정의 단락은 없다. 현행 준칙상의 정의는 IAS 22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IAS 22가 지배권, 지배회사, 종속회사 및 외부주주지분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현행 준칙은 이들에 대한 정의가 없고 이들에 대한 정의는 연결재무제표준칙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연결재무제표준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정의도 IAS 22와 동일하다. APB Opinion 16은 기업결합, 매수, 지분통합 및 매수일에 대한 설명만이 있을 뿐이며 그 외의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하에서는 기업결합과 지배권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비교하여 보도록 하고 매수, 지분통합, 매수일 등의 정의 비교는 해당 단락에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가. 기업결합

현행 준칙 및 IAS 22에서는 기업결합(Business Combination)을 별도의 독립된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경제적 실체가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APB Opinion 16에서도 한 회사와 다른 하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계실체로 결합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APB Opinion 16에서 사용한 하나의 회계실체라는 개념은 IAS 22의 하나의 경제적 실체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업결합의 일반적인 정의는 현행 준칙, IAS 22 및 APB Opinion No. 16 간에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지배권

IAS 22 및 연결재무제표준칙은 지배권을 특정 회사가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사의 영업·투자·재무정책 등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APB Opinion 16은 지배권 개념을 매수회사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의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FASB Statement No. 57에

서 밝히고 있는 지배권의 개념(소유권, 계약, 기타의 약정을 통해 회사의 경영이나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과 비교해 볼 때 미국회계기준과 IAS 22 및 현행 준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배권의 정의는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기업결합의 회계처리 방법

전통적으로 기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는 매수법 (Purchase Method)과 지분통합법(Pooling of Interest Method)에 의한 방법이 있다. 즉, 기업결합의 성격에 따라 한 회사(매수회사)가 다른 회사(피매수회사)에게 현금 등의 자산을 이전하거나 피매수회사의 부채를 인수하거나 또는 매수회사의 주식을 발행하여 주고 피매수회사의 순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수법을,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회사주주간에 주식교환을 통해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결합된 회사의 순자산과 영업권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지분통합법에 의해 회계처리하여 왔다.

현행 준칙 및 IAS 22 와 APB Opinion No.16에서도 기업결합의 성격에 따라 이러한 양 방법에 의한 회계처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1999년 9월에 FASB에 의해 공표된 기업결합 및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기준서의 공개초안에는 기업결합에 대한 회계방법으로 매수법만을 제시하고 지분통합법을 폐지하고 있다. 또한, G4+1 Position Paper에서도 기업결합에 관한 회계처리를 한 가지 방법 즉, 매수법으로 일원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기업결합의 회계처리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인 추세는 매수법으로 통일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매수

현행 준칙 및 IAS 22는 매수 (acquisition)를 한 회사(이하 매수 회사라 칭함) 다른 회사(이하 피매수회사라 칭함)에 자산 이전, 채무 부담 또는 주식 발행을 통하여 그 다른 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되는 형태의 기업결합으로 정의하고, 기업결합이 매수, 즉 매수회사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일 경우에는 매수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APB Opinion No. 16에서는 지분통합법(pooling of interest method)을 적용하기 위한 12가지 조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매수법에 의해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PB Opinion No. 16에서도 독립된 주체들간의 거래를 통해 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게 된 기업결합을 매수로 보고 있다.

2) 지분통합

현행 준칙 및 IAS 22는 지분통합(uniting of interest)을 결합에 참여하는 회사 중 어느 일방도 매수회사가 되지 못하고 각 결합참여회사의 주주들이 그 결합된 실체에 내재된 위험과 효익을 지속적으로 상호 분담하는 형태의 기업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결합은 매수회사를 파악할 수 없는 지분통합의 기업결합으로 보고 지분통합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결합 참여회사 중 주식발행회사가 결합을 위하여 발행한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이 상대방 결합참여회사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의 거의 대부분 (substantial majority)과 교환 또는 통합

되어야 한다³⁾.

- 결합 참여회사간 자산의 공정가액에서 부채의 공정가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의 공정가액 이라 칭함)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아야 한다.
- 각 결합참여회사 주주들간의 결합전 상대적 의결권 또는 지분율이 결합으로 인하여 변동되어서는 아니된다.

이에 반해 APB Opinion No. 16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12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분통합법에 의해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PB Opinion No. 16의 지분통합법 적용대상거래가 현행준칙 및 IAS 22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현행 준칙 및 IAS 22상의 지분통합법 적용 조건과 APB Opinion No. 16의 12가지 조건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APB Opinion No. 16에서는 결합참여회사의 순자산 가액 규모가 유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회사의 순자산 규모가 현격히 차이가 나는 회사간의 기업결합이 발생하더라도 12가지 지분통합법 적용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분통합법에 의한 회계처리가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현행 준칙 및 IAS 22에서는 매수회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APB Opinion No.16에서는 기존 주주들에 의한 추가적인 투자나 주주들에게 대한 자산분배 없이 기업결합 참여회사 주주지분이 하나의 결합실체의 주주지분으로 통합되는 거래의 요건을 나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PB Opinion No. 16 하에서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보다는 조건

3) 현행 준칙에서는 지분통합일에 유통중인 보통주식의 90% 이상과 교환 또는 통합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있다.

하나 하나의 충족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 방법이 결정됨에 따라 제시된 조건의 실무상 해석과 적용에 많은 논쟁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3) FASB 및 G4+1의 기업결합 회계처리에 대한 최근 입장

FASB에서는 1996년 8월부터 APB Opinion No. 16, Business Combination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하여 1999년 9월 기업결합과 무형자산에 대한 공개초안을 내고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1999년 12월까지 받은 상태이다. 공개초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결합의 회계처리를 매수법으로 일원화하고 지분통합법을 폐지한 점이다. 이외에도 영업권 내용연수 한도를 40년에서 20년으로 감축하였고 부의 영업권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상각가능 비재무적 자산(depreciable nonfinancial assets)가액과 상제한 후 잔액을 이연·상각처리하던 것을 국제회계기준과 마찬가지로 특별이익으로 처리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 FASB는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00년 말까지는 최종 기준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회계기준 제정기구와 FASB가 작성에 참여하고 IASC staff가 참관인으로 참여한 G4+1 Position Paper에서도 역시 기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를 매수법으로 통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G4+1 Position Paper는 기업결합 회계처리의 국가간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의 매수법 및 지분통합법과 Fresh-Start method를 비교 검토한 결과 기업결합에 관한 회계처리 방법은 한 가지 방법 즉, 매수법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다른 어떤 대안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기업결합 회계처리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는 매수법으로의 단일화이다. 이는 지분통합법이 지배회사가 100% 소

유하고 있는 두 개의 종속회사를 통합하는 경우와 같이 경제적 실질의 변화가 아니라 법률적 형태의 변화가 일어날 때 적용하기 위하여 고안된 방법으로 주주지분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거래에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왜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매수법의 적용

매수법은 기업결합을 매수회사가 피매수회사의 순자산을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하는 거래로 인식하여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개별자산의 취득과 유사하게 회계처리한다. 따라서, 취득된 순자산의 매수원가는 매수회사가 취득을 위해 포기한 자산 또는 부담한 부채의 공정가액으로 결정된다. 매수법이 개별자산의 취득과 다른 점은 결정된 매수원가를 순자산을 구성하는 개별 자산·부채에 배분하는 과정이 추가된다는 점이다.

매수법에 따른 회계처리는 크게 매수원가의 결정, 매수원가의 배분, 영업권 및 부의 영업권의 회계처리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가. 매수원가

1) 매수일

매수일은 현행 준칙 및 IAS 22와 APB Opinion No. 16 모두에서 피매수회사의 영업성과가 매수회사의 영업성과에 포함되고 피매수회사의 순자산의 공정가액이 매수회사의 자산·부채에 포함되는 기준일로서 중요한 회계적 의미를 갖는다.

IAS 22는 매수일을 피매수회사의 순자산과 영업활동에 대한 지

배권이 매수회사로 유효하게 이전된 날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매수회사가 피매수회사의 영업 및 재무정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피매수회사의 영업성과를 향유할 수 있게 된 날로서 법적 절차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기업결합 참여자의 이익이 보장되는 날이다. 따라서, 피매수회사의 자산·부채가 이전되기 전 또는 매수 대가의 지불 이전에도 계약서 등에 의해 피매수회사의 영업 및 재무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이 바로 매수일이 된다.

APB Opinion No. 16은 매수일을 원칙적으로 피매수회사로부터 자산을 인수받고 그 대가로 다른 자산이나 주식을 발행하여 준 날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업결합 당사자간의 편의를 위해 약정에 의한 특정일, 즉 기업결합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사이에 있는 회계 결산일을 매수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날을 매수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그 지정일에 피매수회사에 대한 중요 지배권이 서면계약에 의해 매수회사로 유효하게 이전되어 회계 목적상 매수일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⁴⁾ 또한, 매수일을 특정일로 지정한 경우에는 미래에 지급될 매수대가는 실제 매수원가와 매수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기간 동안의 매수원가(단, 매수대가가 보통주 발생에 의해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한 이자상당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이자상당액은 실제 지급되는 가액에서 차감하여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APB Opinion No. 16에서는 매수일을 기본적으로 매수회사와 피매수회사 간에 자산·부채가 교환된 날로 보고 있으나 계약서 등에

4) APB Opinion No. 16 paragraph 93은 피매수회사의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활동의 중요한 변경이나 배당금 지급과 같은 사항을 제외한 모든 영업 및 재무 활동에 대한 권한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의해 중요 지배권이 매수회사로 이전된 것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피매수회사 순자산과 매수대가의 교환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지배권 이전일을 매수일로 인정하여 주고 있다.

APB Opinion No. 16의 견해는 원칙적으로 자산·부채의 교환 여부와 관계없이 지배권 이전 여부에 중점을 두는 IAS 22의 견해와 일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이론적인 근거는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APB Opinion No. 16도 IAS 22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피매수회사의 지배권이 이전되는 시점을 매수일로 보고 있고 이러한 지배권 이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건이 교환거래 발생일이므로 이를 매수일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지배권 이전일을 매수일로 명시할 경우 실무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를 구체화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실무 적용상의 편의를 위해 다른 객관적인 증빙으로 피매수회사의 자산·부채에 대한 지배권이 이전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 날을 매수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현행 준칙은 매수일을 다음과 정의하고 있다.

매수일이란 피매수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된 날을 말한다. 즉 피매수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이 매수회사로 이전되고 매수원가가 확정되어 기업결합이 사실상 완료된 날을 말한다.

현행 준칙상의 매수일의 정의는 IAS 22에서 제시하고 있는 피매수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된 날과 APB Opinion No. 16에서 제시하고 있는 순자산 및 영업활동이 매수회사로 이전되고 매수원가가 확정된 날 모두를 제시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의미이나 실무상 적용 시에는 서로 다른 날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매수일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 매수원가 결정

현행 준칙 및 IAS 22와 APB Opinion No. 16 모두 매수원가를 피매수회사의 자산 또는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현금이나 현금 등가액 또는 기타 매수 대가의 공정가액과 매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직접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매수 원가에 대한 정의는 동일하나 세부적인 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가) 현금 이외 매수대가의 공정가액 결정 기준일

현금 이외의 매수 대가는 유가증권 (매수회사 주식 포함) 또는 고정자산 등의 이전 또는 사채 등의 채무발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생한 채무의 공정가액을 현재가치로 하는 점에 있어서는 세 기준이 동일하나 매수원가의 공정가액 측정시점에 대하여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IAS 22 paragraph 21과 22에서는 기타 매수대가는 교환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수회사와 피매수회사 간에 계약서를 통하여 특정일에 피매수회사의 영업 및 재무정책에 대한 지배권을 매수회사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매수 대가의 지급 및 법적인 소유권의 이전은 그 이후의 특정일로 한 경우에는 매수일과 매수대가의 공정가액 결정을 위한 기준일이 다르게 된다.

APB Opinion No. 16에서는 현금 이외의 매수대가의 공정가액 결정 기준일을 매수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IAS 22와 같이 매수일과 매수대가 결정을 위한 기준일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발생하

지 않는다. 매수일은 3가.(1)에서 살펴보았듯이 원칙적으로 피매수 회사의 자산·부채를 인수하고 그 대가를 지불한 날이므로 IAS 22의 규정인 교환일과 일치한다. 다만, 매수일을 예외적으로 교환일이 아닌 기업결합 시작과 교환일 사이의 특정일로 정한 경우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현행 준칙에서는 현금 이외의 매수대가를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그 측정 기준일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매수원가를 식별 가능한 피매수회사 자산·부채의 매수일 현재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현금 이외의 자산을 매수대가로 지불할 경우에는 매수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준칙상의 매수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하며 아울러 매수원가의 공정가액 결정 기준일을 명시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나) 매수대가로 발행된 매수회사 주식의 평가

IAS 22에서는 매수대가로 발행된 매수회사 주식이 시장성이 있는 경우 교환일 현재의 시가, 즉 발행일의 시가로 매수대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가의 과도한 변동이 있거나 주식 거래가 미약하여 시가가 발행 주식의 공정가액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내용이 공표된 날 전후 적정 기간의 주가 변동 내용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IAS 22는 발행일의 시가를 시장성 있는 매수회사 주식의 공정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매수회사의 주식이 시장성이 없는 경우에는 매수회사 순자산의 공정가액 또는 피매수회사 순자산의 공정가액의 하나에서 매수회사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으로 공정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현행 준칙상 매수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공정가액은 IAS 22규정과 유사하다. 다만, 시장성 있는 주식의 경우 공정가액을 발행일의 종가로 하고, 시가의 등락이 심한 경우는 매수계약 체결일 직전 1개월 간의 종가 평균으로 규정함으로써 IAS 22의 규정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시장성이 없는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매수회사 및 피매수회사 순자산의 공정가액 외에 규모나 업종, 위험도 등이 유사한 회사의 주가수익비율 (PER), 배당수익율, 기대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금액을 추가하고 있다.

한편, APB Opinion No. 16은 시장성 있는 매수회사 주식의 가액으로 매수일의 시가와 합의된 기업결합 조건의 공표일 이후 일정기간 동안의 주가에 근거한 가액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 어느 시점의 시가를 공정가액으로 할 것인지가 불명확하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EITF 95-19에서는 합의된 매매조건의 공표일 이후 일정기간 동안의 주가에 근거하여 매수회사 주식의 공정가액을 결정하도록 일원화하였다. 이는 기업 경영진이 합의한 매매조건에 대한 주주 및 관련 규제 기관의 승인을 얻기 위해 주가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매수원가에 반영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또한 이 시점의 주가가 실제 매수가격 결정을 위해 협상시 사용된 가격에 가장 근접한 가액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식 발행일의 시가를 공정가액으로 인식하고 예외적으로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일정기간 동안의 주가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준칙 및 IAS 22기준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APB Opinion No.16에서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공정가액 결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언급이 없다.

다) 주식 등록비용 및 발행 비용의 회계처리

매수관련 직접비용 중 현행 준칙 및 IAS 22는 매수대가로 발행된 주식의 등록비 및 발행비용을 매수원가로 회계처리 하는 반면, APB Opinion No. 16은 발행된 주식의 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기타

현행 준칙 및 IAS 22에서는 매수대가로 발행된 비참가적, 비전환 우선주의 공정가액 평가와 관련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반면, APB Opinion No. 16에서는 이를 부채처럼 배당금과 상환액을 적정 할인율로 할인한 금액을 공정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매수원가의 배분

현행 준칙, IAS 22 및 APB Opinion No. 16 모두 매수원가는 우선 피매수회사의 식별 가능한 모든 자산·부채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그 배분 기준으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을 제시하고 있다. 매수원가와 피매수회사 자산의 공정가액에서 부채의 공정가액을 차감한 금액과의 차액은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으로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적용방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매수원가의 배분 기준

IAS 22에서는 매수원가를 개별 자산·부채에 배분할 때 지배회사이론(Parent Company View)에 따라 매수회사 지분은 교환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외부주주지분은 매수 전 장부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기업실체이론(Entity Theory)에 따라 매수일 현재의 외부주주지분도 공정가액으로 배부하는 방법도 허용하고 있다.

APB Opinion No. 16 및 현행 준칙에서는 매수원가의 개별 자산·부채로 배분은 매수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매수회사의 외부주주지분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하지만, 미국의 회계관행에서는 IAS 22에서 제시되고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연결재무제표 준칙에서는 “매수법 적용시 외부주주지분은 종속회사의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에 대하여 외부주주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인식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IAS 22에서 제시한 대체적 방법만을 인정하고 있다.

2) 취득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결정

현행 준칙, IAS 22 및 APB Opinion No. 16에 제시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결정기준은 대체로 유사하나 유형자산(토지 제외), 무형자산 및 피매수회사의 구조조정 충당금(restructuring provision)의 인식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 유형자산(토지 제외)의 공정가액

IAS 22에서는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의 공정가액을 그 보유목적에 상관없이 통상 감정기관에 의해 결정되는 시가로, 현행 준칙에서는 시가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중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으로 보고 있어 중요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FASB Statement No. 121(Accounting for the Impairment of Long-Lived Assets and for Long-Lived Assets to Be Disposed of)에서는 기업결합을 통해 취득한 유형자산의 공정가액을 그 보유목적에 따라 계속 사용할 목적인 경우에는 현행대체원가(current replacement cost)로, 판매목적인 경우에는 순실현가능액(net realizable value)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결합 후 판매예정인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IAS 22 및 현행준칙과 FASB Statement No. 121에 의한 공정가액이 예상 판매비용만큼 차이를 보이게 된다.

나) 인식 가능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액

IAS 22에서는 인식 가능한 피매수회사의 무형자산은 그 공정가액으로 매수일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매수회사의 연구개발비도 미래 효익이 예상되고 그 공정가액을 합리적으로 측정 가능하면 인식 가능하다. 무형자산의 공정가액은 그 무형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액을, 거래되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회사가 제3자로부터 해당 무형자산을 취득할 경우 지급할 가액의 합리적인 추정치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무형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제3자에게 지급할 가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부의 영업권이 발생하거나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무형자산의 인식이 가능하다. 즉, 부의 영업권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그 무형자산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예상되고 공정가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 무형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이 없으면, 해당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없다. 이는 부의 영업권 발생이 무형자산의 공정가액 추정 오류에서 발생하였다는 가정에 따른 회계처리로 판단된다.

현행 준칙에서도 무형자산을 시가 또는 감정가액으로 인식하도

록 규정하면서, 시가 이외의 방법으로 무형자산의 공정가액을 측정할 경우에는 부의 영업권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식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IAS 22와 유사하다. 다만, 현행 준칙에서는 피매수회사의 영업권 및 창업비는 승계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APB Opinion No. 16에서는 인식 가능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액을 감정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IAS 22나 현행준칙과 같이 시가를 공정가액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따라 시가 이외의 방법, 즉 제3자 거래가액이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무형자산의 공정가액을 측정할 경우에 부의 영업권 금액을 발생시키거나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고 하는 제한조건도 없다. 따라서, APB Opinion No. 16하에서는 미래 효익이 기대되고 그 공정가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영업권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일단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있으며, 발생한 부의 영업권은 투자유가증권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에서 공정가액 비율로 차감된다. APB Opinion No. 16의 이러한 규정은 부의 영업권이 발생하게 되고 무형자산의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인식을 제한하고 있는 IAS 22 및 현행 준칙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피매수회사의 연구개발비에 대하여는 FIN 4(Applicability of FASB Statement No. 2 to Business Combinations Accounted for by the Purchase Method)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다. FIN 4에서는 피매수회사에 인식 가능한 연구개발비가 있는 경우 이를 다른 무형자산들과 마찬가지로 매수일에 인식하되 해당 연구개발비가 FASB Statement No. 2(Accounting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에서 자산화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미래에 다른 연구 프로젝트나 기타 용도로 사용될 가치(alternative future

uses in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or otherwise)'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이 종료하는 날에 비용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피매수회사의 연구개발비를 매수일에 인식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이 영업권으로 계상되어 영업권의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화됨에 따라 미래 대체이용 가치가 없는 연구개발비의 비용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연구개발비는 발생시 비용처리 한다는 FASB와 개발비의 경우 IAS 36상의 자산 인식 조건을 충족하면 인식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IASC 및 현행 준칙과의 입장차이에서 발생한 회계처리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다) 구조조정 충당금(Restructuring Provision)

현행 준칙 및 IAS 22에서는 매수 후 이루어지는 매수회사 자체의 구조조정 비용을 매수일에 부채성 충당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피매수회사의 사업폐쇄나 축소 및 기타 구조조정과 관련된 미래예측비용(피매수회사 종업원의 해직에 따른 보상비용 포함)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매수일에 부채로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피매수회사의 사업폐쇄나 축소 및 기타 구조조정에 관한 계획의 주요 내용이 매수일 또는 그 이전에 결정·발표되어 그 계획이 실행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로 계획의 주요 내용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

- (i) 피매수회사 종업원의 감축과 관련된 보상비용
- (ii) 피매수회사의 설비 및 생산라인의 폐쇄 관련비용
- (iii) 피매수회사가 체결한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매수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계약파기 비용

2) 매수일 이후 3월(매수가 이루어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승인

일(현행 준칙에서는 “작성일”)이 빠른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 승인일(또는 작성일) 이내에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안이 마련되는 경우

- (i) 관련 사업
- (ii) 영향을 받는 주요 사업장
- (iii) 계획실행과 관련된 인원감축으로 보상대상이 되는 종업원의 수, 담당업무 및 소속사업장
- (iv) 예상 경비
- (v) 계획의 시행시기

현행 준칙은 IAS 22의 관련규정을 거의 동일하게 수용한 상태로, 유일한 차이점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안의 완성기한을 IAS 22에서는 매수일로부터 3개월 또는 매수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승인일 중 빠른 날인 반면, 현행 준칙에서는 재무제표 승인일 대신 재무제표 작성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APB Opinion No. 16에서는 구조조정충당금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며, 대신 Technical Bulletin 85-5와 EITF 95-3 (Recognition of Liabilities in Connection with a Purchase Business Combination)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 Technical Bulletin 85-5에서는 IAS 22와 마찬가지로 기업결합에 따른 매수회사 생산시설의 폐쇄나 감축비용은 발생시점에 비용처리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반면, EITF 95-3에서는 피매수회사의 구조조정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매수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설정 대상 금액에 피매수회사 종업원의 감축 외에 타지역으로의 재배치 관련 비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현행 준칙 및 IAS 22와 유사하다. 그러나 부채인식 요건을 보면, 현행 준칙 및 IAS 22에 비해 완화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즉, 현행 준칙 및

IAS 22에서는 매수일 이전까지 피매수회사의 사업폐쇄나 축소와 관련된 주요 내용이 확정되어 공표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EITF 95-3에서는 경영진의 피매수회사 사업폐쇄 또는 감축 계획의 검토 개시만으로도 구조조정 총당금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행 계획의 작성도 현행 준칙이나 IAS 22에서는 매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EITF 95-3에서는 기업결합 종료일(consummation date of acquisition)로부터 1년 이내에만 완성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수일에 계상된 부채성 총당금을 수정하여야 할 경우 IAS 22 및 현행 준칙에서는 매수일 이후 3개월 이내(공식 수행 기간 확정 시한)에 추정된 총당금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만 매수대가 즉 영업권의 조정이 가능하고 그 이후 기간에 발생한 수정 사항은 비용처리를 하여야 하나, EITF 95-3에서는 영업권 조정 가능 기간이 1년까지로 연장되었다.

3) 영업권

가) 영업권의 인식

현행 준칙과 APB Opinion No. 16에서는 매수원가 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영업권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AS 22에서는 교환거래 발생일(date of the exchange transaction) 현재 매수원가와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비교하여 영업권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APB Opinion No. 16과 달리 IAS 22에서는 매수일을 피매수회사의 순자산에 대한 지배권이 사실상 매수회사로 이전된 날로 정의하고 있음에 따라 자산·부채 교환일과 매수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APB Opinion

No. 16상의 매수일은 자산·부채 교환일이므로 결국 IAS 22의 교환거래 발생일과 APB Opinion No. 16의 매수일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현행 준칙상의 매수일은 지배권 이전 기준과 자산·부채 교환 기준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실무적용시 혼란이 없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나) 영업권의 상각 및 평가

영업권 상각 방법에 있어 IAS 22와 APB Opinion No. 17은 정액법을 기본방법으로 규정하되 다른 방법이 보다 합리적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현행 준칙은 정액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중요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세 기준 모두 영업권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그 한도에 대한 규정에서는 차이가 있다. IAS 22는 20년을 한도로 하되, 영업권이 특정 자산(특정 지역에 대한 방송권 등)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하는 기간도 인정하여 주고 있다. 이에 반해, APB Opinion No. 17은 40년을, 현행 준칙은 20년을 그 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IAS 22와 같은 예외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한편, FASB의 1999년 9월 7일자 기업결합 공개초안에서는 내용연수의 한도를 40년에서 20년으로 축소하여 IAS 22와 일치시키고 있다. 그리고, IAS 22 및 APB Opinion No. 17에서는 매년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 방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법에 의해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준칙에서는 이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다.

영업권의 감액손실에 대한 회계처리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IAS 22에서는 20년을 초과하는 내용연수를 사용할 때에는 매년 말에 감액손실 발생 유무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20년 이내일 경우에는 IAS 36의 규정에 따라 감액손실 발생 징후가 있는 경우에만 감액손실 발생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인식된 감액 손실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APB Opinion No. 17과 현행 준칙은 매년 감액손실 여부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단 인식된 감액손실은 향후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다. 부의 영업권

1) 부의 영업권 인식

영업권과 마찬가지로 현행 준칙과 APB Opinion No. 16에서는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 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액 가운데 매수회사의 지분이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을 부의 영업권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IAS 22에서는 교환거래 발생일 현재 매수원가와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비교하여 부의 영업권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PB Opinion No. 16의 매수일은 원칙적으로 자산·부채의 교환일이므로 결국 IAS 22와 동일한 규정으로 볼 수 있으나 현행 준칙상의 매수일 개념은 모호한 상황이므로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2) 부의 영업권 회계처리

부의 영업권의 회계처리는 APB Opinion No. 16과 IAS 22의 가

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준칙은 IAS 22 규정을 동일하게 수용하고 있어 IAS 22와는 차이가 없다.

IAS 22에서는 모든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기록한 후 부의 영업권이 발생하면, 우선거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시가 외에 기타의 방법으로 추정한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무형자산 가액을 감소시켜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무형자산 감액 후 남아있는 부의 영업권은 피매수회사의 미래예상손실에 따른 매수대가 감소분과 피매수회사 자산의 염가구매에 따른 이득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미래예상손실에 따른 매수대가 할인액은 당해 예상 손실액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에 이득으로 인식하고, 염가 구매분은 우선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의 공정가액 상당액은 비화폐성 자산의 염가 취득으로 간주하여 비화폐성 자산 중 상각가능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현행 준칙에서는 정액법에 따라 인식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음)하고 남은 잔액은 화폐성 자산을 염가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수일에 이득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의 영업권은 무형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APB Opinion No. 16은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순자산의 공정가액은 투자유가증권을 제외한 비유동자산(noncurrent assets)에서 그 공정가액 비율로 차감하고, 차감 후 잔액은 이연 처리하여 4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상각하여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IASC가 부의 영업권을 피매수회사의 미래 예상 손실에 따른 매수원가 할인액과 피매수회사 자산의 염가 취득에 따른 차익으로 보는 반면, APB는 부의 영업권 발생 원인을 취득자산 공정가액의 부정확한 추정에 있다는 가정에 따른 회계처리이다. 즉, 취득된 자산의 가액은 그 취득원가(자산 취득을

위해 매수자가 포기한 자산 또는 발생시킨 부채의 공정가액과 취득된 자산의 공정가액 중 보다 명확한 금액)를 초과할 수 없다는 취득원가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적으로 그 공정가액이 불명확한 비유동자산의 가액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IAS 22는 부의 영업권 발생원인을 자산의 염가구매와 미래손실예상분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제시한 반면, APB Opinion No. 16에서는 부의 영업권의 발생원인을 공정가액 측정 오류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공정가액 측정 오류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비유동성 자산의 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취하고 있다. 한편, FASB의 1999년 9월 7일자 기업결합 및 무형자산 회계기준서의 공개초안에서는 APB Opinion No.16의 부의 영업권에 대한 회계처리를 수정 제시하고 있다. 공개초안에서는 부의 영업권 발생시 IAS 22와 마찬가지로 우선거래 시장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시가 이외의 방법으로 공정가액을 추정한 무형자산에서 차감하여 주고(해당 무형자산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는 각 무형자산의 공정가액 비율로 차감), 차감 후 잔액에 대해서는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상각가능 비재무자산(depreciable nonfinancial assets)과 시가로 평가된 무형자산에서 공정가액비율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남은 잔액은 매수원가 배분이 종료된 회계연도에 특별이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초안에서는 기존의 부의 영업권 발생 원인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여 부의 영업권이 공정가액의 측정 오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정가액 측정 오류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산의 가액부터 감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산의 가액을 조정된 후에도 남은 부의 영업권 잔액은 이연시키는 대신 당기손익에 특별이익으로 반영하도록 변경하였다. 이러한 변경의 논거로 기존의 이연처리방법이 상각방법과 상각기간 결정에

문제점이 있고 부의 영업권의 발생가능성이 희박함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당기 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고 국제적인 관습에도 부합한 회계처리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IAS 22와의 차이점으로는 미래영업손실액으로 인한 부의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는 점과 부의 영업권으로 발생한 금액을 상각가능 비재무자산에서 직접 차감하는 점만 남게 되었다.

라. 연속적인 주식의 취득(Successive Share Purchase)

현행 준칙과 IAS 22의 큰 차이 중 하나가 두 번 이상의 주식 취득을 통해 이루어진 기업결합에서 발생하게 될 영업권 및 부의 영업권 금액의 결정 문제이다. IAS 22에서는 기업결합이 두 번 이상의 주식취득을 통하여 이루어질 경우에는 주요 주식매입거래별로 매입 거래일 현재 피매수회사 순자산의 공정가액 중 지분 상당액과 매입원가를 비교하여 영업권 및 부의 영업권 금액을 결정하고 이들의 합을 매수일 현재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 금액으로 결정하는 단계적 취득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현행 준칙에서는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 순자산의 공정가액 중 매수회사 지분 해당액과 매수원가(매수일 직전 매수회사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투자주식의 장부가액과 매수일에 지급된 매수대가의 공정가액의 합)를 비교하여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 가액을 결정하는 일괄 취득법을 사용하고 있다. 현행 준칙은 단계적 취득법을 적용하는 경우 주요 취득 시점별로 피투자회사의 공정가액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실무적 사항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APB Opinion No. 16에는 연속적인 주식의 취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그러나 AICPA Accounting Interpretation No.2 of APB 17, Intangible Assets, Goodwill in a Step Acquisition과

ARB 51,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paragraph 10과 11에서는 IAS 22와 마찬가지로 단계적 취득법에 의한 회계처리를 제시하고 있다.

마. 우발상황에 따른 매수원가 조정(Contingent Consideration)

현행 준칙 및 IAS 22와 APB Opinion No. 16 모두 기업결합 관련 계약서상에 미래 특정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매수대가를 조정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매수원가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세 가지 기준 모두 매수일 이후 피매수회사의 사업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매수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추가 지급되는 금액만큼 매수원가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매수대가로 발행한 주식 또는 채권의 시장가액이 특정 가액에 미달함에 따라 추가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수원가의 조정은 하지 않고 기존에 발행된 주식이나 채권의 발행가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본적인 회계처리 방침은 세 기준이 동일하나 우발 상황에 따른 매수원가의 인식시점에 대해서는 현행 준칙 및 IAS 22와 APB Opinion No. 16 이 다소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행 준칙 및 IAS 22에서는 매수일에 우발상황에 따른 매수원가의 지급 가능성이 확실(probable)하고 그 금액이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하면 그 가액도 매수원가로 기록하고, 미래에 우발상황이 발생하지 않거나 추정액의 조정이 필요하면 그 때 다시 매수원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APB Opinion No. 16에서는 우발사항에 따른 매수원가의 지급이 결정적(determinable)인 경우에만 매수원가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발상황 기

간(contingency period)의 종료시점에 추가적인 주식이나 채권이 발행되거나 발행되어질 수 있는 경우에도 우발상황 결과가 확정되고 추가적인 매수대가가 결정될 때까지는 우발상황에 따른 매수원가의 조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APB Opinion No. 16에서는 현행 준칙 및 IAS 22에 비해 우발상황이 보다 확정적인 경우에 우발상황에 따른 매수대가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자산·부채의 후속적 식별 또는 가치 변화(Subsequent Identification or Change in Value of Identifiable Assets and Liabilities)

현행 준칙의 자산·부채의 후속적 식별 또는 가치의 변화에 대한 회계처리는 IAS 22를 동일하게 수용한 상태로 차이점이 없다. IAS 22에서는 매수일 이후 확보된 자료에 의해 추가적으로 자산·부채의 식별이 가능하여지거나 매수일에 인식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이 잘못 계상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 시점에 당해 자산·부채 가액을 인식하거나 수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수일 이후 추가적으로 자산·부채 가액을 인식하거나 그 가액에 대한 수정이 매수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 말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수원가 배분의 연장으로 보아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 금액을 수정하여 주고 그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당해 회계연도 이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회계기준에서는 FASB Statement No. 38(Accounting for Preacquisition Contingencies of Purchased Enterprises)에서 매수일 현재 존재하였던 우발 자산·부채의 후속적 인식 문제를 다루고 있다. 즉, 매수일 현재 우발 자산이나 부채의 존재를 확인

시켜 줄 사건이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probable)하고 기업 결합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매수원가 배분기간(allocation period)에 당해 우발 자산·부채를 공정가액 또는 기타의 합리적인 추정가액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이를 매수원가의 배분으로 보아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 금액을 수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매수원가 배분기간 이후의 수정은 해당 회계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FASB Statement No. 38의 부록B(Basis for Conclusions)에서는 매수일 현재의 공정가액 파악을 위한 감정평가사의 평가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매수일이 속한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시점까지 취득된 자산·부채의 정확한 공정가액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전 예측치로 계상한 후 매수원가 배분기간 내에 수정한 경우에는 이를 당기손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ASB Statement No.38은 전체적으로 IAS 22의 자산·부채의 후속적 식별 또는 가치변화의 회계처리와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단, IAS 22는 매수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 말까지를 매수원가 배분기간으로 보는 반면, FASB Statement No. 38은 기업결합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매수원가 배분기간으로 보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

4. 지분통합법 회계처리(Pooling of Interests)

현행 준칙은 기업결합이 지분통합의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 이를 지분통합법에 의해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회계처리 방법은 IAS 22와 동일하다. IAS 22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분통합법 회계처리의 핵심은 기업결합 참여 회사의 자산·부채·잉여금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은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기업결합을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닌 독립된 두 실체가 기존에 향유하던 효익과 부담하던 위험을 동일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단순히 결합한 것으로 보는 지분통합법의 특성에 기인한다.

5. 법인세 효과

현행 준칙 및 IAS 22는 기업결합에 따른 법인세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으로 두 가지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즉,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의한 이연법인세차 또는 이연법인세대의 인식과 매수일에 인식하지 아니한 일시적 차이에서 발생한 법인세 효과가 매수일 이후에 실현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한 내용이다.

IAS 22에서는 매수일에 인식하지 아니한 이연법인세차가 매수일 이후에 실현되었을 경우에 이를 전액 당기 이익으로 인식하고 영업권 금액은 매수일에 이연법인세차를 인식하였을 경우 계상되었어야 할 금액으로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영업권의 감소액은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준칙 내용은 IAS 22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그 회계처리 방법은 동일하다.

한편, FASB Statement No. 109에서도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IAS 22와 마찬가지로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의한 이연법인세차(대) 인식과 매수일에 인식하지 않은 이연법인세차가 실현된 경우에 대한 회계처리를 언급하고 있다.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차이에 의한 이연법인세차(대) 인식은 IAS 22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매수일에 인식하지 않았던 이연법인세차가 실현된 경우의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IAS 22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FASB Statement No. 109에서는 매수일에 인식하지 않았던 이연법인세

차가 실현된 경우에 이를 모두 당기 이익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먼저 영업권 금액에서 이를 직접 차감하고, 다음에는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무형자산에서 차감한다. 그리고 난 후에도 잔액이 남은 경우에만 이 금액을 당기 이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간의 거래

가. 개념

동일 지배(common control)하에 있는 기업이란 하나의 경제적 실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 즉 연결 대상 회사를 의미한다. 적용범위에서 살펴보았듯이 IAS 22 및 APB Opinion No. 16에서는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간의 합병 또는 지분교환거래를 그 적용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다. 즉, 기업결합은 별도의 독립된 둘 이상의 회사(“사업부”를 포함함. 이하 동일합)가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미 하나의 경제적 실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간의 합병 또는 지분교환은 한 경제실체 내부의 거래로 아무런 경제실체 변경을 초래하지 않아 기업결합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래의 예로는 지배회사가 100% 소유한 종속회사의 자산·부채를 인수하고 종속회사를 청산하는 경우(지배·종속회사 간의 합병), 지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종속회사 지분을 새로 설립한 100% 소유의 지주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지배회사가 특정 종속회사 지분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규 발행되는 주식과 보유중인 다른 종속회사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단, 기존 외부 주주지분은 변동이 없는 경우) 등이다.

나. 회계처리 방법

IASC는 동일 지배하의 기업간의 인수·합병 등의 거래는 IAS22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회계기준에서는 AICPA Accounting Interpretation No. 39 of APB 16, Business Combination, 및 여러 EITF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미국회계기준의 기본적인 입장은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간의 거래는 그 거래 발생 전후에 거래 대상물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의 변화가 없는 한, 이는 회계실체 내의 거래로, 이전·교환된 자산·부채는 지분통합법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원가로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배·종속회사 간 또는 종속회사간에 합병이 이루어져 합병법인으로 이전되는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는 지분통합법과 마찬가지로 합병시점의 공정가액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배회사가 보유중인 종속회사들의 주식을 100% 소유 지주회사에 이전함으로써 지배회사의 종속법인들이 신설된 지주회사의 종속회사가 되는 경우나, 보유중인 종속회사 A의 주식을 종속회사 B의 신주 발행분과 교환함으로써 종속회사 A가 종속회사 B의 종속회사가 된 경우 등도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 내부에서 지배·종속관계가 변경된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간의 거래이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를 통해 교환·이전된 지분은 장부가액으로 이전되고 변경된 지배·종속관계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더라도 기존 연결재무제표상의 자산·부채가액으로 기록되는 것이지 이를 지분교환시점의 공정가액으로 변경 기록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행 기준에서는 제4장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에서 지배·종

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이하 지배·종속회사 등 간의 합병이라고 함)은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배·종속회사 등 간의 합병은 법률적 실체의 변경만을 가져올 뿐 경제적 실체의 변경은 없으므로 하나의 경제적 실체가 된 시점에 인식한 가액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회계기준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기록에서는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간의 거래인 지분교환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다. 다만, 기업회계기준 제55조 2항에서 교환·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3자 개입이 없는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간의 지분교환 또는 현물출자시에도 개별재무제표상에 지분교환 또는 현물출자에 따른 처분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시에 지배회사가 바뀐 종속회사의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기록하고 공정가액으로 새로이 평가된 지배회사의 투자주식가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개별재무제표에 인식된 처분손익을 미실현이익으로 제거하고 지배회사가 바뀐 종속회사의 자산·부채를 기존 연결재무제표상의 가액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인지 불명확한 상태이다.

IV. 우리나라 합병관련 기업회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우리나라 합병관련 기업회계의 문제점

가. 합병회계준칙에 대한 인식의 부족 및 준칙준수에 대한 강제성 부족

기업회계기준은 경영자에게 회계정보생산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며 경영자가 기업의 외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보이용자에게 왜곡된 정보의 제공을 막기 위한 감사인의 감사실시에 있어서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합병회계준칙도 예외없이 기업결합시에 회계처리의 기준을 제공하며 합병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있어 외부감사수행시 감사인의 감사수행시 판단기준을 제공한다. 현행 외감법에 의하면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감대상은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인 회사이다. 따라서 회사의 규모가 작아 외부감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 합병준칙의 준수여부를 판단할 감사가 수행되지 않으며,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왜곡된 정보의 제공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합병의 특징으로서 첫째, 기업합병이 주로 정부주도의 부실기업 정리수단으로 사용되고 둘째, 계열기업간의 합병이라는 점이라고 볼 때 주주들의 올바른 합병회계원칙의 준수에 대한 요구가 정책적 목적에 대한 부수적인 수단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정보이용자의 측면에서도 당장의 합병효과를 합병회계

처리원칙의 준수에 따른 장기적인 회계실체의 재무상태의 파악보다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 및 정보생산자의 입장에서 모두 복잡한 합병준칙의 준수에 동기가 결여되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회계보다는 세법상의 조세절감의 목적이 우선시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온갖 편법이 동원되어 지분통합법이 남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 조세절감의 수단으로 합병회계준칙의 자의적 활용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우리나라의 합병이 관계회사간의 부실 기업정리의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동등한 협상력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지분통합법하의 회계처리의 발생은 극히 예외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합병의 회계처리의 실태는 근본적으로 매수법보다는 지분통합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합병회계처리가 원칙과 예외가 전도되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나아가 우리나라의 합병에 있어서 개별적 합병회계처리에 있어서도 매수법이든 지분통합법이든 하나의 합병회계처리방법이 일관되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합병준칙에 의한 회계정보가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있어서 회계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는 필요성에 의하여 합병준칙에 따른 회계정보가 그렇지 않은 회계정보보다 우리의 현실에서는 정보력 측면에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외부정보이용자 특히, 주주들의 경우 합병준칙에 의한 회계정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조건에서는 합병시 또는 그 이후 조세절감의 목적이 우선시 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무시한 미국 및 국제회계기준의 답습

주지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합병준칙은 지난 1999년 국제회계 기준을 거의 답습하여 제정되었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우리의 합병회계가 상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대륙법 체계에 따른 우리의 상법이 인격합일설, 현물출자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출발점이 다르므로 이를 무시한 구미식 합병준칙은 우리의 현실과 많은 괴리가 있다. 비록 우리나라의 합병현실이 구미식 매수거래가 주종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고는 있다 하여도 아래에서 살펴볼 많은 개선점은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고 국제회계기준을 그대로 따른 데에 기인하는 것이다.

2. 우리나라 합병관련 기업회계의 개선방안

기업합병을 회계처리 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는 결합회계 준칙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비록 과거의 합병회계준칙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첫째, 우리나라의 합병이 관계회사간에 주로 이루어지고 둘째, 우리나라의 합병실무가 상법, 증권거래법, 세법 등의 강제법규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무시하고 국제회계기준을 그대로 답습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현행 준칙을 우리의 실정에 맞추기 위한 다음과 같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가. 합병회계관련 제법규와의 조화모색 및 규제강화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합병이 주로 관계회사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합병에 대한 경제적 실질은 서양의 합병회계기준만에 의하여 설명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합병의 실무가 상법, 증권거래법,

세법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규제를 가하는 강행법규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이러한 규범들과 회계원칙과의 조화가 사회적 비용의 절감 측면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예로써, 회계와 세법을 조세정책적 측면에서의 특수성을 제외한다면 기업에서 세무조정시에 기업회계의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도록 양자를 조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다.

나아가 제도정비와는 다른 한 측면으로 회계준칙을 포함한 규범 미준수에 가해지는 제재가 강화되어야 하겠다. 미국의 경우 SEC가 발생하는 모든 결합거래에 대하여 시작부터 끝까지 관여하는 것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나. 합병회계 처리방법의 통일(매수법만을 인정)

현행 준칙에서는 매수법과 더불어 매수회사를 확인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는 지분통합법에 의한 회계처리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분통합법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미국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는 2001년 6월 1일 발표된 FASB Statement No. 141을 통하여 지분통합법을 폐지하였다. FASB는 지분통합법 폐지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분통합법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완전성과 비교성이 떨어진다. 즉, 매수법하에서는 기준에 기록되지 않고 감추어져 있던 자산과 부채도 공정가액에 의한 평가에 의하여 기록될 수 있는 반면, 지분통합법하에서는 피투자회사의 장부가액으로 기록된 자산·부채만이 승계됨에 따라 완전성이 떨어지고, 교환거래시 일반적인 가치인식 기준인 교환가격이 아닌 기존의 장부가액에 의해 승계함에 따라 다른 교환거래와의 비교 가능성도 떨어진다. 특히, 교환가

격 무시에 따른 투자금액 정보의 미제공은 재무정보이용자들이 기업결합 결과 나타난 투자실적을 평가하고 이 실적을 다른 기업의 실적과 비교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둘째, 지분통합법의 적용은 정보이용자와 해당 기업에 추가 비용을 초래한다. 즉, 정보이용자는 매수법으로 기록된 기업결합과의 비교를 위해 제공된 정보의 추가가공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지분통합법을 적용하게 되면 해당 기업은 일반적으로 합병 후 이익이나 투자수익율이 상승하게 되므로 지분통합법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과도한 비용을 무릅쓰는 경향이 있다.

셋째, 지분통합법에 의한 정보제공은 경제적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즉, 지분통합법을 사용하는 기업은 투자금액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금액 총액이나 그 이후의 투자실적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므로, 매수법을 사용하였다면 지불했을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합병시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합병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은 어떤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상관없이 동일한데, 지분통합법을 사용한 경우 매수법 사용시 보다 상대적으로 큰 이익을 기록함으로써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

넷째, 개념적인 측면에서 약점이 있다. 순자산을 공정가액이 아닌 장부가액으로 기록함으로써 비밀적립금이 발생한다. 이는 공정가액이 100인 순자산을 10으로 기록한 후 100에 매각함으로써 90의 가공이익을 계상하는 경우이다. 또한, 지분통합거래는 경영자가 아닌 관련기업의 주주간의 문제라고 이해되어지나, 실제로는 이와 반대로 경영자가 거래의 주축을 이루며 매수자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는 거의 없다. 만약, 매수자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는 기존 회사 누구도 생존하지 못한 새로운 경제적, 회계적 기업의 탄생이므로 지분통합법이 아닌 모든 관련기업의 자산과 부

채를 매수법에서와 같이 공정가액으로 기록하는 방법(Fresh Start Method)을 적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더 타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점차 기업경영에 있어서 무형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분통합법에서는 중요한 무형자산인 영업권의 인식 및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

한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및 미국의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참여하고 IASC staff가 참관인으로 참석한 G 4+1의 기업결합에 대한 Position Paper 에서도 기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으로 매수법으로의 단일화를 권고한 바 있다.

물론 현행 준칙에서도 지분통합법의 적용을 매우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지분통합법의 도입으로 이 방법이 갖는 여러 유인들과 과거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던 실무 관행으로 인해 실질과 상관없이 기업결합을 의도적으로 지분통합법에 의해 회계처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의 이러한 시도를 사전에 막고 국제적인 회계관습에도 부합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지분통합법의 폐지를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매수법 적용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

1) 매수일 정의의 명료화⁵⁾

한국, 미국, 국제회계기준의 비교에서 언급하였듯이 현행 준칙상의 매수일 정의는 지배권 이전 기준과 기업결합 종료 기준이 혼합되어 있다. 기업결합 종료 기준이 지배권 이전 기준을 보다 구체적

5) 한국회계연구원,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검토』, 제3권, 회계기준위원회, 2000 참조.

으로 명시한 것으로서 두 가지 기준이 서로 상충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실무 적용시에는 서로 다른 날로 결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결합 절차는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작성, 기업실사, 매수가격 결정, 기업결합(합병, 사업양수도 또는 주식매매) 계약서 체결 및 최종 자산·부채의 교환의 순서로 이루어지게 된다. 기업결합 계약서에는 특정일을 피매수회사 자산·부채의 소유권 이전일로 명시하게 되고 계약일로부터 자산·부채의 소유권 이전일까지 영업 및 재무활동에 대해 매수회사가 관여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즉, 계약일에 피매수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행 준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피매수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된 날과 피매수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이 매수회사로 이전되고 매수원가가 확정되어 기업결합이 사실상 완료된 날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날로 결정될 수 있는 두 기준일을 우선 순위 없이 동일 선상에서 언급하게 된 것은 IAS 22를 도입하여 지배권 이전 기준의 매수일 개념을 도입하면서 과거 합병준칙상의 합병기일에 대한 정의 부문을 함께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과거 합병회계준칙상의 합병기일에 대한 정의를 보면, 합병이 실질적으로 실행되어 피합병회사의 자산 및 부채와 권리 및 의무가 합병회사에 승계되고 합병대가가 확정되어 합병거래가 사실상 완료된 날로 되어 있다. 이를 현행 준칙에서는 피매수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이 매수회사로 이전되고 매수원가가 확정되어 기업결합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바꾸어 매수일의 정의로 사용하고 있다.

매수법에서의 매수일은 개별 자산의 취득일과 동일한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시점은 그 자산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여 그 자산의 용역 잠재력을 수취하는 시

점이다. 따라서, 매수법의 매수일 또한 취득 대상인 피매수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한 날로 정의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고 국제회계기준과도 일치한다. 다만, 계약서 등에 의해 피매수회사의 지배권이 매수회사로 이전된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날을 매수일로 인정하는 것이 실무 적용상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은 특정 국가만을 위한 회계처리기준이기보다는 여러 국가에 범용으로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언급만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에 구체적인 적용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배권 이전 시점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교환거래일 즉, 피매수회사의 자산·부채를 인수하고 매수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져 기업결합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명시화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매수원가 결정일 및 피매수회사의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결정 기준일을 교환거래일이 아닌 매수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준칙의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매수일을 교환거래 발생일로 명시적으로 표현하여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무형자산의 인식 기준과 영업권과 합병차손의 구분

현행 준칙은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자산·부채 중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모든 자산·부채는 매수일의 공정가액으로 인식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자산·부채의 인식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즉,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경우가 피매수회사의 매수일 현재 재무제표에 단순히 기록되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또는 매수회사에 대한 경제적 효익 유무를 파악하여 매수회사에 대해 잠재적 용역가치가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하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개발비 이외의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별도의 인식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실무 회계처리 시 회계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회계처리될 위험이 있다.

IAS 22에서는 매수 시점에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피매수회사의 자산·부채로서 매수회사의 재무제표에 인식되기 위한 조건으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매수회사로 들어오거나 또는 경제적 효익을 갖고 있는 자원이 매수회사로부터 유출될 가능성이 확실(probable)한 경우이고 둘째는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조건이 무형자산의 인식조건으로서 IAS 38(Intangible Assets)에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자산 인식 기준 하에서는 자산 인식 가능 여부가 매수회사 입장에서 결정되어지므로 피매수회사의 재무제표상 자산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여부는 매수회사의 자산 인식 기준과는 상관이 없다. 비록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의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자산이더라도 미래에 매수회사에게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여 줄 것이 확실(probable)한 경우에는 매수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고, 반대로 피매수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수회사에 미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현 기업회계기준에서 무형자산에 대한 별도의 인식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관계로 현행 준칙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무형자산 인식 기준 지침은 현재 논의중에 있는 재무회계 개념체계상의 자산 인식 기준을 바탕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무형자산의 일부인 영업권의 평가 및 인식에 있어서도 현행 규정에 의하면 합병차손과 영업권을

동일시하고 있으나 영업권은 그 자체가 사실상 자산가치가 있는 별개의 자산으로서 독립적으로 평가되는 영업권과 수입 자산가액의 총액과 지급대가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따라서 현행 규정에서 이 두 가지 유형의 구분을 무시하고 전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는 좀 더 이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의 개선안으로 합병차손을 영업권과 동일시하는 현행 매수법의 회계처리는 영업권의 평가 및 인식이 먼저 이루어지고 차후에 합병차손을 과거의 기업회계기준처럼 자본준비금으로 인식하는 방법으로서의 변경이 더 타당하다고 하겠다.

3) 영업권 및 부의 영업권회계처리 개선

현행 준칙은 영업권을 그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에 의해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내용연수의 정의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결정 요소는 제시하지 않아 회계담당자 및 외부 감사인들이 영업권의 내용연수를 추정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현행 준칙에서는 매 결산기에 영업권에 대한 감액손실 발생 여부를 검토하여 그 가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감액손실을 인식하며, 감액된 영업권은 추후에 회복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회계규정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IAS 22)에서는 영업권에 대한 감액손실 평가를 IAS 36에서 제시하고 있는 감액손실의 징후가 있는 경우나 영업권의 내용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액손실의 회복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 한국회계연구원에서 논의중인 기업회계기준서 작

업에서도 감액손실의 회복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결국 이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 미국이나 국제회계기준에서와 같이 자산 감액손실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국제기준(회복 인정) 및 미국회계기준(회복 불인정)의 자산 감액손실 규정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며 이는 회계연구원의 기준서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실무적용 가능성이 매우 어려운 규정이라 하겠다. 특히, 영업권은 개별 유형자산과는 달리 개별적인 평가가 불가능하여 관련 사업부문의 평가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영업권의 감액손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영업권을 포함한 자산의 감액손실평가기준서가 공표될 때까지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그 시행을 유보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건대 이는 회계연구원의 무형자산회계처리기준서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겠다.

현행 준칙상의 부의 영업권에 대한 회계처리는 IAS 22의 규정을 수용한 것으로 미국회계기준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부의 영업권 회계처리의 차이는 부의 영업권 발생 원인규정에 있어 양 기준이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부의 영업권을 협상력 우위에 따른 영업권 취득 이득과 피매수회사의 미래손실예상액 상당의 할인액으로 보고 있는 반면, 미국회계기준에서는 부의 영업권 발생이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 측정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은 매수시점에 파악된 공정가액이 정확하다는 가정하에 취득시점의 공정가액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로 재무제표에 공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미국회계기준은 자산은 그 구매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는 취득원가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FASB에서 1999년 10월에 발표한 “A Report on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IASC Standards and U.S. GAAP”에서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부의 영업권의 회계처리에 대해 다음 세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⁶⁾.

첫째, 부의 영업권 발생에 따라 감액하여 주어야 할 인식 가능한 무형자산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 각 무형자산을 감액하여 주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둘째, 미래 손실 예상에 따른 매입원가 할인으로 인한 부의 영업권 인식은 IAS 37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의 미래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는 규정과 배치된다.

셋째, 비화폐성자산을 염가 구매함에 따라 발생한 부의 영업권을 상각 가능 비화폐성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 동안 상각하여 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상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만약, 상각가능자산의 상각방법과 다른 상각방법을 쓰게 되면, 수익·비용 대응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현행 준칙에서는 부의 영업권 발생액 중 미래 손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비화폐성자산 가액까지는 이연시켜 정액법으로 상각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는데, 만약 유형자산이 정율법으로 상각되는 경우에는 FASB에서 지적한 대로 정확한 수익·비용의 대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FASB가 지적한 위의 문제점 외에 부의 영업권 상각액은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되고 유형자산 등의 상각액은 감가상각비로 제조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됨으로써 영업이익 금액을 왜곡시키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그리고, 부의 영업권 금액이 상각가능 비

6) 한국회계연구원, 『기업회계준칙에 대한 검토』, 제3권, 회계기준위원회, 2000 참조.

화폐성자산을 초과할 경우 IASC의 논리를 따르면, 이 부분은 비상각가능 비화폐성자산의 염가취득에 따른 이득으로 간주되는데, 비상각가능 비화폐성자산에서 발생한 염가취득 이익은 해당 자산이 처분되거나 비용화되는 시점에 이득으로 인식하는 것이 논리상 맞을 것이나 이에 대한 별도의 언급도 없는 상태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문제점들과 비화폐성자산의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여 정확한 공정가액 파악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할 때, 부의 영업권 발생을 공정가액 측정의 오류로 보고 그 가능성이 가장 큰 무형자산 및 상각가능 비재무적 자산에서 직접 차감하고 잔액은 국제회계기준과 마찬가지로 특별이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1999년 9월 공표된 FASB의 기업결합 및 무형자산에 대한 공개초안상의 방법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연속적인 주식 취득의 회계처리 개선

앞의 한국, 미국 및 국제 회계기준 비교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부분은 현행 준칙이 국제회계기준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국제회계기준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분야이다. 이론적인 측면이나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보면, 국제회계기준이나 미국회계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단계적 취득법이 현행 기준의 일괄법보다 우수하다. 그러나 실무 적용 측면에서는 현행 일괄법이 선호되는 방법인 것도 사실이다. 현행 준칙에서 일괄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각 취득 시점마다 피매수회사 순자산의 공정가액 산정에 따른 실무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괄법에 따라 연속적인 주식취득을 회계처리 하도록 한 현행 준칙은 매수원가 결정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 현행 준칙은 매

수원가를 매수일 직전 매수회사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피매수회사 주식의 장부가액과 매수일에 지급된 매수대가 공정가액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괄법은 매수일에 주식을 일괄하여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므로 매수원가도 매수일 현재 모든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지불하였을 금액과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액 중 지분상당액을 비교하여 영업권(부의 영업권) 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매수원가는 매수회사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피매수회사 주식의 매수일 현재 공정가액과 매수일에 지급된 매수대가 공정가액의 합계액으로 기록되고 피매수회사 주식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 차액은 이를 처분과 동시에 재구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기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피매수회사 주식을 시가법에 의해 평가한 경우에는 매수일 직전 장부가액이 곧 공정가액이지만, 피매수회사 주식의 시가가 없어 원가법에 의해 평가하여 온 경우에는 매수원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피매수회사의 주식이 시장성이 없어 이를 원가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현행 준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결정한 공정가액을 매수원가로 사용하고,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은 매수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매수일 전에 취득한 피매수회사 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신주도 역시 장부가액이 아닌 공정가액으로 기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피매수회사가 매수일 전에 보유하고 있던 매수회사의 주식을 매수일의 공정가액으로 기록하여 자기 주식으로 처리하도록 한 현행 준칙의 규정과 회계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도 필요하다.

한편, 피매수회사 주식을 지분법에 의해 평가하여 온 경우에는 현행 준칙에 따른 회계처리는 일괄취득법보다는 단계적 취득법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즉, 매수일 직전 피매수회사 주식의 장부

가액과 매수일에 지급된 매수대가의 공정가액의 합을 매수원가로 하여 영업권(부의 영업권)을 결정하게 될 경우, 피매수회사의 장부가액은 지분법 적용일 이후 피매수회사 순자산 가액 변동을 이미 반영한 금액이므로 단계적 취득법과 동일한 결과를 반영한 금액이 된다.

그러나, 현행 준칙은 발생한 영업권 상각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 만약 지분법이 정확히 적용되어져 왔고 지분법 적용 이후 피매수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액에 변동이 없었다면, 영업권 금액은 지분법 적용분의 영업권(기간 경과에 따른 상각 후 금액)과 매수일 취득지분의 영업권 금액의 합으로 구성되어지게 되는데, 현행 준칙 하에서는 이 영업권들을 동일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취득하여 지분법 적용을 한 투자지분에서 발생한 영업권의 내용연수를 경과기간만큼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즉, 매수회사가 피매수회사에 대해 지배권을 갖지는 못하였으나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 따라 지분법을 적용하여 피매수회사 주식을 평가하면서 발생한 투자제거차액(영업권)을 20년 동안 상각하기로 하고 3년 간 상각한 후 추가 주식구입을 통해 지배권을 확보한 경우 재계산된 영업권 금액을 다시 20년 간 상각하게 된다. 이 경우, 선취득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온 지분관련 영업권은 결국 23년의 내용연수를 갖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선취득한 투자유가증권을 지분법으로 평가하여 온 경우에는 영업권 금액을 구분하여 각각의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비화폐성자산의 거래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현행 실정으로 인해 각 취득시점별 피매수회사 순자산의 공정가액 산정의 실무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일괄법을 사용하되, 매수원가는 선취득한 피매수회사 주식의 매수일 직전 장부가액이

아닌 공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가액 산정의 결정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피투자회사 주식을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 온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을 이용하되 영업권 금액은 선취득분과 매수일 취득분으로 구분하여 선취득분은 잔존 내용연수 동안, 매수일 취득분은 추정 내용연수 동안 각각 상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IAS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단계적 취득법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5)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간의 지분교환 등에 대한 회계처리 제시

현행 준칙은 지배·종속회사 등의 합병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제시하고 있으나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간의 지분교환 또는 현물출자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다만, 기업회계기준 제55조 2항에서 교환·현물출자를 통해 취득한 자산은 그 공정가액으로 기록한다는 규정만이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해 미국회계기준에서는 명시적으로 동일 지배회사하에 있는 다른 기업으로 지배회사가 바뀐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상의 자산·부채 가액은 새로운 공정가액이 아닌 기존 연결재무제표상의 가액으로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설회사에 현물출자를 하여 그 회사의 지배권을 보유함으로써 현물출자한 자산에 대한 지배권을 간접적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신설회사에 대해 지배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처분손익 전액을 인식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는 앞서 한국, 국제, 미국회계기준 비교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환·현물출자된 자산에 대한 지배권에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한 새로운 회계처리기준을 사용하여야 할

회계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며,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사용하여 이에 대한 회계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미국회계기준하에서는 당연한 논리로 판단된다.

현행 기업회계기준하에서는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간에 이루어진 지분교환이나 현물출자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 제 55조 2항에 따라 지분교환이나 현물출자된 자산을 개별재무제표에서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처분손익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간에 분할합병이 이루어진 경우도 분할회사는 공정가액에 의한 처분으로 간주하여 분할회사의 개별재무제표상에는 처분손익이 인식되고 합병회사는 매수법에 의해 포괄 이전된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인식하도록 분할·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 해석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결실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모든 거래는 내부거래로서 관련 처분손익은 제거되고 이전된 자산은 기존 연결재무제표상 가액으로 기록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간의 합병 외에 지분교환이나 현물출자, 사업부문 포괄 양수도 등의 거래가 발생한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개별재무제표에서 인식된 처분손익과 공정가액으로 기록된 자산을 조정한 후 기존 연결재무제표상 가액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명시적으로 언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내부 미실현이익을 제거하는 절차와 동일한 것으로 개별재무제표상의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에도 동일한 미실현이익의 제거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행 준칙에서는 지배·종속회사간의 합병을 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에서 규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에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범위도 합병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개선안으로 국제회계기준 및 미국회계기준과 같이 이 부분을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

당하리라 생각된다. 부속적인 해석에서 경제적 실질이 변화하지 않는 동일 지배하의 기업간의 거래는 장부가액으로 승계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앞에서 밝힌 주요 거래 유형별 회계처리를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6) 매수대가 공정가액의 결정 기준일⁷⁾

현행 준칙에서는 매수원가를 다른 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현금이나 현금등가물 또는 기타 매수대가의 공정가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기타 매수대가의 공정가액을 어느 시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현행 준칙상의 다른 항목을 통해 유추하여 보면 매수일 시점의 공정가액으로 판단되어지나 실무적용 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매수원가는 다른 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현금이나 현금등가물 또는 기타 매수대가의 매수일 현재 공정가액을 말한다.

7) 발생된 영업권의 회계처리 검토

현행 준칙은 부칙에서 2000년 1월 1일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 적용하고 종전 준칙에 따라 계상된 합병차익은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종전 준칙에 따라 계상된 영업권에 대하여는 현행 준칙상에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나 1999회계연도부터 20년 이내의 추정 내용연수 가운데

7) 한국회계연구원, 『기업회계준칙에 대한 검토』, 제3권, 회계기준위원회, 2000 참조.

잔존 내용연수 동안 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질의·회신에서 밝히고 있다. 이는 경과규정에서 새롭게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영업권을 상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IAS 22의 입장과 동일하다. 하지만, IAS 22와 달리 과거 합병회계준칙에서는 단서 조항을 통해 타법령의 규정에 의거 불가피한 경우에는 피매수회사 순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합병회계준칙에 따른 영업권은 순수한 영업권 금액과 순자산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이 혼재하여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이를 일괄적으로 영업권으로 보아 그 내용연수를 20년까지 연장시켜 줄 경우에는 비용의 장기 이연처리를 인정하여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물론, 감액손실 발생 테스트를 통해 향후 감액손실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실무적용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인식한 영업권의 내용연수를 5년 이상으로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금액이 순수한 영업권 금액이며 피매수회사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매수일에 적절히 반영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내용연수 연장을 허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현행 준칙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영업권에 대한 감액손실 발생여부 검증은 회사가 영업권의 내용연수를 연장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내용연수를 연장하지 않고 기존 내용연수(5년) 동안 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감액손실이 발생하였다는 확실한 증후가 없는 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기업결합에 대한 회계기준으로 기존의 합병회계준칙은 1986년 제정된 후 1998년 4월 기업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준거 규정 변경을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을 뿐이며, 활성화되고 있는 기업결합의 회계처리에 대한 기준으로는 이론적인 측면이나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적절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에 1999년 3월에 국제회계기준을 대폭 수용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이 새로 제정되었다.

현행 준칙은 기업결합을 매수거래와 지분통합 거래로 보는 회계 이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결합의 회계처리방법으로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매수법과 관련하여 우발 상황에 대한 매수원가의 조정 및 자산·부채의 후속적인 식별 또는 가치의 변화 인식 등과 같은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의 합병회계의 역사, 합병회계의 내용, 합병회계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합병회계의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를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합병관련 기업회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현행 합병관련 기업회계의 주요 내용을 현 합병준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현행 합병회계준칙의 국제적 정합성을 평가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준, 국제회계기준, 미국기준을 항목별로 비교, 검토하여 보았다.

현행 우리나라 합병회계준칙의 문제점으로는 합병회계준칙에 대한 인식의 부족 및 준칙준수에 대한 강제성 부족, 조세절감의 수단으로 합병회계준칙의 자의적 활용, 우리의 현실을 무시한 미국

및 국제회계기준의 답습 등이 지적되었다.

현행 외감법에 의하면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감대상은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인 회사이다. 따라서 회사의 규모가 작아 외부감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 합병준칙의 준수여부를 판단할 감사가 수행되지 않으며 외부이해관계자에 대한 왜곡된 정보의 제공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합병의 특징이 첫째, 기업합병이 주로 정부주도의 부실기업 정리수단으로 사용되고 둘째, 계열기업간의 합병이라는 점이라고 볼 때 주주들의 올바른 합병회계원칙의 준수에 대한 요구가 정책적 목적에 대한 부수적인 수단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정보이용자의 측면에서도 당장의 합병효과를 합병회계처리원칙의 준수에 따른 장기적인 회계실체의 재무상태 파악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 및 정보생산자의 입장에서 모두 복잡한 합병준칙의 준수에 동기가 결여되어 있다고 하겠다.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우리나라의 합병이 관계회사간의 부실기업정리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동등한 협상력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지분통합법하의 회계처리의 발생은 극히 예외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합병의 회계처리의 실태는 근본적으로 매수법보다는 지분통합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합병회계처리가 원칙과 예외가 전도되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지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합병준칙은 지난 1999년 국제회계기준을 거의 답습하여 제정되었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우리나라의 합병회계가 상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대륙법 체계에 따른 우리나라의 상법이 인격합일설, 현물출자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출발점이 다르기에 이를 무시한 구미식 합병준칙은 우리나라의 현실과 많은 괴리가 있다.

한편 가장 중요한 개선안으로는 2001년 6월 발표된 미국의 FASB 보고서 141번에서 나타났듯이 합병회계의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오·남용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지분통합법을 폐지하고 매수법 단일방법의 사용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외의 개선안으로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반영한 합병관련 제법규와의 조화의 모색을 제안하였고, 매수법을 합병회계처리의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 매수일 정의의 명료화, 취득한 무형자산의 인식기준 마련, 영업권 상각 및 평가의 구체화, 부의 영업권 회계처리 개선, 연속적인 주식취득의 회계처리 개선,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간의 지분교환 등에 대한 회계처리 제시 등이다.

제2부 합병관련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I. 서론

우리나라는 1997년 말 경제위기를 겪게 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은 부실화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등장하였다. 1998년 1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이 설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핵심부문의 설정과 중소기업과의 협력강화, 지배주주 및 경영권의 책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추진되었다.

합병은 기업구조조정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합병의 목적은 기업이 산업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외향적 확대에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기업의 외향적 성장전략의 한 방법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업여건상 성장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합병은 유력한 기업확장의 수단이 된다. 이와 같은 합병은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산업구조 차원에서의 장기화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기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합병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느냐에 따라 활성화의 정도가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다. 합병관련 거래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산의 거래 및 처분 등과 관련한 세금문제일 것이다. 그동안 합병과세제도는 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합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합병의 과정에서 과세문제가 가능한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합병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는 이유는 법인의 조직변경

에도 불구하고 투자가는 사업주체에 대한 지분을 주식소유의 계속이라는 형태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기업의 합병에 관한 과세체계가 대폭 정비된 것은 경제위기의 발생 직후인 1998년 말의 세법개정에서였다. 그동안 합병과세제도는 부분적인 개정에 그쳐 왔으나,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합병차익, 청산소득, 영업권 등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게 되었다. 법인세법 제6관에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세법에도 비과세 합병제도가 도입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합병과세제도의 대폭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합병세제는 비과세 합병과 과세 합병을 명확히 구분해서 논리적으로 일관된 과세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합병관련 기업회계와 과세제도는 합병회사, 피합병회사, 합병당사회사의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적 실질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합병관련 기업회계제도 및 과세제도가 합리적이어야 합병기업에 대한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확보되고 또한 공평과세와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본 연구에서는 기업합병시 이해관계자인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 그리고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등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과세문제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미국과 일본의 합병관련 과세제도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 본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합병관련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해 본다.

II. 우리나라의 합병관련 과세제도

1. 합병과세의 본질론

제1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합병에 관한 회계는 미국에서 발전되어 온 것으로서 지분통합법(pooling of interests method)과 매수법(purchase method)의 두 가지 회계처리 방법이 있다. 회계 이론상 합병기업은 매수법과 지분풀링법의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분통합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두 가지 회계처리 방법의 차이는 합병을 보는 경제적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지분통합법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사이에 실질적인 거래가 없이 단순히 소유주지분만이 결합되는 기업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해관계당사자가 결합되어 그들의 자원을 공동유지하고 하나의 기업단위로 결합된 이후에도 결합 전의 그들의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이다. 따라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의 위험과 상대적 지위는 합병이전과 비교하여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매수법은 합병의 본질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일괄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즉, 합병법인이 기업규모를 확대하는 한 수단으로 다른 회사의 자산을 일괄취득함과 동시에 그 회사의 부채를 일괄부담하는 경제적 거래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합병 거래에 대해 일반적인 순자산의 일괄취득에 관한 회계처리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절차에 따르면, 일괄구입한 순자산의 총취득원가를 결정하고, 이 원가를 취득일 현재의 개별자산 및 개별부채의 공정가치의 비율에 따라 취득한 자산과 부채에 배분하면 된다.

이상과 같은 미국의 합병회계가 우리나라의 합병회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합병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과 세법은 독일·일본 등의 학계에서 발전해 온 합병본질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합병본질론은 크게 인격합일설(또는 인격승계설)과 현물출자설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인격합일설에 따르면 둘 이상의 회사가 결합하여 하나로 되지만 피합병회사의 인격이 승계되어 합병회사에서 그대로 계속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인격합일설의 회계처리는 지분풀링법과 거의 유사하다. 합병차익은 계상되지 않고 그 대신 피합병회사의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도 승계된다. 뿐만 아니라 현물출자설에서 나타나는 영업권도 계상되지 않는다. 다만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교부되는 주식의 액면금액이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자본금보다 적거나 많으면 합병과 동시에 감자 또는 증자거래가 있었던 것이므로 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추가되어야 한다. 감자가 있었다면 합병감자차익을 인식하고, 증자가 있었다면 합병증자차손을 계상한다.

인격합일설에 따른 회계처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합병법인의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을 장부가액 그대로 승계한다. 따라서 이연자산이나 이연부채, 모든 총당금, 그리고 이익잉여금이나 결손금까지도 그대로 승계한다. 둘째,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되는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기록한다. 이 때 교부된 주식의 액면가액이 피합병법인의 납입자본보다 적은 경우에는 합병감자차익으로 기록하는데, 이는 다른 감자차익과 동일하게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다. 한편 교부된 주식의 액면가액이 피합병법인의 납입자본

보다 많은 경우에는 ① 합병회사의 자본잉여금 ② 피합병회사의 이익잉여금, 그리고 ③ 합병회사의 이익잉여금에서 순서대로 차감한다. 따라서 영업권은 계상되지 않는다.

한편 현물출자설에서는 합병을 다른 현물출자와 마찬가지로 피합병회사의 주주가 그들의 자산을 회사에 현물로 출자하는 절차라고 본다. 현물출자설에 의하면 합병법인의 입장에서 볼 때 피합병회사의 주주로부터 새로이 순자산을 출자받는 거래가 있었으므로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하게 된다. 이때 출자받은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합병대가가 높다면 그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상각한다. 그러나 출자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보다 취득원가가 낮은 경우 그 원가를 초과하는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합병차익으로 회계처리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합병이면 합병차익은 자산수증이익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며, 주식을 발행 교부하는 합병이면 주식발행초과금이거나 아니면 자산수증이익과의 결합일 가능성이 높다.

현물출자설에 따른 회계처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이는 매수법의 경우와 같다. 출자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자산, 예를 들면 이연자산은 출자받은 자산이 아니므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합병법인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치가 있는 자산은 승계하는 것으로 계상한다. 자산과 함께 승계되는 부채의 경우도 자산과 마찬가지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따라서 평가성충당금은 승계할 필요가 없다.

둘째, 취득원가가 출자받은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이는 매수법의 경우와 동일하다. 한편 취득원가가 출자받은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합병차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의 한 항목으로

보고한다. 이는 그 차액을 시장성 투자유가증권을 제외한 비유동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그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차감하는 매수법의 경우와 상이하다. 취득원가를 초과하여 출자받은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주식발행초과금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합병차익이라는 계정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러나 현물출자설은 현물로 출자받는 것이므로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기록하되 출자받은 순자산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교부한 대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자산수증이익 또는 주식발행초과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합병대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되는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기록한다. 이는 교부된 주식의 시가로 기록하는 매수법의 경우와 다르다.

합병본질론으로서의 현물출자설은 합병회계의 매수법과 유사하고 합병본질론으로서의 인격합일설은 합병회계의 지분통합법과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합병회계 처리방법에 있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세제는 기본적으로 현물출자설과 인격합일설의 이론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의 회계처리 방법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합병관련 세제는 합병본질론 및 합병회계의 각 이론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음에 따라 회계처리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2. 일반 합병에 대한 과세제도

합병에 대한 과세제도는 비과세 합병제도와 이외의 합병에 대한 과세제도로 나누어진다. 먼저 비과세 합병 이외의 합병에 대한 과

세제도를 살펴본다.

가.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1)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

가) 합병차익의 개념

합병과정에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주식과 금전 등을 교부한다.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가액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할 주식과 금전 등은 합병당사법인의 합병계약에 의하여 정해진다.

이와 같은 합병과정에서 합병차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법인세법에서는 합병차익의 개념을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합병차익의 개념이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연히 상법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다. 상법 제459조에서는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때 그 초과금액을 합병차익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상법에서는 이 초과금액 즉 합병차익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egin{aligned} \text{합병차익} &= \text{승계한 자산가액} + (\text{승계한 채무액} + \text{합병교부금} + \\ &\quad \text{교부주식 가액}) - \text{승계한 순자산가액} + (\text{합병교부금} \\ &\quad + \text{교부주식 가액}) \end{aligned}$$

합병을 흡수합병의 경우와 신설합병의 경우로 나누어 각 경우의 합병차익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차익은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회사가 합병에 의해 소멸하는 피합병회사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이 합병회사가 합병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의 가액과 피합병회사의 주주에게 지불한 교부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가액을 말한다. 신설합병의 경우 합병차익은 신설하는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이 신설회사가 불입한 자본금의 가액과 피합병회사의 주주에게 지불한 교부금 가액과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가액을 말한다.

합병차익은 기업회계상 부의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기업회계상 부의 영업권은 1998년까지의 합병차익에 대신하여 생겨난 계정과목으로서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며, 그 발생원인에 따라 제1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입방법이 다르다.

나) 합병차익의 구성요소

합병차익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다음의 네 경우로 나누어진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는 합병차익의 구성순서를 정하고 있는데, 합병평가차익, 자본잉여금 승계액, 이익잉여금 승계액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⁸⁾.

(1)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한 합병차익(합병평가차익)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인수하지 아니하고 그 자산을 평가증한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합병차익이 발생한다.

8) 합병차익의 구성순서를 정해야 하는 이유는 “합병차익 중 자산의 평가증에 대하여는 과세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의 설정 등의 과정을 밟아야 하고 또한 합병차익으로 구성된 잉여금 중 이를 자본에 진입하는 경우 의체배당이 해당하는 잉여금과 과세되지 않는 잉여금이 있기 때문이다”. 이우택(1999), p. 274.

(2) 피합병법인의 합병감자차익으로 인한 합병차익(합병감자차익)

피합병법인이 결손법인으로 주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장부가액대로 승계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 미달하게 합병신주식을 교부할 때 승계한 자산의 장부가액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주식 간의 차이는 합병으로 인한 감자차익으로서 합병차익이 된다.

(3)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으로 인한 합병차익(자본잉여금 승계액)

피합병법인이 자본잉여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장부가액대로 합병법인이 승계하고 그 자본잉여금에 대하여 합병주식이나 기타 합병교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합병차익이 발생한다.

(4)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인한 합병차익(이익잉여금 승계액)

피합병법인이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장부가액대로 합병법인이 승계하고 그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합병주식이나 기타 합병교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합병차익이 발생한다.

다) 합병차익에 대한 세무처리

합병법인이 승계한 순자산의 가액은 시가 이내에서 합병법인이 계상하는 가액으로 하고,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합병대가는 주식의 경우 액면가액으로 하여 그 차이 금액을 합병차익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 제17조에서는 합병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의 합

병평가차익은 다른 합병차익과는 달리 합병법인의 순자산 증가로 인정하여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세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유보금이나 출자자의 지분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미 과세대상이 되었으므로 익금불산입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합병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주식 또는 합병교부금으로 지급하지 않아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에게 청산소득이 과세되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하고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2) 합병차손에 대한 과세

가) 합병차손의 개념

합병차손은 합병차익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인수하는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가액과 합병교부금의 합계액에 미달할 때 그 미달금액을 합병차손이라 한다.

$$\begin{aligned} \text{합병차손} &= (\text{승계한 채무액} + \text{합병교부금} + \text{교부주식 가액}) - \text{승} \\ &\quad \text{계한 자산가액} = (\text{합병교부금} + \text{교부주식 가액}) - \\ &\quad \text{승계한 순자산가액} \end{aligned}$$

여기서 합병차손의 크기를 결정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다. 첫째, 승계한 순자산가액을 장부상 가액으로 할 것인가 시가로 평가할 것인가에 따라 합병차손의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둘째, 기

업자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영업권의 설정이 순자산가액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합병차손의 가액도 달라질 수 있다.

나) 합병차손의 발생원천

합병차손이 발생하는 원천은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때 피합병법인의 자산이 시가에 비해 낮은 가액으로 평가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합병대가를 순자산의 장부가액보다 초과하여 지불할 경우 합병차손이 발생한다. 둘째,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때 합병대가를 시가로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이 합병차손이며, 이월결손금을 보전할 수 있다. 셋째, 피합병법인이 수익성이 있어서 합병 후에는 동종의 기업이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수입하는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합병신주 등이 교부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와와의 차액, 즉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인식할 수 있다.

다) 합병차손의 세무처리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준칙 제9조에서는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순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세법에서는 합병차손의 처리방법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법인세법 제24조 제4항에서 영업권 중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또는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

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자산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종전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8)에서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1997년 4월 이 통칙이 삭제되어 현재는 자산성이 없는 단순한 합병차손은 영업권으로 상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3) 영업권에 대한 과세

가) 영업권의 개념

상법에서는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가액을 영업권으로서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452조). 법인세법은 영업권을 의장권, 실용실안권, 상표권, 특허권, 어업권, 수리권, 광업권 등과 함께 무형고정자산으로서의 감가상각자산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영업권의 개념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법인세법기본통칙 2-10-38...16에서 영업권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①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
- ② 설립인가당시 인가조건으로 부담한 기금(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함) 및 기부금 등
- ③ 등록된 관광사업용버스와 이에 따른 제권리 등을 함께 양수함에 있어서 버스자체의 대가 외에 관광사업에 따른 권리금을 별도로 평가하여 지급한 경우 그 가액
- ④ 양곡의 하역 및 보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계화로 인하여 실직되는 기존노무자의 생계를 위한 일종의 보상적 성질로 일

정하역량에 달할 때까지 인가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

- ⑤ 지입차량을 직영함에 따라 주주인 각 차주로부터 통상거래가액으로 차량을 매입한 경우 통상거래가액 중에 차량자체대금 이외의 권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그 권리금
- ⑥ 특정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업자조합 또는 협회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금
- ⑦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나) 합병차손과 영업권

합병차손은 지급대가와 수입자산과의 결과적인 차액개념인 반면, 영업권은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을 말하므로 합병차손과 영업권은 서로 다르다. 또한 영업권은 다른 수입자산과 함께 포함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영업권이 계상된 이후에도 합병차손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지급대가와 수입자산과의 차액을 합병차손으로 계상하지 않고 직접 영업권으로 수입자산에 포함시켜 처리하기 때문에 합병차손과 영업권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다) 영업권의 세무처리

영업권 중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또는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

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 따라서 자산성이 없는 단순한 합병차손은 영업권으로 상각을 인정하지 않는다.

4) 이월결손금의 승계

가) 결손금의 개념

법인세법상 결손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와 같은 결손금이 피합병법인에 존재할 때, 합병의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이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지의 여부가 합병관련세제의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나) 이월결손금의 세무처리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원칙적으로 승계받을 수 없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는 비과세합병의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허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으로서 다음의 경우 결손금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 ① 하나의 법인이 다른 법인지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법인간의 합병인 경우
- ② 동일인이 2 이상의 법인에 대하여 지분의 30% 이상을 각각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법인간의 합병인 경우
- ③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인 경우
- ④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미리 변경등기하였거나 합병등기일 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

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

5) 자산·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 ①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 ②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 ③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및 동 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 ④ 이연자산의 가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반면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 ① 감가상각, 자산·부채의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하지 않는다.
- ②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이연자산의 가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6) 자기주식에 대한 과세

가) 자기주식의 개념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중 합병이 이루어지면 피합병회사의 자산인 합병법인의 주식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어 자기주식이 된다.

상법에서는 자기주식 또는 상호주식보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채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을 수 있다(상법 제341조).

- ①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 ②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를 양수하는 때
- ③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④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적용한 때

합병을 함에 있어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지체없이 소각해야 하고, 매각처분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나) 자기주식의 세무처리

세법에는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이나 소각손익에 대해 세무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다만 법인세법기본통칙에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 자기주식의 처분손익

법인세법기본통칙(2-2-14···9)에서는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2) 자기주식의 소각손익

법인세법기본통칙(2-2-14·9)에서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7) 포함주식에 대한 과세

가) 포함주식의 개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합병이 이루어지면 합병법인이 소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포함주식이라고 한다.

나) 포함주식의 세무처리

우리나라에서는 세무회계상 자기주식과 포함주식의 구분이 없이 자기주식의 범주에 넣어 처리하고 있다.

8) 지방세

가) 취득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은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비과세에서 제외된다(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그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나, 합병으로 인한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비

과세된다(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나) 등록세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나.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1)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

가) 청산의 개념

청산은 법인이 법인격을 가지고 주주의 출자나 차입금을 바탕으로 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최종적으로 잔여자산을 구성원인 주주에게 분배하고 그 법인격을 상실함으로써 법인으로서는 존재를 마감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이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일련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합병의 경우에는 이러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합병법인은 소멸하며, 그 피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던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합병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나) 청산소득의 계산

(1) 청산소득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법인세법 제80조 제1항).

즉,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ext{청산소득} = \text{합병대가의 총합계액} - \text{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총액}$$

(2)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할 때에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이를 포함주식이라고 함)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함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포함주식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반면 그 포함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포함주식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법인세법 제80조 제2항).

한편 내국법인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그 법인세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부과되는 주민세를 포함한다.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begin{aligned} \text{합병대가의 총합계액} = & \text{합병대가(신주 + 교부금)} + \text{포함주식} + \\ & \text{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청} \\ & \text{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cdot \text{국세} \cdot \text{주민세} \end{aligned}$$

(3)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제79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 제80조 제3항).

다) 청산소득의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피합병법인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된다(법인세법 제80조 제1항). 이 경우 합병대가가 주식 등 금전 이외의 자산인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한다.

2)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중에 합병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법인세법 제8조 제2항).

따라서 피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을 결산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의 날로부터 합병등기의 날까지 생기는 손익에 대해 그 손익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법인세법기본통칙 1-2-11...3).

다. 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1) 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소득 과세

가) 의제배당소득의 개념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의 형태로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배당을 한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우에 이를 배당소득으로 의제한다. 기업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

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주주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나) 의제배당소득의 세무처리

합병법인이 합병 후 합병차익 중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합병법인의 주주가 무상주식을 교부받게 되는 경우에는 배당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법인주주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한다(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2) 합병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

가) 증여의제의 개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에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균형, 불공정한 합병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이들 주주간에 이익의 분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이를 증여로 의제한다.

나) 증여의제의 세무처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⁹⁾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주주

9) 대주주는 당해 주주의 지분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를 말한다.

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9호).

합병에 의해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받은 이익이라 함은 다음의 경우의 이익을 말한다.

① $A - (B \times C) \geq A \times 30\%$ 의 경우

A: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B: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C: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주식수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후 주식수

② $[A - (B \times C)] \times D \geq 3$ 억원의 경우

A: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B: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C: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주식수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후 주식수

D: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 후 주식수

③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주식 등 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액면가에서 그 평가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의제 가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의 현황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8조 제4항).

$$\text{증여의제 가액} = [A - (B \times C)] \times D$$

- A: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 B: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 C: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주식수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후 주식수
- D: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 후 주식수

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1)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소득 과세

가) 의제배당소득의 과세대상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합병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동법시행령 제13조 제3호).

그러나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등의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합병평가차익과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감자차익 중 2년 이내에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차익(즉,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

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때 그 초과금액)에 달할 때까지 ① 자산의 평가차익 ② 자본잉여금, ③ 이익잉여금의 순서로 순차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나) 의제배당소득의 세무처리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는 합병대가가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배당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법인주주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한다(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2) 합병당사법인 주주의 증여의제 과세

가) 증여의제의 개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에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균형, 불공정한 합병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이들 주주간에 이익의 분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이를 증여로 의제한다.

나) 증여의제의 세무처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주주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9호).

3. 비과세 합병제도

1998년 세법개정에서 법인세법 제6관에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도 본격적인 비과세 합병을 인정하고 있다.

가. 비과세 합병제도의 적용요건

다음과 같은 비과세 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면 합병에 대해 가능한 과세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적용요건이 비과세 합병제도의 세부적인 과세문제에 전부 적용되지는 않는다. 비과세 합병의 적용요건은 합병회사의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 이월결손금의 승계 문제, 피합병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문제에 적용된다. 다만 이월결손금의 승계문제의 경우에는 이 요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이 추가되며, 피합병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문제의 경우에는 요건 ③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 인간의 합병일 것
-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95% 이상일 것
-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¹⁰⁾

10)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1)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한 합병평가차익에 대해서는 1997년 말 세법개정에서 과세특례규정을 두어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앞에서 언급한 요건을 갖추고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증으로 인한 합병차익 중 일정한 금액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인세법 제44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항).

토지 등의 합병평가차익 =

$$\text{합병평가차익} \times \frac{\text{평가증된 토지 등의 총평가증액}}{\text{평가증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

과세이연은 자산별로 이루어지는데, 이 때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자산별로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계상해야 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일시상각충당금 평가 또는 압축기장충당금 =

$$\text{토지 등의 합병평가차익} \times \frac{\text{개별 토지 등의 평가증액}}{\text{평가증된 토지 등의 총평가증액}}$$

산입한 합병법인이 3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3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 제6항).

- 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② 승계받은 사업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이월결손금의 승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법인세법 제45조).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허용받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비과세 합병제도의 적용요건에 추가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① 특수관계자 외의 법인간의 합병이어야 할 것
-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주식이 합병법인 지분의 10% 이상일 것
- ③ 자산, 부채 및 손익을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정리할 것

그러나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으로서 다음의 경우 결손금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 ① 하나의 법인이 다른 법인지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

자하고 있는 법인간의 합병인 경우

- ② 동일인이 2 이상의 법인에 대하여 지분의 30% 이상을 각각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법인간의 합병인 경우
- ③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인 경우
- ④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미리 변경등기하였거나 합병등기일 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한 합병법인이 3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손금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제45조 제2항). 또한 합병법인이 결손금을 공제한 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 공제한 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6항).

다.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1)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주의 가액은 액면가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2항). 이에 따라 소멸주식 1주당 합병신주 1주 이상씩을 교부받지 않는 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건설기업이 보다 취약한 기업을 합병하는 일이 보통이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법인의 해산은 법인격이 아주 소멸되는 것이므로 청산단계에서 과세하지 않으면 영원히 과세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합병의 경우는 기업의 경영활동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기업으로서 경

영활동을 유지 또는 확대발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산단계에서 과세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과세할 수 있다. 이 같은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 굳이 청산단계에 과세함으로써 합병을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의해서이다.

2)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승계하는 자산 중 부동산 등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는 합병법인이 그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이월과세된다(법인세법 제99조 제11항).

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합병법인이 합병 후 합병차익 중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합병법인의 주주가 무상주식을 교부받게 되는 경우에는 배당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법인주주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액면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 인간의 합병일 것
-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95% 이상일 것

Ⅲ. 주요국의 합병관련 과세제도

1. 미 국

가. 합병제도

미국에서 단순히 합병이라고 할 때에는 광의의 합병인 기업결합(business combination)을 의미한다. 즉, 미국의 기업결합은 하나의 회사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법인기업이나 법인격이 없는 기업과 합하여 하나의 회계실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상법상의 절차나 방법에 따른 협의의 합병으로서 회사법상의 합병(statutory merger or consolidation)이 있으며¹¹⁾ 그 외에도 영업양수, 주식취득으로 인한 종속관계의 수립도 기업결합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그 범위가 매우 넓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아래에서 미국의 내국세법 제368조에 서의 기업재조직(tax-free reorganization)의 유형에 대한 설명에서

11) 합병을 나타내는 용어에 있어서도 흡수합병을 merger, 신설합병을 consolidation으로 지칭하고 있지만 합병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법률상의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각 주의 회사법에서는 합병을 포괄적으로 표시할 때에는 merger or consolidation 또는 merger and consolidation이라고 표시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일반회사법(California General Corporation Law)과 같은 법에서는 합병을 흡수합병(merger)로 단정하고 있다.

中川美佐子, 『會社合併の原流および米・英・加・日の合併會計』, 千倉書房, p. 68.

볼 수 있다. 미국은 내국세법에 있어서 기업의 결합은 상법상의 합병과 타법인 지배나 회사분할 등도 포함하는 법인조직의 다양한 재조정 또는 재수정을 의미하는 재조직의 문제로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합병은 미국의 내국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재조직의 7가지 형태 중에서 A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합병은 각 주의 회사법에 다르게 되므로 각 주의 경제적 여건과 사정에 따라 그 절차와 요건이 조금씩 상이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회사법상 합병은 우리나라의 합병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회사법상 합병은 둘 이상의 회사가 상법상의 절차에 의하여 승인된 합병계획에 따라 하나의 회사로 합병할 수 있으며, 이 때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정한 합병계획을 결의하고 이에 대한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병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조항들은 각 주마다 조금씩 상이하기는 하지만 ① 합병에 대한 약정과 조건, ② 합병당사회사의 상호, 합병 후 존속하고자 하는 회사의 상호, ③ 각 회사의 주식을 존속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주식, 채무, 기타 증권으로 대체하거나 현금 또는 기타 다른 재산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절차 및 그 기초(basis) 등이 정하여져야 하며 이러한 사항은 필수적이다.

그 외에도 합병계획에는 ① 존속회사의 합병설립조항의 변경에 관한 설명과 ② 기타 당해 합병과 관련된 다른 법규정 등에 대하여 임의로 합병계획에 포함시켜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미국은 엄격히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제정법 국가가 아니고 사례별로 각 상황에 맞게 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특례법 국가이기 때문에 기업합병의 문제도 상법상의 법률적·형식적 의미의 합병 개념보다 다양한 경제적·실질적 의미의 합병개념이 더 광범위하

게 이용되고 있다. 즉, 기업의 합병은 법률적 요인보다는 기업경영상의 목적과 동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이러한 기업합병의 경제현상을 법률적·형식적인 틀로서 규율하기에는 너무나 가변적이고 다양한 것이다. 더욱이 기업의 경영은 그 효율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합병에 관하여 다양한 절차나 과정을 요하는 상법상의 합병보다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편법과 변형된 수단이 이용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합병에 의해 복수의 합병당사회사가 하나가 되며, 합병에 따른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각 합병당사회사의 권리 및 재산에 대하여 이전수속을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된다. 또한 각 합병당사회사의 모든 채무가 처음부터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채무인 것처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귀속하게 된다. 각 합병당사회사의 채권자의 모든 권리 및 재산상의 모든 선취특권은 이와 같은 재산상의 선취특권이 합병효력 발생일 직전의 담보물건에 한하는 것일 경우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합병당사회사에 의한, 또는 합병당사회사에 대하여 진행중인 소송 또는 수속은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같이 계속되거나 존속회사 및 신설회사가 대위 하는 것도 인정된다¹²⁾.

나. 기업재조직(Reorganization)에 대한 과세제도

미국의 세법(IRC: Internal Revenue Code) 제368조에서는 기업의 재조직(reorganization)을 A형부터 G형까지 7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회사의 구조나 소유관계의 재조정을 의미하는 이러한 기업재조직은 하나의

12) 中川美佐子, 『會社合併の原流および米・英・加・日の合併會計』, 千倉書房, p. 75.

회사가 다른 회사와 흡수합병, 또는 신설하는 합병은 물론 주식교환에 의한 자회사 취득이나 다른 회사의 자산취득, 하나의 회사를 두 개 이상의 회사로 분할하는 것, 모회사가 자회사와 또는 자회사가 모회사와 합병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 세법상의 재조직은 기업이 변경된 회사형태로 계속된다는 본질을 전제로 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재조직에 대해서는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취급을 하고 있다.

1) 기업재조직의 범위

미국의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업재조직의 유형은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A형부터 G형까지 7가지 유형이 있다.

가) 실정법상의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A형)

A형 재조직에는 흡수합병(merger)과 신설합병(consolidation)이 있다. 흡수합병은 하나의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하는 형태로서 2개 이상의 회사가 합동하는 것으로서 흡수되는 회사는 소멸되고 그의 자산과 부채는 합병하는 회사에 그대로 승계된다. 반면에 신설합병은 2개 이상의 회사가 합동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서 구법인은 전부 소멸하게 된다.

A형 재조직의 경우에는 합병의 대가가 반드시 의결권주식일 필요는 없으나 주식 이외의 대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분의 계속성(continuity of interest)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미국의 국세청은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에 지불하는 대가 중 적어도 50% 이상은 주식이어야만 비과세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¹³⁾. 그러나 A형 재조직의 경우 피합병회사의 자산이 실질적으로 모두 합병회사로 이전될 필요는 없다. 즉, 피합병회사는 재조직의 비과세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합병회사가 바라지 않는 자산들을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한편 A형 재조직은 제정법(statute)의 제약을 받고 주법에 따라야 한다. 미국 내 대부분의 주에서는 흡수합병이나 신설합병에 참여하는 회사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 대해서는 거부권이나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A형 재조직은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모든 채무를 승계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미확정 채무나 우발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나)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B형)

B형 재조직은 특정 회사가 자기의 의결권주식(또는 지배하는 회사의 의결권주식)을 다른 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지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B형 재조직의 경우에는 교환차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오직 자사의 의결권주식에 의해서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를 생성하여 자회사를 지배(control)하는 것이다. 결국 B형 재조직은 사실상의 주식교환을 통한 기업 재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때 지배의 의미는 모회사의 의결권주식만을 대가로 하여 자회사의 의결권주식의 80% 이상과 다른 종류의 전 주식의 총가액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¹⁴⁾.

13) Rev. Proc. 77-37, 1977-2 C.B. 568, Sec. 3.02.

14) IRC 제368(c)조 (1), Reg. § 1, 368-2.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모회사가 주는 유일한 대가는 의결권주식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만일 모회사가 의결권주식에 더하여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나 채권을 지급한다면 그 거래는 B형 재조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모회사의 의결권주식만의 교환으로 당해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80% 지배를 획득하면 B형 재조직에 해당될 수 있다¹⁵⁾.

다) 다른 회사 재산의 취득(C형)

C형 재조직은 피취득법인의 실질상의 전부(substantially all)의 자산을 취득법인의 의결권주식과 교환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다. 취득하는 회사는 의결권주식만을 교부해야 하기 때문에 피취득법인의 자산은 취득법인의 의결권주식으로만 구성된다. 따라서 피취득법인이 청산되면 취득법인의 의결권주식은 피취득법인의 주주에게 양도되므로 A형 재조직인 흡수합병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한편 C형 재조직에서 실질상의 전부(substantially all)의 범위는 세법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략 순자산가치의 90% 이상, 또한 총자산의 공정시장가치의 70%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¹⁶⁾.

C형 재조직은 A형 재조직에 비하여 지불대가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지만 선택된 부채만을 승계할 수 있고, 알려지지 않은 부채나 우발채무에 대해서는 승계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취득법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미국의 주에 따라서는 C형 재조직의 경우 피취득법인의 주주의 승인만

15) IRC 제368(a)조 (1)(B); Reg. §1, 368-2(c)

16) Rev. Proc. 77-37

을 필요로 하고, 주식매수청구권 역시 피취득법인의 주주에게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서 합병당사자 쌍방의 주주에게 이러한 절차와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A형 재조직에 비하여 절차상의 부담도가 가볍다고 할 수 있다.

라) 다른 회사에 대한 자산의 이전(D형)

D형 재조직은 법인의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고, 양도법인 또는 그 주주(혹은 양자)가 양수법인을 지배하는 형태의 재조직을 의미한다. 양수법인의 주식이나 유가증권은 양도법인에게 분배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지배(control)의 의미는 양수법인의 의결권주식의 80% 이상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의 주식 소유비율은 양도법인에 있어서의 주식의 비율과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양수법인의 주식을 양도법인의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양도법인의 자산의 전부가 양도되면 양도법인은 청산을 하게 되지만 분할적인 재조직의 경우에는 양도법인의 양도비율에 따라 주식을 분배받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A형, B형 및 C형의 재조직 형태는 기업결합을 위한 것인 반면, D형 재조직의 경우는 기업분할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재조직 형태는 대상법인의 자산이전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D형 재조직의 경우에는 주식의 지배권을 취득법인에게 이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난다.

한편 D형 재조직은 spin-off, split-off, 그리고 split-up 등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spin-off는 법인자산의 일부를 분리하여 별도법인을 만들고, 별도 법인주식을 주주에게 교부하는 방식의 재조직이다. 즉, 회사를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를 신설하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회사의 주식을 감하지 않고 신규회사의 주식을 발행하

여 주주에게 교부하게 되는 것이다. split-off는 법인자산의 일부를 분리하여 별도법인을 설립함과 동시에 당해 법인의 주식과 교환으로 주주에 대하여 별도법인의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회사의 일부분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split-up은 법인이 2개 이상의 별도법인을 설립하고 자산을 각각의 별도법인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별도법인의 지배가능 주식을 취득하고, 다시 그 법인의 주식과 교환으로 주주에게 별도법인의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그 법인은 청산되고 2개 이상의 별도법인으로 분할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기업분할의 형태 중에서 spin-off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기업을 분할하는 기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spin-off는 조세회피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마) 자본의 재구성(E형)

E형 재조직은 기업의 자본구조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자본의 재구성은 회사의 주식이나 사채 등을 회사의 수입금액, 소득, 우선순위, 주주나 채권자와의 약속 등에 따라 회사자본이나 부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정비하는 것이다. 즉, 기업의 외부주주, 유가증권, 납입자본금 등의 성격과 금액의 본질적 변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거래는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교환하는 주주에게만 중요한 거래효과가 있고, 아무런 자산을 받지 않은 기업자체는 어떠한 세무상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채권과 주식, 주식과 주식, 채권과 채권과의 교환거래도 E형 재조직으로 인정되며, 기업은 우선주를 위해 일반주를 교환할 수 있으며, 비과세 일반주를 위해 우선주를 교환할 수도 있다. 양도한 부채의 원금이 인수받은 부채의 규모보다 적지 않으면 채권간의

교환은 비과세이다.

바) 회사조직의 실체변경, 조직의 형태 및 장소의 변경(F형)

F형 재조직은 기업조직의 형태나 장소, 정체성(identity)에 있어서의 단순한 변화를 의미한다. F형 재조직에 있어서는 존속법인은 전법인과 사실상 동일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전법인의 세무상 제반 요소를 승계하고, 특히 결손금의 전법인으로서의 후월이 인정되고 있다.

미국의 국세청은 기업재조직이 A형, C형, D형, F형의 어디에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F형의 재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⁷⁾. 또한 미국의 세법의 해석에 따르면 F형 재조직의 정체성, 형태 또는 설립지의 단순한 변경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매우 광범위한 의미로 취급하고 있다. 즉 특정상황을 중심으로 F형은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법인의 합동(combination)이나 전액 소유 자회사의 모회사에의 흡수합병에도 적용되고 있다¹⁸⁾.

사) 파산재조직(G형)

G형 재조직은 회사의 파산, 재산관리인의 의무이행, 담보채무와 채권의 상계 등에 있어서 회사의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경우 부채회사의 채권자는 부채기업의 부채의 총공정시장가치의 80% 이상과 교환하여 해당기업의 의결권주식을 받아야 한다.

G형 재조직으로 인정받으려면 채무회사의 중요한 모든 재산을 취득회사에 넘긴다는 법원의 승인을 받은 재조직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용에 제약이 있다. 중요한 자산의 전부

17) Rev. Rul. 57-276, 1957-1, C. B. 126.

18) Rev. Rul. 75-561, 1975-2, C. B. 129.

가 이전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하거나, 현금을 모으기 위해 자산이나 사업부문을 처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취득회사의 주식이나 증권이 분배되어야 한다¹⁹⁾.

G형 재조직은 비록 법원의 인가를 받은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다른 재조직 형태에 비하여 융통성이 매우 강하다. 예를 들면 G형 재조직은 A형 재조직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의 합병관계법에 따르지 않아도 무방하며, B형 및 C형의 재조직에서 요건으로 하고 있는 의결권주식만을 발행하여야 한다는 대가지급에 대한 제한이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 내국세법상의 기업재조직의 7가지 형태는 하나의 기업이 다른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사 주식이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기존의 회사가 그의 자본구조, 상호, 또는 조직의 형태나 장소 등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재조직은 같은 기업이 변경된 회사형태로 계속된다는 데에 그 본질이 있는데, A형, B형, C형 및 D형 재조직은 실질적인 재조직의 내용을 가진 데 반하여 E형과 F형 재조직은 법인에 있어서 단순한 자본구성의 변경이나 실질적 동질성을 갖는 단순한 형식적 변경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기업의 재조직에 대해서 미국 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비과세취급을 하는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2) 기업재조직에 대한 과세제도

19) IRC 제354~356조

미국은 세법상 비과세 재조직(tax-free reorganization)에 관한 규정을 두고 기업의 결합과 분할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득이나 손실을 인식(recognition)하지 않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기업의 재조직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는 논거는 일반적으로 기업 재조직이 계속되고 있는 지분을 실질적으로 변함없이 단순히 법인형태(corporate form)를 수정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재조직 과정에서 수반되는 거래는 소득세의 과세를 정당화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법인의 경제상태나 주주의 법인기업과의 관계에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경제적 지분의 계속성을 변경시키지 않는 통상의 사업조정에 대하여 방해가 되는 조세장벽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자본의 유동성을 장려하기 위하여 비과세 조치가 취하여지는 것이라고 하겠다²⁰⁾.

기업의 재조직이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거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조세상의 취급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재조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있어서 회사나 그의 주주에게 어떤 이익이나 손실도 인식되지 않는다. 다만 현금이나 기타 다른 급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과세하게 된다. 또한 수취된 주식, 유가증권, 재산 등의 기초가액은 그대로 이월되기 때문에 이들을 처분하기 전에는 그에 대한 이익이나 손실은 인식되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피취득회사의 결손금 이월, 수익, 회계방법 등에 대한 조세상의 처리는 취득회사에 그대로 승계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미국의 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의

20) Clarence F. McCarthy, *The Federal Income Tax: Its Source and Applications*, Prentice Hall, 1974, p. 690. 이우택, 『기업합병·분할과 조세』, 자유기업센터, 1998, pp. 54~55에서 재인용.

재조직에 대하여 이득이나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과세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비과세(tax-free)라고 하는 것은 자산의 과거 세무가액을 그대로 승계함으로써 승계자산의 장래에 있어서의 처분시까지 과세를 연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영원히 비과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는 비과세 재조직에 대한 과세특례가 정상적인 기업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평한 조세부과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비과세거래 성립요건

재조직(reorganization)이 비과세 취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과세거래 성립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사업활동의 계속성(continuity of business enterprise)

사업활동의 계속성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계속성(business continuity) 또는 자산의 계속성(asset continuity)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²¹⁾. 사업의 계속성이란 재조직 후에도 변경된 법인형태에서 취득회사는 피취득회사의 원래의 사업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피취득회사가 여러 개의 사업을 수행했다면 취득회사가 피취득회사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업만 계속 수행하더라도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자산의 계속성이란 계속사업에 있어서 피취득회사의 자산 중 중요한 부분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자산은 주식, 증권뿐 아니라 영업권, 상표권, 특허권과 같은 무형자산을 포함한다.

21) Reg. §1. 368-1

나) 주주지분의 연속성(continuity of shareholder interest)

재조직의 형태 중에서 다른 회사 자산의 분할 및 이전의 경우(D형)를 제외하고는 재조직 전 당해 기업의 소유자 측에서 지분의 계속성이 유지되어야만 한다. 주주지분의 연속성 요건은 회사자산의 매매가 기업재조직의 형식으로 위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하겠다. 즉 특정 회사의 주주의 전부가 자신들의 주식을 취득회사의 증권과 교환하였다면 이는 지분의 계속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자신들의 지분을 새 회사에 매각한 것으로 간주되어 교환 당시에 과세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피취득법인의 이전의 발행주식의 50% 이상의 가액으로 피취득법인 주주가 취득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주지분의 계속성 요건을 만족시킨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²²⁾.

다) 타당한 사업목적(a valid business purpose)

재조직은 타당한 사업목적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 거래가 단순히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지배법인이 자회사의 주식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과세되지만 분명한 사업목적이 있어서 배당한 경우에는 비과세 취급을 하는 것이다. 또한 자회사의 주식배당이 사업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자체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세된다.

라) 주법하에서 타당한 합병의 자격(qualify as a merger under state law)

기업의 재조직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계획에 따라야

22) Rev. Rul. 66-224. 1966-2. c. b. 114.

만 한다. 당사자인 각 법인에 의하여 재조직에 관한 계획이 채용되어야 하며, 그것이 공식기록으로서 구비되고 그 사본이 신고서에 첨부되어 주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²³⁾.

다. 합병관련 과세제도

합병은 비과세 재조직(tax-free reorganization)의 7가지 유형 중에서 A형에 해당한다. 합병인 경우에도 앞에서 논의한 비과세요건들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취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조건들과 관련하여 주법하에서의 타당한 합병자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합병당사법인이 모두 미국 국내기업이어야 한다. 따라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합병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합병전에 외국기업이 내국법인화한 경우이면 비과세합병이 가능하다.

1)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가) 주식교부거래에 대한 비과세

합병법인이 자산인수에 대한 대가로 피합병법인에 대하여 이전하는 것이 합병법인의 주식(신주 또는 자기주식의 여부 불문)인 경우 합병법인은 세법 제1032조에 따라 주식이전에 따른 어떠한 손익도 계상되지 않는다²⁴⁾. 합병법인이 주식에 추가하여 기타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채무의 대가로 자산을

23) IRC 제354(a)조.

24) IRC 제1032조는 법인이 현금이나 다른 자산과의 교환으로 그의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 주식의 교부에 대하여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기업재조직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일반적인 규정이다.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어떠한 손익도 계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합병법인이 주식 또는 증권이 아닌 기타의 자산, 즉 비적격자산을 합병의 대가로 지급하게 된다면 세법 제1001조에 의하여 그로 인하여 실현된 손익은 소득 또는 손실로 계상된다. 그러나 과세대상이 됨으로 인해 취득자산의 기초가액(basis)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나) 합병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기초가액

미국 세법에서는 기초가액(basis)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합병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자산의 양도시 양도차익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로 사용된다. 기초가액은 우리나라 현행 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 등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기초가액은 고정되어 있는 원가개념이 아니고 조정을 반영하는 원가개념이라는 점에서 독특하다.

비과세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기초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법인이 취득한 때의 취득원가에 교환시 피합병법인이 계상한 이득액을 가산한 것으로 된다²⁵⁾. 일반적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거나 사업자의 목적을 위하여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은 세법 제361조에 의해 그 자산의 이전에 관하여 소득 또는 손실을 계상하지 않는다.

다) 피합병법인의 과세손실 처리

세법 제381(a)(2)조는 A형, C형, F형의 기업재조직과 비분할적인 D형 및 G형의 기업재조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법인의 조세속성(tax attribute)이 양수법인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5) IRC 제362(b)조

또한 동법 제381(c)조에서는 양수법인에 승계되는 양도법인의 조세속성과 관련하여 순영업손실, 유보이익, 회계기준, 채무인수, 자본손실, 채고자산평가방법, 감가상각방법 등 무려 24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비과세합병(tax-free merger)이 발생하였다면 순영업손실(net operating losses)을 포함하는 피합병법인의 모든 경영성과는 합병법인에게로 넘겨진다. 법인의 흡수합병(merger)과 신설합병(consolidation)에서 합병법인은 과세소득을 감소시키기 위해 피합병법인의 손실을 손실이 발생한 과세연도로부터 다음 15 과세연도 이내로 이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비과세 기업재조직에 의하여 양수법인에게 이전되는 조세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양도법인의 순영업손실이 아무런 제약없이 양수법인에게 이전된다면 단지 영업손실의 승계만을 위한 합병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세법은 이와 같은 영업손실의 승계를 이용하는 비과세 기업재조직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296조의 조세회피방지규정과 제382조의 소유관계변동시 승계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세법 제296조의 조세회피방지규정은 비과세 기업재조직의 주목적이 탈세 또는 조세회피의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기업재조직에 따른 세법상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따라서 비과세 합병은 타당한 사업목적이 있어야만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면 다른 비과세거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합병일지라도 비과세거래는 가능하지 않다. 결국 순영업손실을 포함한 어떤 과세상의 특혜를 누리기 위하여 합병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목적으로의 손실의 사용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배제되는 것이다. .

한편 미국의 세법 제382조는 피합병법인의 소유관계의 변동

(ownership change)이 있는 때에는 일정액의 영업손실만이 양수 법인에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비과세 기업재조직에 의하여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의 지분구성에 50%를 초과하는 변동이 있는 경우(equity structure shift)에는 피합병법인의 지분변동 전의 이월 순영업손실과 합병법인의 지분변동 후의 이익과의 상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소유관계의 변동이란 5% 이상의 소유주주의 변동(owner shift)이나 지분구성(equity structure)의 변동을 말한다. 소유자변동이란 5% 이상 소유주주의 주식소유에 영향을 미치는 양도법인의 지분소유의 변동을 말하며, 이러한 5% 이상 소유주주의 지주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증가가 있을 때에는 소유관계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소유관계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양도법인의 평가액에 매월 과세당국이 공표하는 장기비과세비율(the long-term tax-exempt)을 곱한 금액을 연간한도액으로 하여 양도법인의 영업손실이 양수법인에게 승계된다. 이는 양도법인에게 소유관계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고 그 순자산을 비과세증권에 투자하였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소득액과 동일한 금액이다.

라) 특별과세 신고의무

법인은 사업을 영위한 모든 기간에 대한 납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사업의 영위기간은 합병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 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상황에서 피합병법인은 합병일 당일까지의 납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합병법인은 모든 기간 동안의 신고서를 계속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세법규칙(Regulation) 제1368-3조에는 비과세 재조직되는 기업은 국세청(IRS)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합병거래에서 양도되는

자산의 가치와 성질에 대한 일정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특별한 조건이 있다.

2)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가) 교환하거나 받은 자산의 과세취급

비과세 기업재조직의 일방당사법인인 피합병법인이 기업재조직에 따라 자산을 이전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합병사의 주식 또는 증권만을 취득하는 것은 과세되지 않는다²⁶⁾. 피합병법인은 주식이나 증권에 추가하여 기타의 대가(boot)를 수령할 수 있으며, 이를 기업재조직의 계획에 따라 분배하는 한 과세되지 않는다²⁷⁾. 기업재조직 계획에 의하여 수령한 주식이나 증권 이외의 다른 자산이나 금전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유한 다른 자산이나 금전의 범위 내에서 피합병법인에게 소득(gain)이 인식된다²⁸⁾. 그러나 피합병법인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실은 인식되지 않는다²⁹⁾

한편 합병사가 피합병법인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급을 면한 채무액은 피합병법인이 실현한 금액의 일부이지만 과세대상소득으로 되지 않는다³⁰⁾. 지급을 면한 채무는 일반적으로 세법 제361조의 목적상 현금, 기타자산(boot)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무의 인수가 내국세법 제357(b)조에서 조세회피 또는 사업상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수된 채무전액이 현금 및 기타자산(boot)으로 취급

26) IRC 제361(a)조

27) IRC 제361(b)(1)(A)조

28) IRC 제361(b)(B)조

29) IRC 제361(b)(2)조

30) IRC 제357(a)조

되어 과세된다. 면제된 채무액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피합병법인이 그 채무의 범위에서 소득을 실현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 주주에 대한 자산의 분배

세법 제361(c)(1)조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이 일반적으로 기업재조직의 계획에 따라 주주에게 자산을 분배(청산)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손익도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피합병법인이 합병사의 세법 제361(c)(2)(B)조에서 정한 특정한 자산인 주식, 채무 이외의 평가익이 있는 자산(appreciated property)을 분배한다면 그 자산은 시가로 분배의 수령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그 소득은 과세하게 된다. 또한 피합병법인이 그 취득가액 이상의 부채를 수반하는 자산을 분배하면 그 자산은 그 부채액에 해당하는 가격을 가진 것으로 취급한다³¹⁾.

다) 채권자에 대한 분배

피합병법인이 청산을 하여 기업재조직에 따라 취득한 주식, 증권 또는 기타 자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한 때에는,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자산을 기업재조직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할 뿐이므로 소득 또는 손실을 계상하지 않는다³²⁾.

3) 주주에 대한 과세제도

가) 합병에 따른 거래의 비과세

피합병법인의 주주와 증권의 소유자는 피합병법인의 주식 또는 증권과의 교환으로 합병법인으로부터 주식 또는 증권이나 기타자

31) IRC 제361(c)(2)(c)조

32) IRC 제361(b)(3)조 및 제361(c)(3)조

산을 취득하게 된다. 세법은 이러한 주식 또는 증권의 교환시에 주주 및 증권의 보유자에게 이익(gain) 또는 손실(loss)이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세법 제354(a)(1)조에 따르면 일방당사법인의 주식 또는 증권이 기업재조직의 계획에 따라 타 법인의 주식 또는 증권과 교환되는 경우 이로 인한 어떠한 손익도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법 제354(a)(2)(A)조에서는 ① 합병으로 받은 증권의 취득가액(액면가액)이 양도된 증권의 액면을 초과하는 경우, ② 증권은 교부하지 않고 합병법인으로부터 증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시가를 초과한 금액이나 교부받은 증권은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법 제354(a)(1)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자산에 추가하여 현금 및 기타자산(boot)을 받는다면, 동법 제356조에 따라 그 현금 및 기타자산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현금 및 기타자산을 받은 주주는 현금의 총액과 기타자산의 시가 범위 내에서 실현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 이 경우 손실은 과세에 반영되지 않는다.

나) 과세소득의 성격

주주가 얻는 이득이 과세되는 경우에도 주주단계에서의 거래에 미치는 효과에 따라 과세의 성격이 나뉘어진다. 세법 제356(a)(2)조상 그 거래(exchange)가 배당의 효과를 갖게 된다면 그 주주의 과세소득은 법인의 유보이익액(earnings and profits: E&P) 중 그 주주의 지분비율만큼은 배당으로 취급하고 나머지 소득은 자본이득(capital gain)으로 취급된다.

다) 주식 및 증권의 기초가액

세법 제358조는 합병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한 자산의 기초가액(basis)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비과세자산(non-

recognition property)의 기초가액은 양도한 주식의 원래의 기초가액에서 수령한 기타 자산(현금 제외)의 공정한 시장가액, 수령한 현금, 교환에서 인식된 손실을 공제하고, 배당 또는 기타 과세소득으로서 계상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다. 복수의 비과세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각각의 시가비율에 따라 할당되어야 한다³³⁾. 세법 제358(a)(2)조에 따르면 비적격자산(과세자산)의 기초가액은 시가와 동일하다.

2. 일본

가. 합병제도

일본에서의 합병이라고 함은 상법상의 합병을 말한다. 즉 합병에 관한 상법의 특별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회사가 합쳐해 1개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법의 특별규정에 따른다는 것은 1개 이상의 회사가 소멸(해산)하고, 소멸회사의 권리의무 및 사원(주주)이 다른 회사 또는 새 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소멸회사에는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이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청산수속이 생략된다³⁴⁾

합병의 형태에는 모든 합병 당사회사가 해산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의 경우와 합병당사회사의 하나만이 존속하고 다른 합병당사회사가 해산하는 흡수합병의 경우가 있다. 일본의 경우 현실적으로는 흡수합병이 훨씬 압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신설합병시에는 경우에 따라 영업면허 등을 새롭게 취득

33) IRC 제358(b)(1)조

34) 商法 제120조, 제147조, 제417조 1항

하고 주식의 상장절차를 거치게 되며, 합병당사회사 쌍방의 주주에게 신주권을 교부하는 한편 등록면허세를 지불하고, 합병당사회사의 주식의 액면가액이 50엔인 경우 신설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가액이 5만엔 이상이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뒤따르기 때문이다³⁵⁾.

한편 일본은 2000년 말 회사분할제도와 관련한 상법규정의 신설에 따라 합병, 분할, 현물출자 등과 같은 기업조직재편성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조세제도를 정비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適格企業再編成에 대하여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은 기업조직재편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適格合併에 대해서도 그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적격합병이란 아래에 열거한 것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합병법인의 주식(출자 포함) 이외의 자산이 전혀 교부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³⁶⁾.

- ① 당해 합병과 관련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간에 있어서 어느 일방의 법인이 다른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출자의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합병
- ② 당해 합병과 관련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간에 있어서 어느 일방의 법인이 다른 법인의 총발행주식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만 100분의 100 미만인 주식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합병으로서 피합병법인 종업원의 80% 이상 승계, 합병 후 이전된 사업이 계속될 것이 예상되

35) 中川美佐子, 『會社合併の原流および米・英・加・日の合併會計』, 千倉書房, p. 99.

36) 법인세법 제2조 제12의 8호. 이와 같은 적격합병 및 기타 적격기업조직 재편성에 관한 법인세법상의 규정은 2001년 4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기업재편성에 대하여 적용한다.

는 것

이제 이하에서는 일본에서의 합병의 절차 및 주주의 보호조치 등 합병제도와 합병의 효과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1) 합병절차

합병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상법은 합병계약서의 작성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합병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³⁷⁾. 합병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는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합병계약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이사회는 합병승인총회의 소집결의를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 소집 2주 전부터 합병일 후 6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합병과 관련된 서류들을 당해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여 주주 및 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합병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에서 해왔으나 1997년의 상법개정으로 이러한 보고총회 및 창립총회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합병의 사후공시제도가 창설되었다.

주주총회에서의 합병계약서의 승인은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37) 商法 제408조 제1항

회사에 대하여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합병에 의해 소멸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해산등기, 신설회사에 대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만 한다³⁸⁾. 합병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의 등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³⁹⁾. 이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되는 회사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것이다.

2) 주주의 보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의 매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합병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고 당해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의 승인에 반대하여야 한다⁴⁰⁾. 주식매수청구는 합병승인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지만 매수가격은 합병이 없었을 경우의 공정가격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매수가격의 결정은 주주와 회사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지만 합병결의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 가격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가 그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대하여 가격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식매수가격이 회사와 주주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때에는 회사는 결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불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가격이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회사는 당해 가격에 합병결의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까지의 법정이자를 합하여 지불하여야 한다⁴¹⁾.

38) 상법 제414조 제1항

39) 상법 제416조 제1항 및 제102조

40) 상법 제408조의3 제1항

3) 간이합병

일본에서는 1997년 상법을 개정하면서 간이합병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의 규모가 소멸회사의 규모에 비하여 현저하게 커서 합병이 존속회사의 주주의 이해에 그다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합병결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⁴²⁾.

간이합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존속회사가 합병시에 발행하는 新株의 총수가 존속회사의 기발행주식 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더구나 합병교부금도 최종 대차대조표에 의해 존속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5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⁴³⁾. 존속회사가 합병시에 신주를 발행하는 대신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수만큼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에 산입된다.

간이합병의 경우에도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이 경우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존속회사는 합병계약서의 작성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소멸회사의 상호 및 본점, 합병기일,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합병하는 이유 등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만 한다. 또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러한 공고 또는 통지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회사에 대해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한편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간이합병은 존속회사의 기발행주식 총수의 6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공고 또는 통지일로부터 2주일 이

41) 상법 제408조의 3 제2항, 제245조의 3 제2항.

42) 상법 제413조의 3

43) 상법 제413조의 3 제1항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

4) 합병의 효과

합병의 효과는 그 등기를 마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⁴⁴⁾. 합병을 행한 결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게 되는데, 그 승계는 이른바 포괄승계이며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는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 따라서 권리의무는 각각 개별적인 이전행위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점이 영업양도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합병시 일반적으로 승계되는 권리의무로서는 소유권, 담보물권, 점유권 및 기타 물건과 광업권, 채석권, 어업권 등과 같은 물권적 재산권, 채권 및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같은 공업소유권, 해제권 등과 같은 취소권도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합병에 따른 이익적립금, 준비금 및 이월결손금의 승계는 당해 합병이 어떠한 성격을 갖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법인세법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적격합병인 경우에는 이들 항목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법인으로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으나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합병의 경우에는 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일본의 國稅通則法 제6조에서는 합병에 의한 국세의 납부의무승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합병법인은 합병에 의해 소멸되는 피합병법인에게 부과된, 또는 피합병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납부의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대차계

44) 상법 제416조 제1항

약상의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지위, 고용, 위임, 조합가입 등 계약상의 지위 및 소송관계도 당연히 존속회사가 승계한다.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당사회사의 일방이 해산하게 되고,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당사회사 모두가 해산하게 된다. 그러나 통상의 해산과는 달리 이와 같은 해산의 경우에는 청산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산회사는 직접적으로 소멸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마지막으로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주의 발행이 이루어지고,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가 성립하게 된다. 이때 발행되는 신주 또는 신규회사의 주식은 합병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합병비율에 따라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할당된다.

나. 합병관련 과세제도

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 채무 및 종업원 등을 승계하게 되는 한편, 자본을 증가하여 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게 된다. 반면에 피합병법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및 채무를 합병법인에게 인계하고 소멸하게 된다. 물론 이 때 해산절차는 밟지 않는다. 따라서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법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신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합병시에는 ① 합병법인, ② 피합병법인, ③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 3자에 대하여 과세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물론 합병 그 자체는 일순간에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지 만 이상에서 언급한 3자간에는 서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기 별개의 과세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현행 일본의 법인세법상에서는 합병에 따른 과세제도에 대하여 적격합병인 경우와 비적격합병인 경우로 분리

하여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제 이하에서는 합병과 관련하여 이상에서 언급한 3자에 대한 과세제도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일본의 법인세법에서는 합병을 목적으로 자산 및 부채가 양도되는 경우에는 합병당시의 시장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⁴⁵⁾.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인세법 제2조에 규정된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합병인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법인으로 이전되는 자산은 당해 합병시 장부가액으로 양도되며, 합병법인은 이에 상당하는 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⁴⁶⁾. 따라서 적격합병인 경우에는 과세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과세합병(tax-free mergers)이 가능하게 된다.

사실 합병법인에 있어서 합병에 따른 세무상의 문제는 합병법인에서의 평가익으로부터 성립되는 합병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합병차익금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통상적인 세율로 과세하게 된다는 점이다. 합병차익금이란 피합병법인의 자산 장부가액을 인상하여 평가한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익이므로 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 그대로 인계받은 경우에는 합병차익금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한편 합병으로 인하여 토지 등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토지양도익에 대하여 중과세한다. 즉 양도가 발생한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토지의 양도에

45) 법인세법 제62조

46) 법인세법 제62조의 2, 제1항.

대해서는 5%의 세율로 중과세한다, 또한 소유기간이 5년 이하의 토지(단기소유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위 토지양도익중과세제도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포함되는 양도익에 대한 법인세액 이외에 추가적으로 그 양도이익 합계액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과세하고 있다⁴⁷⁾. 다만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피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는 이월결손금을 피합병법인이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합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즉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이 합병법인으로 승계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합병법인은 당기의 이익과 상쇄할 수 있게 되므로 과세상 많은 이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합병시에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인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합병법인으로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으나 비적격합병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일본의 법인세법 제 57조 제2항에서는 적격합병이 발생한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적격합병에 관련된 합병법인의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⁴⁸⁾.

사실 일본은 그동안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를 부인하여 왔는데 이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함으로써 조세회피를 하고자 하는 의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

47) 조세특별조치법 제62조의3, 제63조.

48)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

다.

그러나 일본의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한 이러한 구조조정의 수단으로서 합병 및 기업분할 등의 방법이 부각됨에 따라 2000년 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조직재편성에 대한 과세제도를 새롭게 정비하면서 적격합병의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비적격합병인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으로 승계될 수 없으나 특수한 경우 이월결손금이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은행지주회사의 창설 등과 관련한 과세특례의 일환으로서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허락하고 있는 것이다⁴⁹⁾. 즉 금융기관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삼각합병(triangular merger)의 경우에는 사업활동을 행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이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인 합병법인에게 흡수합병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제적 실태의 관점에서 보면 피합병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과 결손법인을 매집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결손금 승계를 인정하여도 조세회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기업재편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과 관련한 등록세, 취득세 및 인지세는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① 등록세 : 새로운 발행자본의 0.15%(등록세법 제9조)
- ② 부동산등록세 : 자산의 장부가액(ledger value)의 0.6%(등록

49) 조세특별조치법 제67조의 11. 동 조항은 1998년 동법 개정시 신설된 조항이다. 한편 과거 일본의 조세특별조치법에서는 삼립조합의 경제적 기초를 강화하기 위한 합병을 촉진한다는 입장에서 삼립조합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를 인정한 경우도 있었으나(구법 제66조의 2), 동 규정은 1980년 개정시에 삭제되었다.

세법 제10조)

- ③ 부동산취득세 : 면세(지방세법 제73(7)조)
- ④ 자동차취득세 : 면세(지방세법 제699(4)조)
- ⑤ 특별토지보유세 : 면세(지방세법 제587조)
- ⑥ 인지세 : 합병계약 건당 40,000엔(인지세법 제2조)

2)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일본의 합병제도와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과세제도상 문제점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일까지의 사업연도(최후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사업연도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일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하며, 합병일이란 합병계약에서 합병기일로 정하여진 날의 前日을 의미하는 것이다⁵⁰⁾. 즉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을 1개 사업연도로 하는 법인이 9월 1일(합병기일)에 합병한 경우에는 1월부터 8월 31일까지가 1개 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회사의 최후 사업연도의 성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세법에서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일까지가 하나의 사업연도로 되지만 그 사업연도의 손익의 확정 문제는 합병계약서에 따라서 처리하게 된다. 즉 이 사업연도는 세법상 사업연도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며, 상법상으로는 합병기일에 있어서 모든 자산 및 부채가 인계되는 것이다. 따라서 최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결산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50) 법인세기본통달 1-2-3.

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확정결산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결국 최후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은 그 기간에 대하여 작성된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점이 과세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통상의 사업연도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당해 최후 사업연도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자산에 대한 평가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법상 그 평가손의 계상은 인정되지 않는다⁵¹⁾. 그러나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손은 시가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다. 즉 당해 자산이 재해로 인하여 현저하게 손상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특히 매매목적의 유가증권인 경우 그 가액이 현저히 하락하였거나, 기타의 유가증권인 경우 발행법인의 자산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됨에 따라 그 가액이 현저하게 하락한 때에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지출한 퇴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금액이 명확할 경우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손금정리를 하고자 하여도 기말(또는 합병시점) 현재에 있어서 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후의 사업연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손금정리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법인세기본통달에서는 임원퇴직급여가 합병승인총회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금액 등의 합리성을 전제로 하여 이를 미불금으로 계상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⁵²⁾.

51)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

52) 법인세기본통달 4-2-11.

3)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제도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다. 이는 舊株와 新株 간의 교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식의 교환에 따라 양도손익 또는 배당과 관련한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구법인세법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구주를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손익을 계상하여 왔다. 그러나 2000년 말 개정된 일본의 법인세법에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만을 교부하게 되는 적격합병의 경우에는 구주의 양도손익의 과세이연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에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 중에 피합병법인의 이익을 기초로 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는 간주배당의 규정이 있지만 기업조직재편성에 따른 적격합병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세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즉 적격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산의 이전이 장부가액으로 처리되므로 피합병법인의 이익적립금이 합병법인에게 인계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배당으로 간주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에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신주 이외에 합병교부금 등을 받게 되는 비적격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가 시장가격으로 이루어지므로 양도손익의 문제가 발생하고 신주 및 합병교부금의 합계액이 구주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주에 대한 배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간주배당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⁵³⁾.

53) 법인세법 제24조.

4) 조세회피방지규정

일본은 구법인세법에서 합병 등의 과정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방지규정으로 동족회사 등의 행위 또는 계산의 부인규정(제132조)를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기업조직재편성과 관련한 조세제도 정비가 이루어진 신법인세법(2000년 말 개정)에서는 동 규정에 추가하여 조직재편성에 관한 행위 또는 계산의 부인규정(제132조의 2)을 새로이 추가함으로써 조직재편성에 관한 포괄적인 조세회피의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선 동족회사란 3인 이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의 발행총주식 또는 출자금액의 50% 이상에 상당하는 회사를 의미한다⁵⁴⁾. 동족회사 등의 행위 또는 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르면 법인과 주주들 간의 거래는 독립기업간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동족회사 등의 행위 또는 계산을 용인할 경우 법인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당해 법인에 관한 과세표준 또는 결손금, 법인세액 등을 새롭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조직재편성에 관한 행위 및 계산부인 규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합병에 의해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한 법인 또는 당해 자산 및 부채를 취득한 법인, 이전법인 또는 취득법인의 주주가 되는 법인의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 또는 결정을 할 때 이들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을 용인할 경우 법인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당해 법인에 관한 과세표준 또는 결손금, 법인세액 등을 새롭게 계산할 수 있도록

54) 법인세법 제2조 제10호

하고 있다. 즉 합병과 관련한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에 의해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양도이익금액의 감소 또는 손실금액의 증가가 발생하거나, 법인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의 증가, 이전법인 또는 취득법인의 주식(출자 포함)양도에 따른 이익금액의 감소 또는 손실금액의 증가, 간주배당금액 규정(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액으로 간주되는 금액이 감소하는 등의 사유에 따라 법인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합병관련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도록 하는 규정인 것이다.

3. 정책적 시사점

미국의 경우 합병에 대한 과세제도는 기업재조직(reorganization)에 대한 과세제도의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기업재조직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기업재조직이 법인의 조직변경에도 불구하고 투자가가 사업주체에 대한 지분을 주식소유의 계속이라는 형태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직변경은 경제적인 지분의 계속성을 기본적으로 바꾸는 일이 없는 통상의 사업조정이므로 이와 같은 재조정을 하는 데 방해가 되는 조세장벽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과세 재조직에 대한 과세특례가 정상적인 기업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평한 조세부과를 방지하려는 데 있지만,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과세 재조직의 적용요건을 정하고 있다. 비과세 재조직의 적용요건으로는 기본적으로 각 주의 회사법에 규정된 기업재조직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기업재조직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그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 기업재조직이어야 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확실한 사업목적이 전제된 기업재조직이어야 하고, 원래의 소유자가 계속된 지분을 가지

는 기업재조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미국에서는 기업재조직의 7가지 유형(A형~G형) 중에서 합병은 A형에 해당하며, 이 유형에 해당하는 합병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비과세(tax-free)는 피합병회사 자산의 과거 세무가액을 승계함으로써 승계자산의 장래에 있어서의 처분시까지 과세를 연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영원히 비과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미국의 경우 합병에 대한 세무회계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합병에 대한 비과세 방법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합병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에 대한 대가로 피합병법인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합병법인은 주식 이전에 따른 어떤 소득 또는 손실도 계상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주식에 추가하여 기타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채무의 대가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병법인은 어떤 소득도 손실도 계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합병법인이 주식 또는 증권이 아닌 기타의 자산 즉, 비적격자산을 합병의 대가로 이전하게 되면 합병법인은 실현한 이득 또는 손실을 소득 또는 손실로서 계상한다.

피합병법인의 경우 합병에 따라 자산을 이전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합병회사의 주식 또는 증권만을 취득하면 소득 또는 손실을 계상하지 않는다. 피합병회사가 주식이나 증권에 추가하여 기타의 대가를 수령하여 이를 기업재조직의 계획에 따라 분배하면 소득 또는 손실을 계상하지 않는다. 반면 기업재조직계획에 의하여 수령한 주식이나 증권 이외의 다른 자산이나 금전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유한 다른 자산이나 금전의 범위 내에서 피합병회사에게 소득이 인식되며, 피합병회사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실은 인식되지 않는다.

피합병회사의 주주의 경우 피합병회사의 주식 또는 증권과의 교환으로 합병회사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이러한 주식의 교환시에 주식의 보유자에게 주식이전에 따른 어떤 소득 또는 손실도 계상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주식에 추가하여 기타 증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증권의 액면액이 합병법인에게 반환된 주식 이외의 증권의 액면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비과세자산이 된다. 그러나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실현한 이득 중 현금 및 이외의 비적격자산에 대해서는 공정한 시장가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

미국의 합병관련 세법은 매수법으로 단일화된 기업회계와는 달리 비과세 합병의 적용요건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합병에 대해서 지분통합법에 해당하는 회계처리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합병에 대해 가능한 과세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합병법인이 취득하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기초가액(basis)을 계산하는 방법은 기업회계에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승계하는 방법을 따른다⁵⁵⁾. 이러한 회계처리 방법은 합병을 매수회사가 피매수회사의 순자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매수법의 회계처리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미국 합병관련 세법은 회계처리 방법에 있어서 기업회계처리 방법에 얽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본의 합병관련 세제는 2000년말 법인세법의 개정에 의해 대폭 정비되었다.

기업조직재편성의 일환으로 적격합병(適格合併)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기업재조직에 대해 조세장벽을 최소화하였다. 적격합병

55) 다만 세무회계에서는 취득한 자산의 기초가액은 해당 자산의 피합병법인하에서의 취득원가에서 교환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이 계상한 소득액을 가산한 금액이 된다.

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적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① i) 당해 합병과 관련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간에 있어서 어느 일방의 법인이 다른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출자의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합병
- ii) 당해 합병과 관련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간에 있어서 어느 일방의 법인이 다른 법인의 총발행주식 등의 50%를 초과하지만 100% 미만인 주식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 보유하게 되는 합병으로서 피합병법인 종업원의 80%이상을 승계하고 합병 후 이전된 사업이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것
- ② i) 또는 ii)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법인의 주식(출자 포함) 이외의 자산이 전혀 교부되지 않을 것

일본의 적격합병의 적용요건은 미국의 비과세 재조직(tax-free reorganization)의 적용요건과 유사하다. 이는 일본의 제도가 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일본의 경우 피합병 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법인의 주식 이외의 자산을 교부하는 경우 적격합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적용요건보다 더 엄격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법인의 주식 이외의 자산을 교부하는 경우 반드시 비과세 재조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주식 이외의 증권이 교부되는 경우로서 증권의 공정한 시장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자산이 되며, 주식이나 증권 이외의 자산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은 비과세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합병에 대한 세무회계 처리방법은 합병본질론의 인격합일설에 입각한 것이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법인으로 이

전되는 자산은 합병시 장부가액으로 양도되도록 함으로서 비과세 합병이 가능하게 된다. 합병본질론에 따르면 대부분의 합병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그들의 자산을 회사에 현물로 출자하는 절차라고 보는 현물출자설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합병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기 위해서 피합병법인의 인격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인격합일설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륙법계에서 발전해 온 합병본질론의 인격합일설을 미국에서 발전해 온 기업회계의 지분통합법과 유사한 것이다.

IV. 우리나라 합병관련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합병관련 과세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가. 우리나라 합병기업의 회계처리

우리나라 최초의 합병회계처리규정은 1986년 제정된 「합병회계준칙」이었다. 「합병회계준칙」은 합병의 법률적 성격을 강조한 반면 회계처리상의 개념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였다. 합병회계준칙은 어떤 형태의 합병에 대해서 매수법과 지분통합법 중에서 어떤 합병회계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합병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매수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엄격한 적용요건을 제시하여 이에 해당하는 합병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지분통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매수법은 취득한 자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가치로 기록되므로 역사적 원가의 원칙에 일치하는 회계방법이다. 따라서 합병은 원칙적으로 매수법에 의해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반면 합병당사회사의 주주의 상대적 지위가 합병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합병거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분통합법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자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매수법보다는 지분통합법을 선호할 것이다⁵⁶⁾.

그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지분통합법하에서는 순이익을 높게 계상할 수 있다. 이는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장부상의 금액이 일반적으로 공정가치보다 낮게 계산되기 때문이다. 장부상의 금액이 공정가치보다 낮게 계산되면 회계기간 동안에 감가상각비를 실제보다 적게 계상함으로써 순이익을 높게 계상할 수 있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로부터 취득한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순이익을 높게 계상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지분통합법하에서는 피합병회사 주주의 부가 합병회사 주주에게로 이전된다.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승계함으로써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분통합법에서는 영업권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합병 후 영업권상각으로 인한 이익감소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기업의 경영자는 지분통합법을 선호하지만 같은 이유로 인해 기업회계정보의 이용자인 투자자는 지분통합법의 남용에 의해 피해를 볼 수 있다. 즉, 지분통합법하에서는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장부가액으로 승계됨에 따라 합병 후 이익이나 투자수익률이 매수법하에서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그 정보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분통합법은 합병당사회사의 소유주 지분이 단순하게 결합됨으로써 합병당사회사 주주들의 위험과 상대적 지위가 변동되지 않는 합병에 한해서 적용되도록 그 요건을 까다롭게 둘 필요가 있다.

개정 전 합병회계준칙도 현행 합병회계준칙과 마찬가지로 매수법을 원칙으로 하고 지분통합법을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하도록 허

56) 송인만·윤순철(1995), p. 1007.

용하였다. 그러나 실제의 합병에서 적용되는 회계기준은 원칙과 예외가 전도되어 대부분의 합병에서는 지분통합합법이 사용되었고, 소수의 합병에서만 매수법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합병회계는 합병의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원칙과 예외의 정도는 합병회계준칙 및 세법의 규정들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개정 전 합병회계준칙에서는 지분통합합법이 적용되기 위한 합병의 요건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다만 합병회계준칙 제5조에 “.....타법령의 규정에 의거 불가피한 경우에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할 뿐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규정들 때문에 실제 대부분의 합병법인은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지분통합법에 의한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문제를 피할 수 있었다. 즉, ‘타법령’을 ‘세법’으로 해석함으로써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합병회계준칙의 규정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분통합법을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당연히 이와 같은 합병회계는 합병의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 것은 그나마 합병회계처리에 있어서 매수법과 지분통합법 중 하나의 방법이 일관되게 사용된 것이 아니라, 각 개별적 합병회계처리에 있어서 두 가지 회계처리 방법이 혼용되었다는 것이다. 이우택(1998)에 의하면 84.6%의 합병이 장부가액으로 자산·부채를 승계(지분통합법)하면서 97.83%가 합병차익을 계상(매수법)하였으며, 또한 이월결손금은 6.45%만이 승계(지분통합법)하였고 영업권은 100% 계상(매수법)한 것으로 나타났다⁵⁷⁾. 이처럼 합병회사는 매수법과 지분통합법 회계를 혼용하고 있어서 실제 합병회계처리 방법이 합병회계의 이론이나

원칙에 전혀 맞지 않았던 것이다.

현행 합병회계처리규정인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은 1986년에 제정된 「합병회계준칙」을 1999년에 개정한 것이다. 과거의 「합병회계준칙」에서는 합병의 법률적 성격이 강조되어 회계처리상의 개념이 모호하고 인수·합병의 경제적 실질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던 반면,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이하에서는 ‘현행 합병회계준칙’이라고 함)에서는 합병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방법을 달리 적용하는 등 기업결합거래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방법을 거의 수용하고 있다. 현행 합병회계준칙에서는 합병에 대해 원칙적으로 매수법에 따라 회계처리 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분통합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① 결합참여회사 중 주식발행회사가 결합을 위하여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이 상대방 결합참여회사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 90% 이상과 교환 또는 통합되어야 함.
- ② 결합참여회사간 자산의 공정가액에서 부채의 공정가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의 공정가액”)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아야 함.
- ③ 각 결합참여회사 주주들 간의 결합 전 상대적 의결권 또는 지분율이 결합으로 인하여 변동되어서는 안됨.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합병회계준칙에서는 최근에 와서야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으로 합병회계처리방법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분통합법

57) 이우택(1998), p. 575.

을 폐지하고 매수법으로 이미 단일화했거나 단일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FASB는 2001년 6월 1일 FASB Statement No. 141을 발표하여 지분통합법을 폐지하였으며, 또한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및 미국이 참여한 G 4+1의 기업결합에 대한 Position Paper에서도 매수법의 단일화를 권고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에 와서야 우리나라 합병회계준칙이 국제회계기준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합병회계처리에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으나, 이미 국제회계기준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우리나라의 합병회계는 합병회계준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조류에는 한참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나. 합병관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괴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기업의 경제적 활동이라는 동일한 회계현상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그 목적은 서로 다르다. 기업회계는 발생주의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등에 의하여 이용자들이 기업의 미래현금흐름 또는 미래수익력을 측정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기업의 기간손익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세무회계는 과세소득을 계산하고 납세자간에 소득계산의 통일성과 조세부담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회계로서 국가재정의 조달을 위한 세수확보와 조세의 형평성 유지 및 조세합법적 징수를 목적으로 한다⁵⁸⁾. 이와 같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목적이 다른 만큼 각 회계에 의해 계산되는 기업이익과 과세소득은 어느 정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회계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업활동의

58) 유시권 외(1997), p. 38.

경제적 실질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하나의 기업활동에 대해 양 회계가 다른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유시권 외(1997)는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일치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⁵⁹⁾. 첫째, 다른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모든 소득은 과세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세무회계가 불가피하게 차이를 인정하여야 하는 극히 제한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이론의 확대사용은 보다 공평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 양 회계를 좀 더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함으로써 기업이 장부상으로는 높게 과세소득은 낮게 하려는 유인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셋째, 양 회계의 불일치는 기업회계정보의 이용자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며, 기업회계의 기능과 가치를 크게 훼손한다.

우리나라의 합병관련 기업회계는 앞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매수법에 의한 회계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분통합법에 의한 회계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매수법은 매수회사를 파악할 수 있는 합병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는 회계처리방법으로서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순자산을 취득한다는 가정하에 피합병회사로부터 취득한 자산·부채 가운데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모든 자산·부채는 매수일의 공정가액으로 인식한다. 지분통합법은 매수회사를 파악할 수 없는 합병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는 회계처리방법으로서 합병으로 인해 기존 주주들의 실질적인 지배력에 변동이 없다는 가정에서 피합병회사의 자산·부채는 장부가액으로 승계한다.

한편 합병관련 세무회계는 합병관련 기업회계의 기본원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합병관련 세무회계는 합병관련

59) 유시권 외(1997), pp. 42~43.

기업회계로부터 상당히 이탈되어 있다. 이런 결과가 초래된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합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합병의 과정에서 과세문제가 가능한 한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병과세제도가 개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합병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 이론적인 근거는 제Ⅲ장에서 살펴본 미국의 재조직(reorganization)에 대한 비과세의 논리가 대표적인 것이다. 재조직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는 이유는 법인의 조직변경에도 불구하고 투자가는 사업주체에 대한 지분을 주식소유의 계속이라는 형태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조직변경은 경제적인 지분의 계속성을 기본적으로 바꾸는 일이 없는 통상의 사업조정이므로 이와 같은 사업조정에 방해가 되는 조세장벽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조직변경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사업조정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의 조직변경에서 생기는 이득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것이다.

세무회계에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도록 하거나, 또는 합병법인으로부터 받는 신주의 가액을 액면가로 계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합병관련 기업회계의 지분통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합병에 적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매수법을 원칙으로 하고 지분통합법을 예외로 하고 있는 합병관련 기업회계의 기본원칙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합병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으려는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합병관련 기업회계의 기본원리에 의한 일관성 있는 합병과세제도의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즉, 합병관련 세법은 합병관련 기업회계의 기본원리에 따라 정비된 것이 아니고 합병의 과정에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시방편적으로 회계처리방법을 규율하고 있

는 것이다.

합병관련 세무회계가 합병관련 기업회계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제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합병회계가 우리나라의 합병회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반면, 합병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법과 세법은 독일을 중심으로 한 대륙법계의 상법논리에 따른 합병본질론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합병본질론으로서의 현물출자설은 합병회계의 매수법과 유사하고 합병본질론으로서의 인격합일설은 합병회계의 지분통합법과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합병회계처리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합병관련 세제는 기본적으로 독일·일본 등의 학계에서 발전되어 온 합병본질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도 합병관련 기업회계의 회계처리방법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처리가 매우 복잡하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다. 합병관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정 가능성 검토

기업회계에서 매수법이 적용되는 합병에 대해서 세법에서도 공정가액에 의한 합병으로 인정하고, 기업회계에서 지분통합법이 적용되는 합병에 대해서는 세법에서도 장부가액에 의한 합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합병관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일치도 가능하다.

기업회계에서 매수법의 적용을 받는 합병과 지분통합법의 적용을 받는 합병을 세법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으로 구분하여 일관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에 대해 박성배 외(1999)는 “현재 법인세법에서는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합병회계의 경우처럼 합병의 실질에 따라 지분통합에 의한 합병과 매수에 의한 합병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

장하고 있다. 만일 지분통합법에 해당하는 합병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주고자 한다면 박성배 외(1999)의 주장대로 세법에서도 기업회계와 마찬가지로 합병의 실질에 따라 지분통합에 의한 합병과 매수에 의한 합병으로 구분하여 지분통합에 의한 합병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매수에 의한 합병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세법에서는 합병이 법인의 조직변경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지분을 주식소유의 계속이라는 형태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합병의 과정에서 가능한 한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회계의 원칙을 받아들여 합병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매수에 의한 합병과 지분통합에 의한 합병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합병관련 세무회계는 근본적으로 기업회계의 회계처리방법으로부터 이탈할 수밖에 없다. 합병관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일치 내지 조정이 실현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한편 과거의 합병회계준칙을 대체한 현행 합병회계준칙은 합병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매수법과 지분통합법 중 하나의 회계처리 방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적용요건을 밝히고 있다. 현행의 합병회계준칙은 매수법을 원칙으로 하고 지분통합법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합병회계준칙과 다를 바 없지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지분통합법의 적용요건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는 과거의 합병회계준칙과 다르다. 현행 합병회계준칙에서는 과거의 합병회계준칙 제5조에 해당하는 “..... 타법령의 규정에 의거 불가피한 경우에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합병당사회사의 주주들 중 지배하는 주주가 명확하지 않고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결합된 실체의 경영진에 참가하는 등 합병당사회사의 주주들이 결합된 실체의 위험

과 효익을 공동으로 분담하게 되는 합병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지분통합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합병회계준칙은 매수법의 적용을 받는 합병과 지분통합법의 적용을 받는 합병을 비교적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현행의 합병회계준칙하에서 합병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합병당사법인이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합병회계준칙에 의해 지분통합법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에 대해서는 지분통합법에 의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지만, 지분통합법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합병에 대해서는 매수법에 의한 회계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과거처럼 매수법을 적용하여야 할 합병에 대해서도 지분통합법을 적용하는 일은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당국은 경제적인 지분의 계속성을 기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법인의 조직변경에 불과한 합병에 대해서는 조세장벽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재조직을 돕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있는 한, 합병의 경제적 실질만을 감안하여 합병과세제도를 정비하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기업회계상 매수법을 적용해야 하는 합병에 대해서도 그 합병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이다. 향후 대부분의 합병에 대한 기업회계로서 매수법이 적용되고 일부 예외적인 합병에 대해 지분통합법이 적용될 것이지만, 세무회계에서는 매수법이 적용되는 합병 중에서도 상당수의 합병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도록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2. 비과세 합병제도의 정비

가. 비과세 합병제도 적용요건

현재 우리나라 세법에서도 1998년의 세법개정에 의해 비과세 합병의 논리를 상당폭 수용하였으나 제도로서 잘 정비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행 세법에서 비과세 합병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과세문제에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적용요건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합병회사의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월결손금 승계문제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 외에도 세 가지 요건이 추가되며, 피합병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문제의 경우에는 요건 ①과 ②만 적용된다.

- 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95% 이상일 것
-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세부적인 과세문제에 대해 따로 적용되는 기준을 폐지하고 비과세 합병의 적용요건을 단일화해야 할 것이다. 비과세 합병의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비과세 합병으로 인정을 받도록 하고, 관련되는 각 과세문제에 대해 일관성 있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적될 수 있는 문제점은 비과세 합병의 적용요건이 너무 느슨하다는 점이다. 1998년 말 법인세법의 전면개정에서 비과세 합병의 적용요건이 구체화된 이유는 합병시 기업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기업의 내부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불

공정합병 등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⁶⁰⁾. 합병시 기업의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요건 ①과 요건 ③으로도 충분하고, 또한 기업의 내부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요건 ②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제 가지 요건만으로는 불충분한 점이 있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 사업의 계속성(continuity of business interest), ㉡ 주주지분의 연속성(continuity of shareholder interest), ㉢ 타당한 사업목적(a valid business purpose), ㉣ 주법하에서 타당한 합병의 자격(qualify as a merger under state law)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과세 합병의 적용요건은 미국의 비과세 합병의 적용요건에 비해 너무 느슨한 편이다. 미국의 비과세 합병의 적용요건의 수준 정도로까지 우리나라의 비과세 합병의 적용요건을 강화한다면 합병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타당한 사업목적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합병 후에도 주주지분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요건 등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비과세 합병의 적용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과세 합병은 상법의 규정을 따르는 합병이어야 하며 합병의 공식기록을 과세당국에 보고하도록 한다. 이 요건은 사업목적은 없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서류상의 합병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상법에 규정된 합병의 절차를 따르는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의 경우로서 합병계획을 과세당국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합병대차대조표를 공시하여야 한다. 흡수합병의 경우는 보고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신설합병의 경우는 창립총회

60) 장태평(1999), p. 153.

를 소집하여야 하고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후 2주 내지 3주 내에 합병의 등기를 마쳐야 한다. 또한 이러한 합병의 공식기록을 과세당국에 보고하도록 한다.

둘째, 비과세 합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합병 후에도 지분의 계속성이 필요하다. 합병 전의 지분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회사자산의 매매가 합병의 형식으로 위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어느 정도의 지분을 어느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미국의 경우는 피합병법인의 이전의 발행주식의 50% 이상의 가액으로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주지분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한다. 지분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합병법인의 이전의 발행주식의 상당부분(예를 들면 80% 이상)의 가액으로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법인의 주식을 상당기간(예를 들면 3년 이상) 소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합병 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현행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요건도 주주지분의 계속성 요건과 마찬가지로 회사자산의 매매가 합병의 형식으로 위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세법에는 적용요건으로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만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만 합병차익 및 이월결손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 이 요건을 강화하여 어떤 경우라도 비과세 합병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3년 이상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95%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그대로 둘 수 있을 것이다. 이 요건은 기업의 내부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을 두지 않는 대신, 현금이나 기타 다른 급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는 100% 주식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으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적격합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다.

나. 비과세 합병제도 기본구조의 모색

합병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이유는 합병본질론적 관점에서 인격합일설을 따르기 때문이다. 인격합일설에 의하면 둘 이상의 회사가 결합하여 하나로 되지만 피합병회사의 인격이 승계되어 합병회사에서 그대로 계속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합병회계준칙에 의해 지분통합법이 적용되는 합병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비과세 합병제도를 두는 또 다른 이유는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세금문제가 가능한 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분통합법의 적용요건보다 비과세 합병제도의 적용요건이 그 범위에 있어서 훨씬 더 넓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과세 합병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기 위한 세무회계 처리방법은 기본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기업회계에 있어서 지분통합법에 의한 회계처리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회계상 매수법으로 회계처리된 합병에 대해서도 많은 경우 세무회계상 피합병회사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피합병회사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간

주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자산의 인수·도 과정에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그 이외의 합병의 각 단계에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비과세 합병제도에 있어서 세무회계상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은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자산·부채의 평가

비과세 합병제도의 기본적인 회계처리방법은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합병본질론적 관점에서는 인격합일설을 따르는 것이고 회계처리 방법으로는 지분통합법을 따르는 것이다. 합병에 의해 둘 이상의 회사가 결합하여 하나로 되지만 피합병회사의 인격이 승계되어 합병회사에서 그대로 계속 인정된다고 간주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회사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합병회계준칙상 매수법으로 회계처리된 합병을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합병법인은 기업회계장부를 결산한 후 상당부분 세무조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2) 합병차익

비과세 합병의 경우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처리 방법은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증으로 인한 합병차익 중 일정한 금액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합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과세이연을 허용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비과세 합병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합병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 ① 피합병법인이 결손법인으로 주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장부가액대로 승계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 미달하게 합병신주식을 교부할 때 승계한 자산의 장부가액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주식 간의 차이는 합병으로 인한 감자차익으로서 합병차익이 된다.
- ② 피합병법인이 자본잉여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장부가액대로 합병법인이 승계하고 그 자본잉여금에 대하여 합병주식이나 기타 합병교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합병차익이 발생한다.
- ③ 피합병법인이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장부가액대로 합병법인이 승계하고 그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합병주식이나 기타 합병교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합병차익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합병차익은 현행 세법에서도 피합병법인의 유보금이나 출자자의 지분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미 과세대상이 된 것으로 간주하여 익금불산입하여 과세하지 않고 있다.

비과세 합병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병차익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현행 세법에서와 같이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증으로 인한 합병차익 중 일정한 금액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3) 합병차손 및 영업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합병차손이 발생한다.

- ① 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때 피합병법인의 자산이 시가에 비해 낮은 가액으로 평가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합병대가를 순자산의 장부가액보다 초과하여 지불할 경우 합병차손이 발생한다.
- ②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때 합병대가를 시가로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이 합병차손이며, 이월결손금을 보전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회계방법인 지분통합법의 관점에서 보면 영업권이란 합병차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숫자상의 조정결과이므로 이의 계상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대로 승계하여 합병차손이 발생한 것은 피합병법인의 합병전 자본금의 액면가액보다 합병 후 자본금의 액면가액이 증가한 것이므로 합병차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비과세 합병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으로 간주하여 영업권 및 합병차익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이월결손금

현행 세법에서는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합병회계준칙에 의해 대부분의 합병이 공정가액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매수법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행 세법의 규정은 실효성이 거의 없을 전망이다.

따라서 비과세 합병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지분은 결합 후의 회사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그대로 합병법인에 승계되도록 한다.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공제한다.

5) 청산소득

현행 세법에서는 청산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주의 가액을 액면가로 계산하도록 하여 가능한 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청산소득이 발생하지 않지만,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청산소득이 발생한다. 경제적으로 무의미한 액면가액을 기초로 계산된 가공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비과세 합병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 승계되어 사업이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산소득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일반 합병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일반 합병에 대한 과세제도의 기본방향

비과세 합병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합병은 일반합병으로 분류하여 과세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반 합병에 해당하는 합병은 합병본질론의 입장에서 현물출자설을 따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물출자설에서는 합병을 다른 현물출자와 마찬가지로 피합병회사의 주주가 그들의 자산을 회사에 현물로 출자하는 절차라고 보는 것이다. 현물출자설에 의하면 합병법인의 입장에서 볼 때 피합병회사의 주주로부터 새로이 순자산을 출자받는 거래가 있으므로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하게 된다. 합병본질론으로서의 현물출자설은 합병회계의 매수법과 유사하다. 매수법은 합병법인이 기업규모를 확대하는 한 수단으로 다른 회사의 자산을 일괄취득함과 동시에 그 회사의 부채를 일괄부담하는 경제적 거래로 보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일반 합병에 대해서는 합병의 본질을 현물출자로 보고 세무회계처리방법으로 매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즉, 일반 합병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순자산의 일괄취득에 관한 회계처리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고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정비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일반 합병에 대한 과세제도의 구체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합병차익

합병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합병이 대부분 특수관계법인간에 이루어졌거나 매우 우호적인 합병이었기 때문에 합병의 대가를 적절히 조정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고 승계받은 자산은 과대계상하여 미래의 손금을 증가시키는 거래가 빈번하였기 때문이다⁶¹⁾. 현행 세법상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는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합병차익의 계산방법에 문제가 있다. 합병법인이 승계한 순자산의 가액은 시가 이내에서 합병법인이 계상하는 가액으로 하고,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합병대가는 주식의 경우 액면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승계한 순자산과 합병대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계산한 합병차익은 경제적으로 무의미하다.

둘째,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이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만을 승계한 것이지 자산을 처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처분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은 미실현이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과세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제도가 매우 복잡하다. 현행 세법은 평가증으로 인한 합병차익을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다만 익금에 산입되는 평가차익에서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증으로 인한 합병차익 중 일정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61) 이은상·이준규(2000), p. 28.

이상과 같은 문제점은 세무회계상 순수한 매수법에 의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피합병회사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이 합병대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시장성 투자유가증권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에서 차감하고 그래도 남은 차액은 부의 영업권으로 하여 향후 일정기간 동안에 환입하여 과세소득을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매수법에 의한 회계처리 방법이다.

만일 제1부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향후 부의 영업권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개선하는 경우 부의 영업권 발생을 공정가액 측정의 오류로 보고, 공정가액 측정의 오류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무형자산 및 상각가능 비재무적 자산에서 직접 차감하고 잔액은 특별이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합병차손과 영업권

합병차손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보다 큰 경우 그 초과금액으로 볼 수 있으며,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준칙 제9조에서는 영업권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합병차손의 처리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또는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권이란 일반적으로 초과수익의 현재가치로 정의되거나 기업의 가치는 기업의 개별자산들의 평가액을 단순히 합산한 금액만으로 측정할 수 없다⁶²⁾. 영업권은 개별 유형자산과는 달리

개별적인 평가가 불가능하여 관련 사업부문의 평가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기업자산의 평가액 이외에 추가의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서 자산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현행 법인세법은 영업권의 감가상각에 대해서 정하고 있을 뿐, 그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다. 법인세법이 영업권의 평가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을 승계하는 경우 그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있다. 법인세법에는 영업권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에서는 영업권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이 규정을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영업권은 법인의 과거 3년 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자본금의 정기예금환산 이익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영업권의 평가액=무체재산권의 평가액+[최근 3년 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함)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 자본×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함)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영업권의 평가산식은 법인의

62) 박성배 외(1999), p. 364.

과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장래의 기대이익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을 승계하는 것은 피합병법인과 합병으로 인한 자산 등의 승계로 인하여 장래에 초과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볼 때, 합병으로 인하여 장래에 기대되는 초과수익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장래의 초과수익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위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가액만을 영업권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가액을 부인하는 현재의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이월결손금

비과세 합병이 아닌 일반 합병에 대해서 매수법에 의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한다면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인수함으로써 자산가치가 없는 결손금은 대가로서 지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 합병의 경우 이월결손금은 당연히 승계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4) 청산소득

현행 세법에서 청산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begin{aligned} \text{청산소득} &= \text{합병대가의 총합계액} - \text{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총액} \\ &= [\text{합병대가(신주+교부금)} + \text{포함주식} + \text{합병법인이} \\ &\quad \text{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 \end{aligned}$$

세·국세·주민세]-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총액

현행 법인세법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이를 포함주식이라고 함)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함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포함주식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반면 그 포함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포함주식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에 따라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액에 대한 지분보다 높은 가액으로 포함주식을 취득한 회사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병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다하게 부담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아래의 사례에서 보듯이 실질적인 구조조정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조속한 합병이 필요했으나 주식취득 후 2년이 경과한 뒤에야 합병이 이루어졌다. 이는 기업들간의 구조조정의 한 방편으로 기업결합을 사용하려는 합병의 본래의 경제적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포함주식을 소유한 법인과 그렇지 않은 법인 간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조세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현재의 법논리가 인정될 수 있으나 기업구조조정의 한 방편으로 기업결합이 활용되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볼 때 2년이라는 기한을 축소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례 1> 청산소득관련 과세로 인한 합병의 지연

대기업인 S회사는 동일업종에 속한 N회사에 대한 흡수합병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 N회사에 대한 합병을 용이하게

진행시키기 위하여 합병 전에 향후 합병법인이 될 S회사는 피합병법인인 N회사의 주식을 다량 취득하여 소유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다. 또한 S회사는 N회사의 주식소유에 있어서 상당한 프리미엄을 지불하였는데 이 또한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다. 즉, 이 경우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N회사의 순자산가액보다는 큰 금액으로 결정되는데 이는 향후 합병 후 규모의 경제로 인한 비용절감, 성장성 향상 등의 시너지효과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S기업의 N기업 합병에는 N기업이 미처 숙지하지 못하였던 다음과 같은 장애가 놓여 있었다.

즉, 위와 같은 합병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인 N회사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이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합주식)에 대해서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거래로 보아 합병대가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례의 경우 피합병회사인 N회사의 순자산가액에 대한 지분보다 높은 가액으로 포합주식을 취득한 S회사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병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다하게 부담하게 되므로 주식취득 후 2년이 경과한 뒤에야 합병이 이루어졌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 이외에도 아래의 사례와 같이 합병시에 교부받은 주식가액의 불합리한 결정으로 인해 합병이 지연된다는 문제가 있다. 법인세법 예규(법인46012-3457, 1999.9.7)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 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에도 교부받은 주식이 상장 또는 협회등록주식으로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례 2> 합병시에 교부받은 주식가액의 불합리한 결정

이 사례는 위의 사례 1과 관련되는 것으로 S기업과 N기업의 합병시에 피합병법인인 N기업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이다. 법인세법에 의하면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예외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일 것
- ②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된 신주의 가액이 총합병대가의 95% 이상일 것

그러나 법인세법 예규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 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에도 교부받은 주식이 상장 또는 협회등록주식으로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N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액면가액에 증권시장에서 매각할 수 없어 이익을 실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액면가액으로 계산함에 따라 불합리하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과다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 또한 위의 S기업과 N기업의 합병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

5) 의제배당

현행 법인세법 제16조에서는 법인이 합병할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과 기타자산의 합계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신주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부대비용으로 포함한 실제로 지출된 총소요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식취득 가액인 시가가 합병법인이 교부한 교부주식의 액면가액과의 차액이 과세대상이다. 이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되는 주식의 가액을 액면금액으로 하고 있으나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기타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경우와 같이 합병신주의 가액을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합병교부금을 자본이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의제배당과 관련한 문제는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식취득가액은 주주의 취득시기에 따라 그 취득가액이 주주마다 다르므로 실무적으로 어떻게 취득원가를 확인하느냐는 것이다. 피합병법인의 구주식의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하고 합병신주는 액면가액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취득시기에 따라 주식취득 가액이 다를 경우 의제배당액은 각각 다르게 계산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주주의 취득원가의 확인이 곤란하여 실무상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합병시점의 주식평가액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합병과 관련하여 의제배당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실무적으로 소액주주에 대한 원천징수는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의 원인은 첫째, 의제배당액의 산출이 어렵다는 것이다. 대주주의 경우는 상기 내역이 관리, 유지되지만 소액 주주의 경우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는데, 개별주주의 취득시점 파악이 용이하지 않고 무상증자, 액면분할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보유하는 주식의 취득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 둘째, 대주주의 경우는 합병비율의 조정으로 잉여금을 통한 부의 이전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소액주주의 경우는 잉여금을 통한 부의 이동이라기보다는 주식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 경우 배당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동 의제배당에 대해서 면세하여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증여의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등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권리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합병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합병당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반면,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합병당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들 법인의 주주도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합병당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여 그 주주도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의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외에도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여 사실상 실익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의제한다는 문제가 있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만 가지고 규제할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자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자로 해야 할 것이다.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그 이익이 특수관계자의 지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을 지워 증여의제를 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V. 결 론

기업의 합병에 관한 과세체계가 대폭 정비된 것은 경제위기의 발생 직후인 1998년 말의 세법개정에서였다. 그동안 합병과세제도는 부분적인 개정에 그쳐 왔으나,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합병차익, 청산소득, 영업권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게 되었다. 법인세법 제6관에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세법에도 비과세 합병제도가 도입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합병과세제도의 대폭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합병세제는 비과세 합병과 과세 합병을 명확히 구분해서 논리적으로 일관된 과세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합병관련 세법은 합병관련 기업회계의 기본원리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합병관련 기업회계로부터 상당히 이탈되어 있다. 합병관련 기업회계는 매수법에 의한 회계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분통합법에 의한 회계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합병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가능한 한 합병으로 인한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무회계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회계처리방법은 지분통합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합병관련 기업회계의 기본적인 회계처리 원칙과는 차이가 있다.

합병관련 세무회계가 합병관련 기업회계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의 합병회계가 우리나라의 합병회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반면, 합병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세법은 독일

을 중심으로 한 대륙법계의 상법논리에 따른 합병본질론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합병본질론으로서의 현물출자설은 합병회계의 매수법과 유사하고 합병본질론으로서의 인격합일설은 합병회계의 지분통합법과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합병회계처리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합병관련 세제는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의 상법논리에 따른 합병본질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도 매수법과 지분통합법과 같은 합병관련 기업회계의 회계처리방법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처리가 매우 복잡하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합병관련 과세제도의 내용과 합병관련 과세제도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합병관련 과세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하는 데에 그 의의를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합병시 이해관계자인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 그리고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등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과세문제를 살펴보았으며, 미국과 일본의 합병관련 과세제도를 검토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합병관련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현행 우리나라 합병관련 과세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비과세 합병과 일반 합병에 대한 과세제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하나의 합병에 대해 일관성 있게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구체적으로 비과세 합병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관성 있게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과세문제에 들어가면 적용요건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비과세 합병의 적용요건이 너무 느슨하여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는 합병 등 비과세의 정당성이 부여될 수 없는 합병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일반 합병에 대한 과세제도도 합병관련 기업회계의 매수법에 해당하는 일관된 회계처리방법에 의해

과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법의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비과세 합병의 적용요건을 미국의 비과세 합병의 적용요건의 수준 정도로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합병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타당한 사업목적 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합병 후에도 주주지분의 연속성이 유지 되어야 한다는 요건 등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과세 합병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합병으로 인정함으로써 합병과 관련되는 각 과세문제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과세 합병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기 위한 세무회계 처리방법은 기본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기업회계에 있어서 지분통합법에 의한 회계처리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회계상 매수법으로 회계처리된 합병에 대해서도 많은 경우 세무회계상 피합병회사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합병회계준칙상 매수법으로 회계처리된 합병을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합병법인은 기업회계장부를 결산한 후 상당부분 세무조정을 필요로 한다.

다음으로 일반 합병에 대한 과세제도는 일반적인 순자산의 일괄 취득에 관한 회계처리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고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일반 합병의 경우는 기업회계상으로 매수법에 의한 회계처리의 대상이므로 세무회계에 있어서도 매수법에 의해 일관되게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반 합병에 대한 과세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합병차익, 합병차손과 영업권, 이월결손금, 청산소득, 의제배당, 증여의제 등의 주요 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김동환·김종천·김안생, 『21c M&A』, 무역경영사, 2000.
- 김진수·김유찬, 『금융기관합병에 관한 조세정책방향』, 정책보고서 97-16, 한국조세연구원, 1997.
- 김유찬, 『기업합병관련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7.
- 박성배·윤태화·오문석, 「합병회계준칙 및 합병과세제도에 대한 분석적 연구」, 『세무학연구』, 제13호, 1999.
- 삼일인포마인,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해설』, 2001.
- 선우석호, 『M&A』, 법문사, 2001.
- 송준호, 『설립·증자·감자·합병·분할·해산의 실무』, 조세통람사, 1997.
- 이우택, 『기업합병분할의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제 25집, 한국조세연구소, 1999.
- _____, 『M&A 회계와 세무』, 조세통람사, 1999, 2001.
- 이은상·이준규, 「합병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계저널』, 제9권 제2호, 한국회계학회, 2000.
- 임대순, 『합병과 세무』, 한국세정신문사, 1998.
- 조세통람사, 『2001 조세편람』, 2001.
- 증권선물위원회,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 1999.
- _____, 「합병회계준칙」, 1998.
- _____, 「해석 49-55 분할·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 1999.
- 지호준·박용원, 『M&A 기업인수·합병』, 법문사, 1998.

한국회계연구원,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 및 분할·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 해석 검토』, 1999.
 화인경영회계법인·법무법인 한결·윤종훈, 『M&A』, 매일경제신문사, 2001.

武田昌輔, 『新版 會社合併の稅務』, 稅務經理協會, 2000.
 日本稅理士會連合會, 『稅務六法』, 平成13年版, 2001.
 財務省 稅制調査會, 『平成13年度稅制改正の大綱』,
<http://www.mof.go.jp>.
 _____, 『平成13年度稅制改正の大綱』, <http://www.mof.go.jp>.
 中川美佐子, 『會社合併の源流および米英加日の合併會計』, 千倉書房, 2000.

Accuracy Clarity Value, *Tolley's Corporation Tax 1997-98*, 1997.
 APB Opinion No. 16, Business Combinations.
 APB Opinion No. 17, Intangible Assets.
 APB Opinion No. 29, Accounting for Nonmonetary Transactions.
 AICPA Accounting Interpretations of APB Opinion 16.
 AICPA Accounting Interpretations of APB Opinion 17.
 CCH, *British Master Tax Guide*, 1997.
 _____, *Internal Revenue Code*, Volume 1 & Volume 2, 2000.
 _____, *2001 U.S. Master Tax Guide*, 2001.
 FAS 38, Accounting for Preacquisition Contingencies of Purchased Enterprises.
 FAS 141, Business Combinations, 2001.
 Fink, E., "Mergers and Acquisitions in USA", *The International Guide to Mergers and Acquisitions*,

- IBFD, No. 9, 1995.
- Floyd A. Beams, John A. Browovsky, Craig D. Shoudlers,
Advanced Accounting, seventh edition.
- G4+1 Position Paper, Recommendations for Achieving
Convergence on the Methods of Accounting for
Business Combinations.
- IAS 22, Business Combinations (revised 1998).
- IAS 38, Intangible Assets.
- Katsushima Toshiaki, “Mergers and Acquisitions in Japan” ,
The International Guide to Mergers and Acquisitions,
IBFD, No. 15, 1998.
- SIC Interpretation 9–Business Combinations–Classification either
as Acquisitions or Unitings of Interests.
- Tomsett, Eric, G., “Mergers and Acquisitions in United
Kingdom” , *The International Guide to Mergers and
Acquisitions*, IBFD, No. 13, 1997.

<부록 I> 기업합병의 의의

1. 합병의 개념

기업은 자본집중에 의한 이윤추구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체의 기술혁신이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생산비 절감, 규모의 경제 실현, 시장의 독점, 각종 조세의 감면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외부적으로 다른 회사와 합병을 추구하게 된다. 기업의 합병이라 함은 둘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그 중의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함으로써, 복수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체되는 회사법상의 제도 또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경영권이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되므로 경영권의 거래라고도 한다.

그러나 기업의 합병은 이러한 법률적 의미의 합병 이외에 보다 광범위한 개념의 경제적 의미의 합병인 자산취득, 주식취득, 영업양수 등이 포함되는 기업결합(business combination)의 형태로 확장된다. 즉, 우리가 흔히 언급하는 기업인수·합병(M&A: merger and acquisitions)은 대상기업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단일회사가 되는 합병(merger)과 어느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자산이나 주식을 취득하여 기업지배권을 취득하는 기업인수(acquisitions)가 결합된 용어이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M&A는 한 기업의 기업부문이나 생산시설을 매각하는 기업처분(divestiture)이나 기업간 자본제휴에 의한 합작사업(joint venture), 또는 지분참여(equity investment)

등 기업결합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널리 포함하기도 한다. 따라서 M&A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을 인적, 물적, 또는 자본적 결합을 통하여 동일한 관리체제하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도록 조직하는 기업결합의 한 형태로서, 기업구조의 재편에 관한 제반 기법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합병이 추진되는 목적은 기업이 산업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외향적 확대 또는 축소에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기업의 외향적 성장전략의 한 방법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업여건상 성장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기업합병은 유력한 기업확장의 수단이 된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산업구조 차원에서의 기업합병은 장기화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기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자유화·개방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국내기업간의 합병뿐만 아니라 해외기업과의 합병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계기업들이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합병을 활용하고 있다.

2. 합병의 유형

합병의 유형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양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겠으나 간단하게 법률적 의미의 합병과 경제적 의미의 합병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경제적 의미의 합병은 상법상의 합병절차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경제적 또는 실질적으로 둘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따라 하나의 회사로 합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적 의미로서의 합병은 둘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특별규정인 합병절차에 따른 계약에 의하여 하나의 회사로 합동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하에서는 합병과 관련하여 법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그 유형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가. 법률적 측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합병은 상법의 절차에 따라 2개 이상의 회사가 그 중 1개의 회사를 제외하고 해산하거나, 전부 해산하면서 제3의 회사를 신설하되, 해산한 회사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된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사원(주주)을 승계하는 법적인 현상이다. 합병의 당사회사 중 일방이 해산하고 타방이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흡수합병이라고 하며, 당사회사 모두가 해산하고 신설된 제3의 회사가 당사회사 전부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신설합병이라고 한다.

1) 흡수합병

흡수합병은 합병 당사회사 가운데 하나의 회사(합병회사)가 존속하여 다른 회사(피합병회사)의 자산·부채 및 사원 모두를 포괄적으로 계승하는 방법이며, 이로 인해 피합병회사가 해산되는 기업결합을 말한다. 이 경우 피합병회사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산하게 되므로 기업의 법적 실체가 소멸하게 된다.

흡수합병의 경우 신설합병에 비하면 합병절차가 간편하고 합병비용과 시간이 절약되므로 합병실무에 있어서 많이 이용되는 형태이다. 우리나라의 기업합병의 대부분은 흡수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인 흡수합병의 경우 지명도가 높고 자본력이 우수한 법인이 합병회사(존속회사)가 되고 반대로 지명도가 낮고 자금력이 높지 않은 법인이 소멸회사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합병당사회사가 의도하는 목적에 따라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합병의 필요성과 합병에 따른 절세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거나 혹은 절세의 목적에서 이루어지는데, 합병에 따른 소멸회사의 경우 누적된 결손금은 법인세법상 결손공제를 받을 수 없는 데 비하여 결손법인이 합병회사(존속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후자인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후자의 범위 내에서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신설합병

신설합병은 합병당사자인 기존회사가 모두 해산하고 동시에 새로운 기업(합병회사)이 신설되며, 합병당사회사의 자산·부채 및 사원 모두를 신설되는 회사에 포괄적으로 계승하는 기업결합의 방법이다.

이 경우 합병당사회사의 법적인 실체는 소멸되고 새로운 법적 실체가 신설된다. 신설합병은 새로이 설립절차를 거쳐야 하고, 합병사무가 복잡하여 합병비용도 많이 소요되며, 법률관계도 복잡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신설합병의 사례는 실무상으로도 매우 드문 방법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법률적 측면의 합병은 상법상으로는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신설합병에 비하여 흡수합병이 실무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편리한 방법이며,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신설합병은 합병당사회사의 각 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등록세 등의 부담이 발생하고, 또한 신주권의 발행·교부도 양 당사회사의 주주 모두에게 하여야 하므로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불리하다. 둘째, 신설합병의 경우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여 양 피합병회사로부터 재산과 영업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관청의 인·허가 등

과 관련하여 기업의 활동이 중단될 염려가 있다. 셋째, 신설합병의 경우 합병당사회사의 상장자격이나 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신설회사가 그대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이 신설된 기업은 반드시 다시 취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신설되는 기업을 기준으로 하여 합병당사회사 모두를 일치시키는 것은 합병당사회사 가운데 일방을 기준으로 하여 타방을 여기에 일치시키는 것보다 훨씬 번거롭기 때문이다,

나. 경제적 측면

합병을 합병당사회사의 경제적 결합관계에 따라 분류하면 수평적 합병(horizontal merger), 수직적 합병(vertical merger) 및 혼합적 합병(conglomerate merger)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수평적 합병

수평적 합병(horizontal merger)이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동일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기업간 합병을 의미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수평적 합병을 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s)로 인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동일업종에서의 경쟁을 배제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수평적 합병은 독점이윤의 담합을 막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많은 나라에서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다⁶³⁾.

한편 기업이 이와 같은 수평적 합병을 추진하는 동기와 관련하여 독점이윤의 추구와 규모의 경제 중에서 어느 요인이 우선하는

6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적인 연구들이 존재하고 있다. 우선 Stigler(1968)는 수평적 합병의 동기로서 독점화를 통한 이윤증대를 중시하였다⁶⁴). 어느 한 산업의 평균비용이 산출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생산기술이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적이므로 기업의 최소효율규모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 또한 당해 산업의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동 산업에 속해있는 모든 기업들은 정산이윤만을 얻게 될 것이며, 이때에는 기업들간의 수평적 합병의 유인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여건을 변화시켜 신규진입기업은 기존기업보다 더 높은 비용하에서 경쟁하게 된다고 가정하자. 만일 기존기업들이 수평적 합병을 통하여 독점화를 시도한다면 자신들의 공급량을 기존 공급량 이하로 줄이고자 할 것이며, 가격은 기존기업의 평균비용보다 진입장벽만큼 더 높은 수준에서 책정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기업들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진입장벽은 매물비용적인 성격의 설비나 개발비용이 요구되는 산업에서 더 높게 나타나므로 그러한 산업에서 기존 기업들간의 수평적 합병에 대한 유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

Stigler(1968)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산업에 있어서 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존하고 있듯이 규모의 경제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수평적 합병의 동기와 효과에 있어서도 독점이윤이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Williamson(1968, 1977)은 수평적 합병이 독점력을 창출하더라도 규모의 경제성이 실현되며, 이로 인한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하여 기본적으로 Stigler(1968)와는 반대되는 견해를 주장하였다⁶⁵). 그는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복점기업들이 합병 전에는 경

64) G.J., Stigler, *The Organization of Industry*, Homewood, Illinois : Richard D. Irwin, 1968.

쟁적 수준의 이익만을 얻게 되지만 합병의 결과로 원가가 감소되는 반면, 가격이 인상되는 이해득실(trade-off)관계를 고려하여 수평적 합병에 따른 규모의 경제실현을 주장하고 있다. 즉 합병당사 회사인 이들 두 기업이 합병을 통해 생산합리화를 통한 원가절감을 이룬 반면, 소비자에게는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후생손실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합병에 따른 순 후생효과는 서로 상반되는 이들 두 가지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비자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합병을 통하여 생산비용이 약간만 저하되더라도 높은 가격상승으로 인한 후생저하 효과를 상쇄하기에 충분하며, 이에 따라 합병기업은 수평적 합병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수직적 합병

수직적 합병(vertical merger)이란 원재료의 생산·공급에서부터 제품의 생산·수송·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수직적 흐름에 있는 기업들, 즉 공급자와 수요자(예: 철판과 자동차) 간의 합병을 의미한다. 수직적 합병의 동기 및 효과에 관한 논의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수없이 계속되어 왔으며, 이를 일목요연하게 종합하여 정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⁶⁶⁾. 그러나 현재까지 경제학에서 진행되

65) O.E. Williamson, "Economies as an Anti-Trust Defense: The Welfare Trade-off",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68.
O.E. Williamson, "Economies as an Antitrust Defense Revisited", A.P. Jacquemin, and H.W. Jong de, *Welfare Aspects of Industrial Markets*, Leiden: Martinus Nijhoff, 1977.

66) 수직적 합병의 동기와 효과에 관한 제반 학설의 개관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D.l. Kaserman, "Theories of Vertical Integration: Implication for

어 온 수직적 합병의 일반적 흐름을 개관하면, 수직적 생산단계간의 기술적 상호의존성(technological interdependencies)이 존재하는 경우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일관생산의 흐름 속에서 시차의 지장이 없도록 하거나 또는 적어도 통일된 계획과 경영을 위하여 수직적 합병을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론적으로 볼 때 기술 그 자체가 수직적 합병을 필요로 하지 않고 모든 거래가 시장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위한 정보와 통제가 충분하게 공급될 수 없으며, 가격이 외부효과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정 생산단계에 비경쟁적 시장구조가 형성된다면 여기에서 경쟁적 성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수직적 합병은 시장에서 내재하는 불완전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Arrow(1975)는 투입물 공급가격에 있어서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최종재 생산기업의 정보필요성이 수직적 합병의 유인이 되며, 이 유인 때문에 원초적으로 경쟁적인 시장도 불완전경쟁의 구조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⁶⁷⁾. 즉 최종재생산기업은 투입물의 효율적 결합을 통한 비용절감을 위하여 원료공급기업을 결합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에 의하면 수직적 합병이란 필요한 시점에서 투입물들의 상대가격에 관한 예측적 정보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합병의 유인은 가격정보를 구입할 수 있는 별개의 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원료에 대한 선물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때

Antitrust Policy” , *Antitrust Bulletin*, Fall 1978.

F.R. Werren-Boulton, *Vertical Control of Markets, Business and Labor Practices*, Cambridge, Mass.: Ballinger, 1978.

67) K.J. Arrow, “Vertical Integration and Communications” , *Bell Journal of Economics*, Spring 1975.

더욱 크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한편 Bernhardt(1977)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본 수요가변성(demand variability)을 줄이기 위한 시도로서 수직적 합병의 유인을 설명하고 있다⁶⁸⁾. 수요가변성은 비용을 초래하는데 이 비용의 성격은 수요변동에 대응하여 공급자가 취하는 행동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예컨대 공급자는 수요변동이 판매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격이나 기타 판매조건을 조정하거나, 또는 재고·주문에 대응한 공급·생산율 등의 조정을 통하여 가격변화 없이 판매량 변화로 적응하지만 어느 경우든 비용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공급자는 시장점유율이 큰 구매자와의 수직적 결합을 통하여 개별시장에서의 수요의 가변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Carlton(1979)은 최종재 시장에서의 수요의 불확실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이것이 투입물 시장에 전파되는 효과에 초점을 두고 수직적 합병의 유인을 분석한 바 있다⁶⁹⁾. 최종재 생산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직면하는 수요가 확률적이라면 이들의 투입물에 대한 유발수요도 확률적이므로 각각의 투입물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도 확률적으로 된다. 그리고 최종재의 수요를 알기 전에 투입물의 필요량을 결정해야 하므로 생산된 투입물이 시장기간 말까지 사용되지 않을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매기간 중 최종재기업은 수요가 확률적으로 발생할 때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우선은 투입물의 재고를 사용하지만 결국은 투입물 기업으로부터 필요한 투입물을 조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투

68) I. Bernhardt, "Vertical Integration and Demand Variability",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March 1977.

69) D.W. Carlton, "Vertical Integration in Competitive Markets Under Uncertainty",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March 1979.

입물 시장에서의 투입물 가격은 투입물 생산비는 물론 투입물이 팔리지 않을 평균적 확률도 반영하게 된다. 최종재기업이 스스로 투입물을 생산한다면 이 확률에 따른 비용만큼은 절약할 수 있겠지만 최종재의 수요가 부족하면 생산된 투입물이 사용되지 않을 위험을 스스로 안게 된다. 따라서 최종재기업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면서 이윤을 증대하기 위하여 고확률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만 자체생산한 투입물을 사용하고 저확률 수요에 대해서는 투입물 시장에서 투입물을 구매하면 되므로 수직적 합병의 유인을 갖게 되는 것이다.

3) 혼합적 합병

혼합적 합병(conglomerate merger)은 서로 관련없는 형태의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간의 합병을 말한다. 즉 생산이나 판매 면에서 상호 관련성이 전혀 없거나 업종이 상이한 이종시장 내에 있는 기업간에 이루어지는 합병형태를 말한다.

기업합병의 동기 및 기업내적효과에 관한 경제학적 논의는 각국의 조세제도, 금융제도, 자본시장, 소유분산제도 및 기업제도 등에 따라 관심의 대상이 다르지만 혼합적 합병의 이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기업 내의 여러 활동간의 기술적·기능적 연관성에 기초한 공동효과(synergy effect)이며 기업자원의 각 부문이 가지는 상호보완성이 강화되어 나타나게 된다는 점이다⁷⁰⁾.

경영관리의 공동효과로는 비효율적으로 경영되는 기업을 합병함으로써 새로운 경영조직·기법·인력의 투입을 통해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연구개발투자 측면에서 합병기업은

70) 윤창호·이규익 『산업조직론』, 법문사, 1994, pp. 216~218.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므로 연구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대하지 않았던 부문의 혁신, 기존연구의 광범위한 활용, 한 분야 연구결과가 타분야에 주는 과급효과 등의 경제성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공동효과는 기업이 갖는 조직체로서의 성격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합병기업 내부의 제품간 생산관련성이 적은 순수형태에 있어서는 기술적 공동효과도 작게 나타난다. 물론 기술적 관련성이 크다면 원료 구입비의 절약이나 시설이용률 증가 면에서 경제성을 갖는다. 특히 산출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원료를 획득하고 이것을 보관·저장하거나 기업간 유통시킬 때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혼합적 합병기업은 단일제품기업에 비하여 원료의 구입량과 사용량의 차이로 인한 비용을 회피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

투입물 이용의 효율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효과로는 잉여능력의 활용을 들 수가 있다. 기업은 여러 가지 활동의 결집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활동간에는 항상 균형이 달성되지 않으므로 기업은 특정활동에 관하여 잉여능력(예: 유휴시설, 잉여경영능력, 잉여자금)을 보유하게 되며,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또한 유사한 관점에서 혼합적 합병기업은 비효율적이거나 비생산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이로 인한 유휴노동력과 자본을 좀더 생산적인 용도로 전용함에 있어서 단일제품기업보다 유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잉여능력의 활용은 기업의 성장에 중요한 수단이 되며, 그만큼 혼합형 합병기업은 기업성장의 동기화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한편 혼합형 합병기업은 사업분야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경기변동이나 수요변화에 따른 이윤저하 내지 손실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 효과는 사업분야간의 관련성이 적을수록 크게 될 것이다. 즉 혼합적 합병기업은 그 사업분야를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

하는 단일제품기업의 집합에 비하여 위험이 작으므로 자본시장에서는 기업의 장래기대수익흐름을 할인함에 있어서 혼합적 합병기업의 위험프리미엄(risk premium)을 상대적으로 낮게 부과한다. 따라서 혼합형 합병기업은 단일제품기업보다 더 낮은 이자율로 더 많은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혼합형 합병기업은 내부금융의 이점도 갖고 있다. 기업은 새로운 제품의 개발·생산을 위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이 활동은 개별기업만이 갖는 전유적 정보(proprietary information)를 내포한다. 외부금융에 의존할 때에는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지만 혼합적 합병기업은 이를 공개하지 않고서도 내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사업분야로부터 자본을 조달할 수가 있게 된다.

3. 합병의 동기에 관한 제이론

기업의 가치 증대와 성장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합병은 대부분 그 동기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의 전략적 이유에 기인한다. 기업이 합병을 고려하는 구체적인 동기는 크게 경영전략적 동기, 영업적 동기, 재무적 동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제 이하에서는 합병과 관련한 이들 동기에 관하여 좀더 자세히 고찰하기로 한다.

가. 경영전략적 동기

합병의 동기 중에서 경영전략적 동기는 다시 조직성장의 지속적 유지, 국제화를 위한 경영전략, 연구개발의 효율성 증대, 저평가기업의 활용 등의 세부적인 동기들로 나누어진다.

1) 조직성장의 지속적 유지

시간을 다투는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개발을 위해서 기업의 내부자원만을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신규사업이나 유망업종에 진출하는 내적 성장전략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타기업과의 결합을 통하여 기업의 외부자원을 직접 합병하는 외적 성장전략을 추구하게 된다. 합병을 통한 외적 성장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경쟁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또한 영구적 존재(going concern)로서의 기업은 달라지 않으면 쓰러지는 자전거와 같아서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적 동기에서 합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⁷¹⁾.

2) 국제화를 위한 경영전략

합병은 기업의 경영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경영전략적 동기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역마찰 및 경영불안 등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고려된다. 우선 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수익성이 없는 사업부문을 처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익성은 있지만 장래에 불리한 영업환경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미리 적정가격으로 기업을 매각함으로써 기업의 주력업종에 전력을 다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최근의 기업경영환경은 이른바 국경이 없는 세계화시대로

71) J.M. Morris, *Mergers and Acquisitions: Business Strategies for Accountants*, John Wiley & Sons, Inc., 1995, p. 3.

집어들고 있다. 이와 같은 경영환경하에서 해외거점을 마련하고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합병을 통해 현지기업을 인수하면 해외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환율변동에 따른 경영불안을 피하기 위해서도 현지기업을 합병하는 전략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합병은 해외현지법인이나 합작투자보다 공장 건설, 인재양성, 시장개척 등에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축소한다는 장점이 있다.

3) 연구개발을 위한 효율성 증대

기술개발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이익을 실현하기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된다. 따라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합병이 고려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한 합병의 경우에는 이미 필요한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나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 특히 일반적인 중급수준의 기술이 아닌 첨단기술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처음부터 시작하기보다는 기존의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합병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4) 저평가기업의 활용

기업들 중에는 경영자의 무능으로 인하여 업계의 평균보다 낮은 이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나 활용 가능한 한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직의 비효율성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그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익을 올리지 못하는

기업, 증권시장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자산 및 영업능력이 저평가된 기업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을 이용할 수 있는 경영 및 조직능력을 갖춘 기업은 합병을 통하여 새로운 경영전략이나 재무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합병 전 저평가된 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나. 영업적 동기

합병을 시도하는 영업적 동기는 주로 시장참여시간 단축과 신규 시장 참여시의 마찰회피, 규모의 경제 달성과 시장지배력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다.

1) 시장참여시간의 단축

기술개발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제품의 수명도 단축됨에 따라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이 때 신규투자나 자체적인 기술개발로 시장에 참여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소모되게 되며, 시간 또한 오래 걸리게 된다. 그러나 기술이나 유통망, 전문인력 등을 보유한 기업을 합병하여 시장에 참여하게 된다면 신규투자에 의한 시장참여보다 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비용면에서 신규투자에 의한 시장참여보다 낮은 비용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규사업이나 시장에 진출할 때 기존기업에 의한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합병에 의한 시장참여는 다른 기존의 참여기업과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2)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실현

동종 기업간의 합병으로 생산판매의 규모가 대형화되면 원료구입비, 재고관리비, 유통판매비, 고정생산비 등 각종 비용의 감소를 가져오는 규모의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다. 즉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투입요소를 늘였을 때 투입요소의 증가분보다 산출물의 증가분이 더 커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규모의 경제효과가 실현되는 이유는 대형거래의 원리, 대량예비의 원리, 최소공배수의 원리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형거래의 원리는 소량을 다루는 단위원가와 대량을 다루는 단위원가는 동일하거나 적어도 취급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으므로 고정비를 포함한 단위당 총원가는 거래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체감된다는 것이다.

대량예비의 원리는 기업은 그 수요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원의 비축이 필요하다는 원리이다. 예비인원, 예비생산능력, 제품재고 등을 보유하는 것은 불규칙한 수요변동에 대비하여 기업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소공배수의 원리는 공정을 분할하는 데 가장 유리한 수를 알고, 사용되는 인원수가 확정되면 이 수들의 최소공배수만큼 생산하지 않으면 생산비가 높아진다는 원리이다.

이와 같은 규모의 경제효과는 합병을 촉진시키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로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의 합병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규모가 너무 비대해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규모의 불경제(diseconomies of scale)가 나타나기도 한다.

3) 시장지배력의 증대

합병을 통해 기업규모가 대형화되거나 경영자원 이용의 집중도가 커지면 시장점유율이 확대되고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증대되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와 같은 효과는 수평적 합병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합병을 통한 기업규모의 증대는 생산, 판매, 연구개발, 일반관리 등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합병을 통한 시장점유율의 증대는 보다 효과적인 광고효과를 얻거나 합병한 기업이 합병 이전의 유통구조의 취약점을 보완하거나 제품의 다양성을 피함으로써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합병은 시장에서 많은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시장에서 독과점을 형성하여 경쟁을 제한시키고 독점적 이윤을 확보하려 하거나 경쟁업체를 축출하려고 하는 동기에서 추진되는 경우는 시장의 경쟁윤리와 산업조직을 붕괴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각 국가별로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법규로 이를 제한하고 있다.

다. 재무적 동기

재무적 동기는 크게 위험분산의 효과, 자금조달능력의 확대, 조세절감 등을 들 수 있다.

1) 위험분산 효과

투자시에 한 곳에 집중투자를 하는 것보다 두 곳 이상으로 나누어 투자하는 경우 수익률 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분산으

로써 측정될 수 있는 위험은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 경영학적 포트폴리오(portfolio)이론이다. 이러한 분산투자를 통한 위험절감 효과는 합병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두 기업의 현금흐름간 상관관계가 1 보다 작은 경우에는 합병이 이루어지면 현금흐름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어 총위험은 작아질 수 있다. 즉 합병을 통해 현금흐름상의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위험분산 효과는 수평적 합병이나 수직적 합병보다는 혼합적 합병의 경우에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된다.

또한 합병을 완료한 후에 파산할 가능성은 합병을 시도하기 이전의 개별기업 전부의 파산가능성을 다 합한 것보다 작아지는 공동보험(co-insurance)의 효과를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현금흐름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합병을 시도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계절성이 강한 기업이거나 현금흐름이 불규칙한 기업의 경우에 이러한 합병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된다.

2) 자금조달 능력의 확대

합병을 통해 기업규모가 커지고 위험분산 효과에 의해 파산 위험이 줄어들면 이에 따라 자금조달의 능력이 확대된다. 일반적으로 인수되는 대부분의 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소규모의 비공개법인이 많으며 이 기업들은 자본시장에서의 장기 자금보다는 자기자본이나 은행의 단기차입 등에 의존하게 된다. 또 이들 기업은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 은행차입, 개인사채 등에의 과도한 의존으로 부도발생의 위험이 커진다.

그 결과 이러한 기업들은 좋은 기술을 보유하거나 잠재력이 충분한 사업부문을 갖고 있더라도 자금조달의 한계로 인하여 충분한

성과를 올릴 수 없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합병을 시도한다면 자금조달이 원활해져 경영상태 또한 호전될 것이다. 특히 합병 후에는 부채비율을 낮추고 경영정상화를 이룩하게 되면 기업가치가 증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식가격도 상승하게 될 것이므로 투자자에게도 많은 이득이 배당될 것이다.

3) 조세절감

조세구조의 특징 즉, 배당소득세율, 자본소득세율, 상속세율, 이월결손금의 상계인정여부 등에 따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유리한 수단으로 합병이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장법인의 창업주는 기업의 상속과 관련하여 배당소득세율과 상속세율 사이의 차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합병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 타 기업에 흡수합병되고, 후에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상속하는 경우보다 더 이로우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월결손금의 승계인정도 합병의 주요 동기가 될 수 있다. 즉,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세법상 인정된다면 이익이 큰 기업은 이월결손금이 많은 기업을 합병함으로써 법인세를 절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업합병의 세금절감 효과와 관련하여 Gilson, Scholes & Wolfson(1988)은 기업합병은 순수한 세금효과를 가져오며, 조세제도가 기업합병을 촉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세금이익은 기업합병을 통하여 가장 많이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세문제가 기업합병 활동의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요가 된다고 주장하였다⁷²⁾. 결국 기업합병의 동기에 있어서 세금절감

72) R.L. Gilson, M.S. Scholes and M.A. Wolfson, "Taxation and the Dynamics of Corporate Control: the Uncertain Case for Tax Motivated Acquisitions", in J.O. Coffee, Jr. L. Lowenstein and

효과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조세목적을 위하여 합병하는 경우 그 내면상 동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가) 이월결손금을 이용한 조세절감 효과

이월결손금이 누적되어 있는 법인과의 합병을 통하여 세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세부담 감소는 경상이익에 대한 세부담 뿐만 아니라 기타 다양한 종류의 세부담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다. 우선 합병법인에 누적적인 이월결손금이 있고 피합병법인은 이에 상응하는 이익이 있는 경우 이들 법인간에 합병을 하게 되면 후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 등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고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많은 조세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 계열기업의 결손법인과 합병을 하게 되면 이러한 조세를 절감할 수 있고 심지어 아무런 관계가 없는 법인과도 합병을 하고 이로 인하여 절약된 조세부분에 대하여 비공식 결제방법으로 조세를 감소시킬 수 있다.

부실자산이나 가공자산을 승계함으로써 세금절감을 꾀할 수도 있다. 장부상 수치에 불과한 부실자산이나 가공자산을 후자법인이 1:1의 합병비율로 위장하여 흡수합병을 하고 합병 후에 이들 부실자산이나 가공자산을 손비로 계상하면 후자법인은 조세를 절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악성채무의 전가에 의해서도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자본주 개인이 보증한 경우 채무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자본주 개인의 재산으로 변제해야 한다. 이러한 채

S.R. Ackerman(eds.), *The Impact of the Hostile Takeover*,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무를 전가시키기 위하여 다른 계열법인과의 합병을 통해 그 법인으로 하여금 채무와 이에 따른 부담을 인수하도록 한다.

나) 차입금과 주식의 과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절감 효과
합병을 통하여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보험차원에서 차입금 확보가 유리해지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의 과세제도가 주식자본보다 차입금에 유리한 상황에서 합병을 통한 조세절감이 가능해진다.

다) 기업의 합병 및 인수시 유리한 감가상각규정을 이용한 조세절감 효과
회사가 합병되거나 인수될 때 기존의 자산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유리한 감가상각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감가상각제도가 반드시 합병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피합병기업의 고정자산에 대한 등록세가 오히려 합병당사기업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라) 주주에게 이익분배시 기업인수를 통한 세부담 경감
이익배당보다 자본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낮은 경우 많은 기업이 배당보다 다른 방법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시키는 방법을 동원하는데 기업이윤으로 자사주를 재구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기업을 인수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마) 증여세·상속세의 면탈
합병법인의 순자산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비율이 10 : 1이고 합병법인의 대주주는 부이고 피합병법인의 대주주는 자인 경우 이들 법인이 1 : 1의 비율로 합병을 하게 되면 실질적 합병비율과 실행

한 합병비율과의 차액은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이 없거나 낮은 경우 증여나 상속의 효과가 있다.

한편 위에서 열거된 합병으로 인한 과세절감 효과때문에 기업이 기업합리화 목적이 아닌 단순히 과세절감 효과를 노려서 합병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합병차익(피합병기업의 순자산가치에서 합병신주교부금을 공제한 차익) 및 차손에 대하여는 법인세 적용을 유예하고 청산소득(합병대가-순자산가치)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부과시키고 있다. 이 경우 합병이 주는 조세제도상의 유인은 그리 크지 않다.

<부록 II> 우리나라의 기업합병 현황

1. 우리나라 기업의 합병 추이

가. 기업결합 추이

우리나라에서의 기업합병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기업합병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외국인에 의한 국내기업의 인수에 대한 제한규정으로 인하여 기업합병의 실적은 저조한 편이었다. 더욱이 대부분의 국내기업 합병은 계열기업의 조정이나 정부의 산업합리화조치 및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경영권 양도의 성격이 강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기업결합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기업합병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국제화와 개방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업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기업합병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정착되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기업의 입장에서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합병을 이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1997년의 경제위기 이후 국내기업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기업들에 의한 합병이 크게 증가한 것도 최근의 전반적인 기업합병의 증가추이를 설명하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부표 II-1>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집계한 우리나라의 기업결합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⁷³⁾. 총기업결합건수는 1980년대의 경우 매년 200건 내외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⁷⁴⁾ 1990년대 초반에는 완만한 감소추이를 나타내었고 1994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94년의 경우 총기업결합건수는 195건으로 전년대비 58.5%의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1995년에도 66.7%, 1996년에는 20.9%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나타내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이와 같은 기업결합의 급증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세계화와 개방화가 크게 진행됨에 따라 경쟁의 심화에 따른 경영효율의 증대수단으로 기업의 인수·합병 등을 이용하

<부표 II-1> 우리나라 기업결합 추이

(단위: 건, %)

	81~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누계
기업결합 건수 (A)	2,003	154	149	123	195	325	393	418	486	557	703	5,506
(증가율)	-	-1.9	-3.2	-17.4	58.5	66.7	20.9	6.4	16.3	14.6	26.2	-
계열 (B)	958	58	69	74	74	52	137	123	196	189	152	2,082
비계열	1,045	96	80	49	121	273	256	295	290	368	551	3,424
(B)/(A)	47.8	37.7	46.3	60.1	37.9	15.4	34.9	29.4	40.3	33.9	21.6	37.8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01 공정거래백서』; 『2000년도 기업결합 동향분석』, 2001.

73) 기업결합은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서 협의의 개념인 상법상 합병뿐만 아니라 주식취득, 영업양수, 임원겸임, 회사신설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광의의 개념인 기업결합 추이에 대한 고찰을 우선적으로 하고, 아래의 수단별 합병현황을 고찰하면서 협의의 개념인 상법상의 합병추이에 대하여 별도로 설명하기로 한다.

74) 공정거래위원회가 집계한 1980년대 기업결합건수를 살펴보면, 1981년 148건, 1983년 210건, 1985년 173건, 1987년 216건, 1989년 193건, 1990년 157건 등으로 1980년 후반부터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기업결합의 증가추세는 1997년을 기점으로 다소 안정되었으나 경제위기 이후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총기업결합건수는 1998년 486건, 1999년 557건, 그리고 2000년 703건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결합을 통한 국내기업들의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외국기업에 의한 M&A형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표 II-3> 참조).

한편 2000년 말까지 총기업결합건수는 5,506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계열기업간 기업결합은 2,082건으로 전체 건수의 37.8%에 이르고 있다. 이는 1980년대 전체 기업결합건수의 47.8%에 이르던 계열기업간 결합건수에 비하여 그 비중이 상당히 낮아져 기업결합의 형태가 점차 비계열간 기업결합의 형태로 전환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 들어서 1993년의 계열기업간 결합비중이 60.1%를 차지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비계열간 기업결합이 다수를 차지하여 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위기 이후에는 비계열간 기업결합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살필 수 있다.

나. 대규모기업집단의 결합 추이

국내 대규모기업집단의 결합현황도 전반적인 기업결합의 추이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1990년대 전체적인 기업결합의 증가추세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의 결합추이 역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93년에 39건에 불과하던 대규모기업집단의 기업결합건수는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6년의 경우 110건을 넘어섰으며, 2000년에는 1991년부터 1994년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기

업결합건수보다 많은 237건을 기록하였다.

한편 1981년부터 2000년까지 총기업결합건수에서 차지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결합건수의 비중은 38.4%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49.4%의 비중을 차지하여 약 절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건수가 대규모기업집단을 중심으로 발생하였던 것과는 달리 1990년대에는 크게 줄어들어 1996년 28.0%, 1998년 28.2%를 각각 기록하였고 2000년에는 33.7%를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대규모기업집단 이외의 기업들에 의한 기업결합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부표 II-2> 대규모기업집단의 기업결합 추이

(단위: 건, %)

	81~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누계
총기업결합건수(A)	2,003	154	149	123	195	325	393	418	486	557	703	5,506
대규모기업집단기업결합건수(B)	989	66	64	39	65	82	110	155	137	168	237	2,112
계열	515	31	28	23	45	19	38	44	73	68	67	951
비계열	474	35	36	16	20	63	72	111	64	100	170	1,161
(B)/(A)	49.4	42.9	43.0	31.7	33.3	25.2	28.0	37.1	28.2	30.2	33.7	38.4

주: 대규모기업집단의 수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내용을 기준으로 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01 공정거래백서』; 「2000년도 기업결합동향 분석」, 2001.

더구나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기업 정리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기업결합의 비중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991년의 경우 66건에 달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기업결합건수 중에서 계

열기업의 결합건수는 31건으로 약 47%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00년에는 전체 237건 중에서 계열기업간 결합이 67건에 불과하여 28.3%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998년의 경우에는 전체 137건의 대규모기업집단 기업결합건수 중에서 계열기업간 결합이 73건에 이르러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경제위기 이후 각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집단 내의 한계사업정리 등 기업의 자구노력이 강화되고 계열사 수의 증가를 위한 노력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추이

1990년대 전반적으로 정체상태에 있던 외국기업의 국내투자가 경제위기 이후 급증하게 됨에 따라 외국기업들에 의한 국내기업의 기업결합건수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아래의 <부표 II-3>에서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외국기업들에 의한 기업결합건수를 제시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발생하였던 1997년의 경우 외국기업들에 의한 기업결합건수는 19건에 그치고 있어 총기업결합건수의 4.5%에 불과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급증하여 1998년에는 132건으로 총기업결합건수 대비 27.2%의 비중을 나타내었다. 1998년의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경제위기 이후 기업들의 외자도입을 위한 노력이 대폭 강화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서, 그 결과 외자도입 규모는 전년도의 8억 달러에서 74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1999년에도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더욱 크게 증가한 168건으로 나타났으며, 총기업결합건수 대비 비중은 30.2%로 높아졌다. 1999년 중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건수의 증가는 경제위기 이후 국내기업의 가치하락에도 기인하지만 전반적인 경제의 신인

<부표 II-3>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추이

(단위: 건, 억달러, %)

	1997	1998	1999	2000
총기업결합건수(A)	418	486	557	703
외국기업 결합건수(B)	19	132	168	114
외자규모	8	74	87	25
(B)/(A)	4.5	27.2	30.2	16.2

주: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통계는 산업자원부의 외국인투자통계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상이함. ① 기업결합신고는 기업결합 일방 당사자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② 20%미만(상장기업의 경우 15%)의 주식취득은 신고대상이 아니며, ③ 회사설립의 경우 최초설립시의 자본금(5천만원)만 신고하는 경우가 많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각호.

도 제고로 인하여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외자의 규모도 전년대비 17.6% 증가한 87억 달러를 나타내었다.

한편 2000년 중의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114건으로 총기업결합건수 대비 비중도 16.2%로 하락하였을 뿐 아니라 외자규모는 25억 달러를 나타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업결합건수 및 외자규모의 감소가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감소에 따른 것은 아니다. 즉 2000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는 157억 달러로서 사상 최대를 나타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2000년부터 외국인 투자의 대부분이 기업결합 이외의 수단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의 건수 및 외자규모가 축소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우리나라 기업의 합병현황

앞에서의 고찰결과 우리나라의 기업결합 추이는 1990년대 초반에 위축되기도 하였으나 1994년 이후부터 증가하는 양상을 띠었으며, 특히 1997년의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과 외국기업의 투자증대에 따라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하에서는 좀더 깊이있는 고찰을 위하여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유형별·수단별·업종별 기업결합 추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유형별 합병현황

기업결합의 유형에는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간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수평적 결합과 원재료 수급관계에 있는 기업간의 결합인 수직적 결합, 그리고 이들 수평적 결합이나 수직적 결합에 해당하지 않는 형태인 혼합적 결합의 형태가 있다.

1990년대 우리나라의 기업결합 추이를 이와 같은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혼합적 결합의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초반인 1992년 및 1993년의 경우에는 총 기업결합건수에서 혼합적 결합의 비중이 각각 48.3%와 43.1%를 차지하여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이후부터 급속하게 증가하여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의 경우에는 혼합적 결합의 비중이 무려 82.9%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수평적 결합과 수직적 결합건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1999년 이후부터 급속도로 위축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1995년의 경우 224건으로 총기업결합건수 대비 68.9%에 이르렀던 혼합적 결합은 그 이후부터 점차 감소하여 1998년에는 당해 연도 총기업결합건수 대비 42.6%, 207건으로 나타나 절대적인

감소를 보인 반면 수평적 결합은 172건, 35.4%의 비중을 나타내 크게 증가하는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1998년도의 기업결합 유형의 변화는 기업들이 경제위기 이후 문어발식 타업종에 대한 신규진출보다는 관련업종간 기업결합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에 치중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표 II-4> 유형별 기업결합 추이(1992~2000)

(단위: 건,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수평 결합	39 (26.2)	36 (29.3)	40 (20.5)	58 (17.9)	75 (19.1)	78 (18.7)	172 (35.4)	150 (26.9)	83 (11.8)
수직 결합	38 (25.5)	34 (27.6)	24 (12.3)	43 (13.2)	70 (17.8)	80 (19.1)	107 (22.0)	75 (13.5)	37 (5.3)
혼합 결합	72 (48.3)	53 (43.1)	131 (67.2)	224 (68.9)	248 (63.1)	260 (62.2)	207 (42.6)	332 (59.6)	583 (82.9)
합계	149 (100.0)	123 (100.0)	195 (100.0)	325 (100.0)	393 (100.0)	418 (100.0)	486 (100.0)	557 (100.0)	703 (100.0)

주: ()안은 총 기업결합건수 대비 비중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각호.

그러나 1999년부터는 수평적 결합과 수직적 결합의 건수가 크게 감소하고 혼합형 기업결합의 건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이미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999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향상에 따라 외국기업들의 국내진출이 대부분 혼합형 결합으로 나타난 것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기존 대기업들의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신규진출이 증가한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2000년의 경우에 전체 703건의 기업결합건수 중에서 혼합형 결합건수는 무려 583건으로 82.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평적 결합건수는 83건으로 11.8%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수직적 결합건수는 불과 37건으로 5.3%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나. 수단별 합병현황

기업결합의 수단에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게 되는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및 영업양수, 그리고 신설되는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인수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회사설립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있다. 1990년대 우리나라 기업들의 결합현황을 이와 같은 수단별로 나누어보면 <부표 II-5>와 같다.

<부표 II-5> 수단별 기업결합 추이(1992~2000)

(단위: 건,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주식취득	34 (22.8)	29 (23.6)	77 (39.5)	142 (43.7)	159 (40.5)	130 (31.1)	92 (18.9)	146 (26.2)	268 (38.1)
임원겸임	2 (1.3)	2 (1.6)	2 (1.0)	4 (1.2)	16 (4.0)	27 (6.5)	32 (6.6)	42 (7.5)	104 (14.8)
합 병	62 (41.6)	55 (44.7)	48 (24.6)	48 (14.8)	63 (16.0)	75 (17.8)	151 (31.1)	145 (26.0)	68 (9.7)
영업양수	12 (8.1)	13 (10.6)	13 (6.7)	10 (3.1)	25 (6.4)	23 (5.5)	81 (16.7)	111 (19.9)	84 (11.9)
회사신설	39 (26.2)	24 (19.5)	55 (28.2)	121 (37.2)	130 (33.1)	163 (39.0)	130 (26.7)	113 (20.3)	179 (25.5)
합 계	149 (100.0)	123 (100.0)	195 (100.0)	325 (100.0)	393 (100.0)	418 (100.0)	486 (100.0)	557 (100.0)	703 (100.0)

주: ()안은 총 기업결합건수 대비 비중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각호.

기업결합의 수단별로 본다면 1990년대 전반적으로 회사신설과

주식취득을 통한 기업결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2년의 경우 149건의 기업결합에서 34건으로 22.8%의 비중을 차지하였던 주식취득은 그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여 1995년의 경우는 43.7%의 비중을 차지하는 142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경제위기 이후에도 1998년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회사신설의 경우도 1995년의 경우 전체 325건의 기업결합 중 121건으로 주식취득 다음으로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어 1997년에는 전체 418건 중에서 163건으로 39.0%의 비중을 차지해 당해 연도 기업결합건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상대적으로 전체 기업결합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간 감소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999년 4월 이후부터 단독회사 신설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그 추이가 감소된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순수한 기업합병은 1992년과 1993년에 각각 41.6%와 44.7%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양수도 1998년의 경우 16.7%의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인 빈도 면에서 낮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미 앞에서의 고찰에서도 인지할 수 있지만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상황은 기업결합시장의 경우에도 매우 이례적이고도 특징적인 양상을 나타내 주고 있다. 우선 1998년의 경우 그동안 낮은 빈도를 나타내었던 합병과 영업양수의 발생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계사업정리를 위하여 합병이나 영업양수를 활용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99년의 경우에는 주식취득이나 영업양수의 비중이 높아진 반

면 합병의 비중은 다시 낮아지기 시작하였고 2000년의 경우 68건의 합병이 발생하여 9.7%의 비중을 나타내 절대적인 측면과 상대적인 비중도 크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1999년의 경우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주식취득, 영업양수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거나 관련업종을 위한 기업결합이 빈번히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1999년 이후 인터넷, 정보통신 등 정보기술산업의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벤처기업 등에 기존의 오프라인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주식취득의 방법을 선호하게 됨에 따라 2000년의 경우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건수는 268건으로 전체 703건 중 38.1%의 높은 비중을 나타내 당해 연도에 있어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였던 기업결합의 수단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 업종별 기업결합 추이

기업결합신고건수를 업종별로 분류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제조업부문이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기업결합 신고대상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이 제조업부문에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기타산업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정보통신·방송산업의 호황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이 분야에 진출함에 따라 이 부문에서의 기업결합건수도 1994년 이후부터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기업결합시장의 이례적인 모습은 업종별 기업결합추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1998년의 경우 제조업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동 업종의 기업결합건수가 257건으로 52.9%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이후부터 제조업부문의 기업결합건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부표 II-6> 업종별 기업결합 추이(1992~2000)

(단위: 건,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제 조 업	97 (65.1)	89 (72.4)	97 (49.7)	139 (42.2)	160 (40.2)	144 (34.4)	257 (52.9)	249 (44.7)	191 (27.2)
건 설 업	13 (8.7)	11 (8.9)	26 (13.3)	20 (6.1)	37 (9.3)	25 (6.0)	19 (3.9)	23 (4.1)	14 (2.0)
도·소매업	12 (8.1)	11 (8.9)	35 (17.9)	29 (8.8)	37 (9.3)	56 (13.4)	61 (12.6)	51 (9.2)	44 (6.3)
음식숙박업	9 (6.0)	- (0.0)	1 (0.5)	4 (1.2)	6 (1.5)	3 (0.7)	4 (0.8)	12 (2.1)	6 (0.1)
운수창고업	5 (3.4)	5 (4.1)	8 (4.1)	19 (5.9)	12 (3.0)	37 (8.9)	17 (3.5)	16 (2.9)	26 (3.7)
기 타	13 (8.7)	7 (5.7)	28 (14.5)	118 (35.8)	146 (36.7)	153 (36.6)	128 (26.3)	206 (37.0)	422 (60.0)
합 계	149 (100.0)	123 (100.0)	195 (100.0)	325 (100.0)	393 (100.0)	418 (100.0)	486 (100.0)	557 (100.0)	703 (100.0)

주: ()안은 총 기업결합건수 대비 비중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각호.

반면에 정보통신 및 방송산업, 금융산업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타산업부문에서의 기업결합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의 경우 422건의 기업결합으로 60.0%의 압도적인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1999년의 경우 기타산업에서 발생한 206건의 기업결합 중에서 금융 및 정보통신, 방송산업부문의 기업결합 건수는 123건에 이르고 있으며, 2000년의 경우에는 422건의 기타산업부문 기업결합 중에서 무려 347건인 것으로 나타나 기타산업의 기업결합이 급증한 것이 이들 분야의 빈번한 기업결합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⁷⁵⁾.

그 외에 20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도·소매업이 44건의 기업결

75) 공정거래위원회, 「2000년도 기업결합동향분석」, 2001. 3.

함으로 전체 703건 중에서 6.3%의 비중을 나타내 기타산업 및 제조업 다음으로 많은 기업결합이 발생하였으나 건설업은 1990년대 후반부터 기업결합건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14건, 2.0%에 불과하다. 음식숙박업은 전반적으로 기업결합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수창고업은 26건의 기업결합으로 건설업보다 높은 3.7%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국문요약>

합병관련 기업회계와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김진수 · 황국재

합병관련 회계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회계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동일한 회계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업활동의 경제적 실질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양 회계를 어느 정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합병의 경우에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괴리가 근본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세무회계에서는 합병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가능한 한 합병으로 인한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무회계처리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가 합병관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정을 어렵게 한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본 보고서에서는 합병관련 기업회계와 과세제도의 개선방향을 별도로 모색하고 있다. 본 보고서 제1부에서 주장하는 제안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분통합법의 폐지이다. 이는 미국에서 2001년 중반 공포된 회계원칙에서도 제안된 것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객관적인 제3자들에 의한 합병이 아닌 특수관계자들에 의한 합병이 주를 이루는 경우 특히 남용의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기타의 개선안으로는 매수법 사용의 경우 매수일 정의의 명료화, 취득한 무형자산의 인식기준 마련,

영업권 상각 및 평가의 구체화, 부의 영업권 회계처리 개선, 연속적인 주식 취득의 회계처리 개선,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간의 지분교환 등에 대한 회계처리 제시 등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 제2부에서는 현행 합병세제를 비과세 합병과 과세 합병을 구분하여 논리적으로 일관된 회계처리가 적용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비과세 합병의 요건을 보다 강화하여 이를 충족하는 합병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지분의 계속성을 기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법인의 조직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분통합법을 적용함으로써 과세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일반 합병에 대해서는 합병의 본질을 현물출자로 보고 일반적인 순자산의 일괄취득에 관한 회계처리절차인 매수법을 적용함으로써 일관되게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 abstract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ccounting Principles and Tax System regarding Merger

Kim, Jin Soo · Kookjae Hwang

Merger is one of the most different areas between accounting principles and tax accounting. It is quite natural to adjust each other reflecting the fact the two systems are dealing with the same economic activities. But in merger two systems are quite different from the foundations. The purpose of tax accounting rules is to facilitate business combinations by charging no tax on merger. And the purpose of accounting principles is to show the accurate financial position and operational results of merger. The difference in purposes is the main obstacle for adjusting accounting principles and tax accounting rules.

Under this background this report seeks to ways to improve the accounting principles and tax accounting regarding merger. The most important suggestion of the first part of this report is to apply only purchase method dropping pooling method in merger. The main reason of dropping pooling method is that it is very much likely to be used to mislead information users under business combina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Under FASB statement No. 141 US GAAP also requires that all

business combinations are to be accounted for using the purchase method only. Other recommendations include the exact definition of purchase date, recognition principles for intangible assets, goodwill amortization and evaluation principles, accounting principles for negative goodwill, etc..

The second part of this report seeks to find ways to set consistent tax rules under non-taxable merger and taxable merger. It is recommended that the conditions for non-taxable merger be reinforced and tax rules be adjusted to accommodate non-taxable merger without changing economic equity continuity by allowing to use pooling method. With respect to general merger it is recommended that purchase method be used and merger be taxed reflecting merger is investment in kind.

<著者略歷>

김진수

韓國外國語人學校 貿易學科 卒業
美國 University of North Carolina-Chapel Hill, 經濟學 碩·博士
現, 韓國租稅研究院 研究委員

황국재

西江人學校 經營學科 卒業
美國 Michigan State University, MBA
美國 Syracuse University, 經營學 博士
現, 西江人學校 經營大學 教授

政策報告書 01-02

합병관련 기업회계와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2001年 12月 29日 印刷

2001年 12月 31日 發行

著者 김진수·황국재

發行人 宋大熙

發行處 韓國租稅研究院

☐13☐8-☐7☐7☐4 서울特別市 松坡區 可樂洞 79-6

電話 : 2186-2114(代), 팩시밀리 : 2186-2179

登錄 1993年 7月 15日 第21-466號

組版 및
印刷 柳林印刷文化社

© 韓國租稅研究院 2001

ISBN 89-8191-200-9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10,000원